가고 싶은 의회, 살기 좋은 전북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2026.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 법 정 책 담 당 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보고서

총괄	임 선 영	입법정책담당관
기획검토	형 영 주	자치현안지원팀장
작성	설 재 영	자치현안지원팀
	이 은 빈	자치현안지원팀
	유 형 용	자치현안지원팀
	김 강 욱	자치현안지원팀
	진 영 휘	자치현안지원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보고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목 차

Ⅰ. 총괄

1 추경안 개요 1

2 일반회계 분석 3

3 특별회계 분석 8

4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분석 9

5 전북 경제동향 10

Ⅱ.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1 기획행정위원회

1. 예산총괄 21
2. 주요사업 검토내용 (요약) 25
3.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26
4. 동부권 발전사업 및 동부권특별회계 30
5.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및 찾아가는 AI·디지털문해교육 32
6. 본예산 삭감 후 운영·홍보경비 재편성 34
7.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36

목 차

2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 예산총괄 ····· 40
2. 주요사업 검토내용 (요약) ····· 42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계속) ····· 45
4. 농어촌 활력재단 설립(신규) ····· 49
5.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신규) ····· 52
6. 기초연금(계속) ····· 56
7.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지원사업군(3개 사업) ····· 59
8.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군(6개 사업) ····· 62

3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 예산총괄 ····· 68
2. 주요사업 검토내용 (요약) ····· 70
3. 지방도 확포장사업 ····· 71
4.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74
5. 민선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신규) ····· 78
6.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81
7.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신규) ····· 86
8. 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신규) ····· 92
9.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신규) ···· 96
10.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신규) ····· 99

목 차

4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 예산총괄 ····· 104

2. 주요사업 검토내용 (요약) ····· 105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속) ····· 107

4.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계속) ····· 112

5.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 116

6.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 120

7.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개최 지원 ····· 123

8.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 127

【부록】

1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과제 164개 확정 ····· 132

2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계획 ····· 147

Ⅰ. 총 괄

1 추경안 개요

□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규모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예산+기금) 규모는 11조 8,201억원으로, 기정예산 11조 2,440억원 대비 5,761억원, 5.1% 증가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조 8,40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2억원(5.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1,236억원으로 106억원(1.0%) 증가, 기금은 8,556억원으로 383억원(4.7%) 증가함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총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6본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	2회 추경안	기정대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률	본예산대비 증감
합 계	109,769	112,440	118,201	5,761	5.1	8,432
일반회계	90,468	93,137	98,409	5,272	5.7	7,941
특별회계	11,128	11,130	11,236	106	1.0	108
기 금	8,172	8,173	8,556	383	4.7	384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예산안 첨부서류

○ 2026년 제2회 추경은 증액 규모와 증가율 모두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높아 재정 확대 폭이 크게 나타남

<2024~2026년도 추경(안)의 규모 및 증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안) 규모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2024회계연도 1회추경	392,166	4.31%	351,409	4.36%	40,757	3.88%
2025회계연도 1회추경	237,217	2.41%	233,450	2.66%	3,767	0.35%
2026회계연도 2회추경(안)	537,789	5.16%	527,187	5.66%	10,602	0.95%

※ 주: 회계연도별 1회 추경 및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준

□ 재정여건 및 추경 편성방향

○ 전북자치도는 이번 추경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정부 추경 대응, 국비 내시변경, 중앙 공모사업 선정, 본예산 편성 유보사업 등으로 세출수요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등 세입 증가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함

○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에 따라 지방세 증가세가 둔화되고,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제시함

○ 제2회 추경안 기준 재정자립도는 21.14%로, 2026년도 본예산 21.81% 대비 0.67%p 하락함. 일반회계 자체재원 비중도 기정예산 22.61%에서 22.44%로 낮아짐

○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액상 증가하였음에도 재정자립도와 자체재원 비중이 하락한 것은 보조금과 지방채 등 외부재원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재정규모 확대가 재정자율성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정부 추경과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 중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반영함
- 본예산 편성 당시 재원 부족 등으로 미편성했던 유보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반영함
-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 증액은 원칙적으로 지양함
- 민선 9기 공약사업의 내년도 본격 추진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예산을 일부 반영함
- 집행 부진, 이월·불용 예상사업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 또는 삭감 조정함

○ 따라서 이번 추경은 정부정책 대응, 국비 변동 반영, 본예산 유보사업 보완, 법정·의무경비 충당과 함께 지방채 발행 등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 편성 결과가 집행부가 제시한 신규·계속사업 증액 지양 및 세출 구조조정 원칙과 부합하는지는 신규 순도비사업, 본예산 삭감사업 재편성 및 기존 사업의 집행상황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분석

□ 세입 분석

○ 일반회계 세입은 9조 8,409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3,137억원 대비 5,272억원, 5.66% 증가함

○ 주요 증가요인은 보조금 2,729억원, 지방채 1,500억원, 세외수입 713억원, 지방세 317억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억원 감소함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검토 내용
합 계	98,409	93,137	5,272	5.7	• 일반회계 전체 증가
지방세	20,726	20,409	317	1.6	• 지방소비세 증가 등
세외수입	1,362	649	713	109.8	• 보조금반환수입 등 비경상 세입 중심
지방교부세 등	12,113	12,080	34	0.3	• 특별교부세·소방안전 교부세 증가
보조금	59,618	56,889	2,729	4.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보조 증가
지방채	2,000	500	1,500	300	• 부족재원 보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91	2,612	△21	△0.8	• 순세계잉여금 감소 • 예수금 증가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예산안 첨부서류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49억원에서 1,362억원으로 713억원 증가함. 증가분은 보조금반환수입 534억원을 비롯하여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이자수입 등이 중심으로, 반복적·경상적 세입 기반 확대보다 보조사업 정산·반환 및 과년도 수입 등 비경상적 성격이 강함

○ 실국별로는 농생명축산산업국, 환경산림국, 기업유치지원실, 복지여성보건국, 감사위원회 등 다수 부서에서 보조금반환수입 또는 위탁비반환수입이 순증 편성된 것으로 파악됨

○ 다수 실국의 보조금반환수입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관련 세출부담이 동반되므로, 이를 구조적인 세입여력 개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관련 세출을 연계하여 실제 가용재원을 판단해야 함

<세외수입 증액 주요 내역>

(단위: 천원)

부서	세입 항목	증감액	비고
농생명축산산업국	보조금반환수입	10,086,891	순증
환경산림국	보조금반환수입	9,619,596	순증
기업유치지원실	보조금반환수입	3,618,187	
복지여성보건국	보조금반환수입	17,253,571	
감사위원회	위탁비반환수입	313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반환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증가로 총액이 34억원 증가했으나, 재량재원 성격의 보통교부세는 178억원 감소함. 특별교부세 149억원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이므로 대상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개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부세 등 세입 내부 구조>

(단위: 억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합 계	12,113	12,080	34
지방교부세 소계	11,920	11,887	34
보통교부세	11,147	11,326	△178
특별교부세	149	-	149
소방안전교부세	624	561	63
지방소멸대응기금	193	193	0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예결위 심의관련 요구자료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2,750억원, 2023년 967억원, 2024년 1,626억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 기준 618억원으로 감소함. 전년 대비 약 1,008억원 감소하여, 세입여건 악화가 결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됨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18억원은 전액 제2회 추경재원으로 반영되고, 채무 또는 예수금 상환에는 사용되지 않음.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추경재원 여력이 축소된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채 발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활용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지방채 우선상환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세출 분석

○ 일반회계 세출은 9조 8,40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72억원 증가함. 증가분은 용도지정 재원 2,720억원, 의무지출 1,811억원, 자체사업 순도비 741억원으로 구분됨

<일반회계 세출구조>

(단위: 억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검토내용
합 계	98,409	93,137	5,272	· 일반회계 전체 증가
용도지정 재원	60,208	57,488	2,720	· 국고보조사업 등 반영
의무지출	28,996	27,185	1,811	· 법정·의무경비 및 도비부담
자체사업 (순도비)	9,205	8,464	741	· 자체 현안사업 증액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예산안 첨부서류

○ 세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국비사업과 법정·의무경비 반영에 따른 것이나, 집행부의 증액 지양 원칙과 달리 순도비 신규사업이 34건(643억 4,300만원) 편성되었으므로 법정·의무·공모사업을 제외한 순수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2026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0%인 순도비 1억 원 이상 기존 사업이 64건(312억 5,8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추경 신규·증액사업의 집행 가능성은 기존 사업의 부진 사유와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함께 연계하여 엄격히 판단해야 함

○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짐

○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신규·증액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부담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기능별 세출 주요 증감>

(단위: 억원)

분야	주요 증감	검토방향
농림해양수산	2,100	농어촌 기본소득,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 등 대규모 사업 반영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77	기업지원, 산업기반, 에너지 관련 사업 확대
사회복지	740	생계급여 등 법정·의무성 복지지출, 의료급여특별회계·재해구호기금 전출 등
국토 및 지역개발	405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증가
일반공공행정	368	조정교부금, 정책·재정운용 관련 지출
공공질서 및 안전	272	재난·소방 관련 지출 증가
보건	145	공공보건의료 관련 지출 증가
교통 및 물류	177	대중교통 지원 등
환경	△187	상하수도·수질 등 일부 환경사업 감액
예비비	△154	일반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감액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예결위 심의관련 요구자료

○ 이번 추경 일반회계 지방채는 기정예산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1,500억원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증가분 5,272억원의 약 28.5%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이번 추경 재원조달의 핵심 쟁점임

○ 해당 지방채 2,000억원은 금융기관채 1,443억원과 지방공공자금채 557억원으로 구성되며, 전북연구원 신축,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관리기금 전출, 대표도서관 건립, 상하수도·하천·도로사업 등 총 18개 대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른 원리금 총상환액은 약 2,533억 3,500만원(원금 2,000억원, 이자 약 533억 3,500만원)으로 추계되며, 이 중 67.3%인 약 1,704억 100만원이 2031년 이후에 배치되어 상환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집중되는 구조임

○ 금융기관채의 이율·상환기간·차입선 등이 대부분 미정인 상태에서 이자상환액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상환계획에 적용한 가정금리와 상환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발행 시점과 시장금리에 따라 이자부담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발행조건 확정 후 원리금 상환계획과 채무비율 전망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년 이후	합계
원리금 상환액	7.9	88.8	128.1	159.1	445.5	1,704.0	2,533.4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예결위 심의관련 요구자료

3 특별회계 분석

○ 특별회계는 총 1조 1,23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30억원 대비 106억원 증가함

○ 소방특별회계 100억원, 동부권특별회계 78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억원이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8억원 감소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액 기준으로 88억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147억 5,000만원 증가함

○ 이는 “국비 매칭분 중 도비 미편성분에 대한 일부 증액 편성”으로 본예산 편성 시 도비부담금 미편성분 31% 중 일부(16%)를 반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어, 이번 추경 이후 남아 있는 미편성 도비부담액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재원대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액 감소가 일반회계 부담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고보조금 감액과 일반회계 도비부담 증가 및 향후 추가부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회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액	증감률	주요 내용
특별회계 합계	11,236	11,130	106	1.0	· 전체 소폭 증가
의료급여기금	6,385	6,473	△88	△1.4	· 국고보조금·잉여금 감소 등
동부권	355	277	78	28.0	· 투자심사 승인 4개 사업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97	81	16	19.9	· 교육청 전출 및 여유재원 예탁
소방	4,384	4,284	100	2.3	· 인건비·장비·교육실비 등
특정자원시설분	15	15	-	1.1	· 소폭 증가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예결위 심의관련 요구자료

4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분석

○ 기금은 총 8,556억원으로, 기정예산 8,173억원 대비 383억원 증가함

<주요 기금 증감 현황>

(단위: 억원)

기금명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액	주요 내용
합 계	8,556	8,173	38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09	499	10	· 예수금수입 증가
지역개발기금	4,055	3,962	93	· 예치금회수 증가 및 예치금 증가
재난관리기금	504	344	160	· 법정적립금 전입, 예치금 증가
재해구호기금	301	205	96	· 법정적립금 전입, 예치금 증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222	196	26	· 출자금 및 예치금 증가

※ 자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예결위 심의관련 요구자료

○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8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9억원 등 총 267억원의 재난 관련 기금 전출이 포함되어 있음

○ 법정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차입재원으로 기금을 적립한 후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보유할 경우 지방채 조달금리가 기금 예치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범위에서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법정 최저적립액 산정근거,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지방채 발행조건, 기금 예치금리 및 예치기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전북 경제동향 (전북연구원, 2026.5.발표)

□ 개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실물경제) ’26년 1분기 전북자치도 경제는 제조업 생산의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수출과 투자 지표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소비 심리 호조가 이어지며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모색하는 양상을 보임. 다만, 대형소매점 판매 부진과 소상공인 체감경기 둔화 등 내수 부문에서는 여전히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확산되지 못함

-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비 7.0% 감소하며 감소 폭이 심화되었으나, 수출은 13.0% 급증하며 완연한 회복세를 보임. 자본재수입(13.4%)이 두 자릿수 증가율로 올라서고, 설비투자 BSI(95)와 제조업 업황 BSI(63)이 전년동기비 각각 5p, 3p 상승하며 투자 심리는 개선

-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16.2% 증가하며 큰 폭으로 반등했으나, 공업용 건축착공면적은 33.9% 급감하며 건설 투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위축됨

-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비 7.1% 감소하며 내수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자심리지수는 112p를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24p 상승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 반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와 전통시장 매출(업황) BSI는 전년동기보다 개선되었으나 직전 분기 대비로는 다소 둔화되며 서민 경제의 온기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임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제조업 생산	-1.8	-3.6	-1.2	-1.3	0.8	-1.7	0.2	-2.0	1.6	-6.9	-7.0
수출	8.1	-11.3	-13.0	-10.6	-2.9	1.6	-4.5	-0.5	9.0	3.4	13.0
(선박 제외)	*(-9.8)*	*(-11.3)*	*(-13.0)*	*(-10.6)*	*(-2.8)*	*(1.6)*	*(-4.5)*	*(-0.5)*	*(8.7)*	*(3.4)*	*(13.1)*
자본재 수입[2]	-6.9	-26.5	-8.7	23.7	-7.1	-13.6	-25.4	-10.7	-15.3	3.3	13.4
대형소매점 판매	-4.1	1.7	-4.6	-5.1	-6.5	-8.9	-6.4	-7.4	-14.1	-5.1	-7.1
자동차 신규등록대수[1]	-27.6	-33.0	-19.4	-29.7	-27.7	-7.6	-21.8	-10.9	11.0	-5.3	16.2
공업용 건축착공면적	14.6	23.5	27.9	51.5	-15.2	-2.0	-16.8	-67.1	99.5	4.5	-33.9
설비투자실행BSI[4]	89	96	95	92	89	94	90	90	93	94	95
제조업 업황BSI[4]	60	69	77	65	60	59	60	64	61	59	63
소비자심리지수[4]	90	95	95	96	90	110	88	95	110	110	112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3][4]	74.9	54.2	62.2	58.5	61.7	77.0	55.2	67.1	70.1	74.8	64.0
전통시장 매출(업황) BSI[3][4]	61.2	45.4	54.0	57.1	61.2	75.7	47.9	57.4	68.6	75.7	61.8

※ 출처: 통계청(제조업 생산, 소비자심리지수, 대형소매점 판매), 한국무역협회(수출, 자본재수입), 한국은행 전북본부(설비투자실행BSI, 제조업업황BSI),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체감경기지수, 재래시장 매출BSI),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현황보고, 건축착공면적)

※ 주: 1) 승용차 제외 2) 지수, 연간(분기)은 연(분기) 말월지수 3) 소상공인경기동향은 '14.10월호부터 전국 데이터만 발표되어 이후 전국자료 사용 4) '17년부터 지수 개편으로 세부사항(수출용 · 내수용) 미조사

○ **(고용)** ’26년 1분기 중 취업자는 전년동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0.1% 상승

- 전년동기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4.6% 감소하였고, 상용근로자는 0.4% 증가하였음
- 한편 실업률은 전년동기차0.1% 상승, 고용률은 전년동기차0.1%p 하락함

<고용 관련 지표>

(전년동기비, %, %p)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취업자 증가율	0.5	1.8	1.4	0.1	-1.4	-0.9	-1.5	-1.7	0.0	-0.1	0.5
- 농림어업	-6.0	-4.6	-7.4	-6.3	-6.7	-9.6	-9.0	-8.6	-8.5	-11.2	-12.2
- 제조업	0.0	4.1	0.0	-4.5	-0.8	0.0	-0.8	5.5	1.6	-4.6	-2.4
- 상용근로자	3.1	1.6	2.9	1.7	6.3	5.1	7.5	7.1	5.7	0.4	-0.6
실업률[1]	0.0	-0.3	-0.3	-0.2	-0.4	0.3	0.8	0.0	0.0	0.1	-0.1
고용률[1]	0.5	1.3	1.1	0.2	-0.6	-0.5	-0.8	-1.0	0.1	-0.1	0.3
경제활동참가율[1]	0.5	1.1	0.9	0.1	0.0	-0.3	-0.3	-1.1	0.1	0.0	0.2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주: 1) 실업률 · 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차

○ (물가) ’26년 1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비 0.9% 상승

-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비 0.9%의 상승하였으며, 제품별로는 농축수산물 0.6% 상승, 공업제품 0.7% 상승, 서비스 1.2% 상승
-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비 0.19%, 주택전세가격은 0.17% 상승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은 지방 평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세가격은 지방 평균보다 작은 폭으로 상승

<물가 관련 지표>

(전분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2.3	0.7	0.3	0.3	0.3	2.2	1.3	0.1	0.2	0.9	0.9
(전년동기비)	-	*(2.9)*	*(2.8)*	*(2.1)*	*(1.7)*	-	*(2.3)*	*(2.1)*	*(2.0)*	*(2.6)*	*(2.2)*
- 농축수산물	5.9	3.8	-3.0	1.7	0.0	3.1	3.4	-2.7	2.8	1.2	0.6
(전년동기비)	-	*(10.3)*	*(8.1)*	*(3.1)*	*(2.4)*	-	*(2.0)*	*(2.3)*	*(3.4)*	*(4.7)*	*(1.8)*
- 공업제품	1.5	-0.4	0.7	0.0	0.1	2.0	1.3	0.2	0.4	0.6	0.7
(전년동기비)	-	*(1.8)*	*(2.3)*	*(1.4)*	*(0.4)*	-	*(2.0)*	*(1.5)*	*(1.9)*	*(2.5)*	*(2.0)*
- 서비스	2.3	0.9	0.6	0.6	0.2	2.3	1.0	0.7	-0.1	0.8	1.2
(전년동기비)	-	*(2.2)*	*(2.2)*	*(2.5)*	*(2.4)*	-	*(2.5)*	*(2.5)*	*(1.8)*	*(2.4)*	*(2.7)*
주택매매가격1)	-2.80	-0.33	-0.07	0.32	1.32	-1.80	-0.09	0.15	0.21	0.24	0.19
<지방 평균2)>	*<-0.19>*	*<-0.24>*	*<-0.23>*	*<-0.15>*	*<-0.16>*	*<-0.20>*	*<-0.44>*	*<-0.20>*	*<-0.06>*	*<0.13>*	*<0.18>*
주택전세가격1)	-3.46	0.33	0.30	0.45	0.45	-3.46	0.24	0.17	0.11	0.17	0.17
<지방 평균2)>	*<-3.24>*	*<0.08>*	*<-0.09>*	*<-0.06>*	*<-0.07>*	*<-3.25>*	*<-0.17>*	*<-0.15>*	*<0.06>*	*<0.46>*	*<0.36>*

※ 출처: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국토교통부(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주: 1)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상승률 2)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정책적 시사점

- 2026년 1분기 전북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건설·유통 등 내수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심리가 크게 반등하며 회복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음. 소비자 심리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소매 판매는 부진하며,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주춤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실물경제로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2026년 1분기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반등하며 경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내수 소비 위축과 제조업 생산 부진이 맞물리며 지역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이 제한되고 있음. 향후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설비투자 확대와 함께 실물 경제의 체질 개선이 지역 경제 반등을 위한 핵심 과제로 판단**

- 전북의 고용은 2026년 1분기 들어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0.1%p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0.2%p 증가한 상황으로 전북의 고용시장은 취업자 증가율(0.5%)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인 양적 지표가 하방 압력을 벗어나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전북의 고용은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하며 양적 성장세가 전 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2.4%)와 상용근로자 수(-0.6%)가 감소하는 등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핵심 산업에 대한 고용 매칭과 상용 일자리 확대 등의 고용 안정화 정책이 필요**

- 전북의 소비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0.9% 상승하며 전년동기 대비(2.2%)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의 오름세(0.19%)가 지속되며 지방 평균 주택매매가격(0.18%)을 상회하는 등 자산시장이 안정되고 있음

☞ **전북자치도는 소비자심리지수(112p)의 대폭 상승과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의 증가세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전분기 대비 둔화됨에 따라 서민 실물경제가 선순환 회복 국면으로 이어지도록 자산 및 심리 지표의 회복세 유도가 중요**

□ 경기

○ ’26년 1분기 중 동행CI는 전분기비 1.7%p 상승, 순환변동치는 99.5로 1.6%p 하락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5로 전분기 대비 1.6%p 하락
- 제조업 재고율은 전분기 대비 8.6%p 하락, 제조업 업황 BSI는 전분기 대비 5p 상승,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1p 상승

<경기관련지표 추이>

구 분	’24 1/4	’24 2/4	’24 3/4	’24 4/4	’25 1/4	’25 2/4	’25 3/4	’25 4/4	’26 1/4
동행CI (전분기비, %)	0.5	0.9	-0.1	-1.4	-2.8	1.6	1.9	-0.4	1.7
동행CI 순환변동치	99.8	100.8	100.9	99.6	97.8	99.5	101.5	101.2	99.5
제조업 재고율(전분기차,%p)	3.3	-13.6	12.0	4.7	6.0	5.5	5.8	-19.6	-8.6
제조업 업황BSI (전분기차,p)	1	8	-12	-5	0	4	-2	-3	5
소비자심리지수(전분기차,p)	2	0	1	-6	-2	8	15	0	1

※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전북경제브리핑),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소비자물가조사)
※ 주: 소상공인경기동향은'14.10월호부터 전국데이터만 발표되어 이후 전국자료 사용

□ 제조업 생산

○ ’26년 1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7.0% 감소, 재고는 14.2%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비 7.0% 감소하였으며, 전국 제조업 생산이 3.6% 증가한 것에 비해 감소율이 큼
- 제조업 출하는 2.5% 감소, 제조업 재고는 14.2% 감소하는 등 생산·출하·재고가 모두 감소하여 제조업 전반 경기의 침체가 나타남

<제조업 생산 추이>

(전년동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제조업 생산	-1.9	-3.6	-1.2	-1.3	0.8	-1.7	0.2	-2.0	1.6	-6.9	-7.0
<전국>	*<4.4>*	*<8.2>*	*<6.9>*	*<2.7>*	*<4.0>*	*<3.0>*	*<1.7>*	*<2.7>*	*<7.9>*	*<-1.5>*	*<3.6>*
제조업 출하	-2.6	-5.8	-3.4	-2.4	0.8	0.7	0.0	-0.7	3.4	0.9	-2.5
제조업 재고	5.2	4.0	-1.8	-0.1	5.2	1.5	12.9	19.4	21.5	1.5	-14.2

※ 출처: 통계청(광업제조업조사)
※ 주: 〈 〉내는 계절조정 전월비, %

□ 소비

○ ’26년 1분기 중 대형소매점 판매는 감소(-7.1%), 전통시장 매출 BSI(-13.9%)도 감소하여 전반적인 소비 분야 위축

-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비 7.1% 감소, 대형마트 판매는 전년동기비 12.5% 감소하였으며, 전통시장 매출 BSI는 전분기대비 13.9p 감소(전년동분기 대비는 13.9p 증가)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대형소매점 판매	-3.0	1.7	-4.6	-5.1	-6.5	-8.9	-6.4	-7.4	-14.1	-5.1	-7.1
- 대형마트 판매	-3.2	0.6	-2.7	-4.9	-5.7	-7.8	-2.5	-4.4	-16.4	-6.8	-12.5
재래시장 매출BSI[1)]	0.2	-13.0	8.6	3.0	4.1	3.6	-13.3	9.5	11.2	7.1	-13.9

※ 출처: 통계청(서비스업동향조사), 국토교통부(자동차등록통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 주: 1) 전분기차(p)

□ 투자

○ ’26년 1분기 중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였으며, 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14.9% 감소

- 자본재 수입은 13.4% 증가, 자동차 신규등록은 16.2% 증가

<투자지표 추이>

(전년동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건축허가면적	-38.7	-53.2	-56.0	28.8	-30.7	10.3	2.7	-17.5	76.1	-21.8	12.3
건축착공면적	-17.6	-24.3	3.7	3.2	-39.0	7.6	-2.4	-5.4	39.2	6.4	-14.9
자본재 수입[1)]	-6.9	-26.5	-8.7	23.7	-7.1	-13.6	-25.4	-10.7	-15.3	3.3	13.4
자동차 신규등록대수[2)]	-27.6	-33.0	-19.4	-29.7	-27.7	-7.6	-21.8	-10.9	11.0	-5.3	16.2

※ 출처: 국토교통부(주택 허가/착공 현황, 자동차등록현황보고), 한국무역협회(자본재 수입 통계)

※ 주: 1)‘17년부터 지수 개편으로 인한 세부사항(수출용, 내수용)을 조사하지 않음 2) 승용차 제외

□ 수출입

○ ’26년 1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분기 대비 13.0% 증가, 수입은 17.1% 증가,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8백만달러 감소(330백만달러)

- 수출금액은 1,801백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3.0% 증가하였고, 수입은 1,471백만달러로 전년동기비 17.1% 증가하여 무역수지도 흑자를 이어감
- 무역수지는 330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백만달러 감소

<수출입 추이>

(백만달러,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수출 금액	6,359	1,668	1,703	1,529	1,459	6,463	1,594	1,695	1,666	1,508	1,801
(전년동기비 증감률)	*(-9.8)*	*(-11.3)*	*(-13.0)*	*(-10.6)*	*(-2.9)*	*(1.6)*	*(-4.5)*	*(-0.5)*	*(9.0)*	*(3.4)*	*(13.0)*
수입 금액	5,456	1,361	1,398	1,395	1,302	5,300	1,255	1,386	1,379	1,280	1,471
(전년동기비 증감률)	*(-0.7)*	*(-9.9)*	*(-3.5)*	*(6.2)*	*(6.6)*	*(-2.9)*	*(-7.8)*	*(-0.9)*	*(-1.2)*	*(-1.7)*	*(17.1)*
수출입 차	903	307	306	134	157	1,163	338	309	287	228	330

※ 출처: 한국무역협회(지자체 수출입 통계)

□ 고용

○ ’26년 1분기 중 고용시장은 전반적인 고용지표가 회복세를 나타냄

- 취업자수 및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각각 0.5%p, 0.3%p 증가, 실업률은 0.1%p 감소
-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기비 0.1% 증가

<고용 추이>

(전년동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5세이상 인구	-0.3	-0.3	-0.2	-0.3	-0.3	-0.1	-0.3	-0.2	-0.1	-0.1	0.1
취업자수	0.5	1.8	1.4	0.1	-1.4	-0.9	-1.5	-1.7	0.0	-0.1	0.5
경제활동참가율	0.5	1.1	0.9	0.1	0.0	-0.3	-0.3	-1.1	0.1	0.0	0.2
실업률	0.0	-0.3	-0.3	-0.2	0.9	0.3	0.8	0.0	0.0	0.1	-0.1
고용률	0.5	1.3	1.1	0.2	-0.6	-0.5	-0.8	-1.0	0.1	-0.1	0.3

※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물가 및 주택가격

○ ’26년 1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전분기 대비 0.9% 상승, 주택매매가격은 0.19% 상승

-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비 0.9%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전국평균과 동일 수준이며, 상품은 전분기비 0.7% 상승, 서비스 물가는 전분기비 1.2% 상승
-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비 0.19%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평균 0.18%보다 0.01%p 높은 수치이고, 주택전세가격은 지방평균(0.36%)보다 0.19%p 더 작은 상승세를 보임

<물가 및 주택가격 추이>

(전 분기비,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소비자물가	2.3	0.7	0.3	0.3	0.3	2.2	1.3	0.1	0.2	0.9	0.9
<전국>	*<2.3>*	*<0.7>*	*<0.3>*	*<0.4>*	*<0.2>*	*<2.1>*	*<1.2>*	*<0.2>*	*<0.3>*	*<0.6>*	*<0.9>*
- 상품	2.4	0.4	0.0	0.1	0.5	2.2	1.5	-0.4	0.4	1.1	0.7
- 서비스	2.3	0.9	0.6	0.6	0.2	2.3	1.0	0.7	-0.1	0.8	1.2
주택매매가격[1]	-2.80	-0.33	-0.07	0.32	1.32	-0.80	0.04	0.20	0.18	0.39	0.19
<지방 평균[2]>	*<-0.19>*	*<-0.24>*	*<-0.23>*	*<-0.15>*	*<-0.16>*	*<-0.21>*	*<-0.44>*	*<-0.2>*	*<-0.11>*	*<0.17>*	*<0.18>*
주택전세가격[1]	-3.46	0.33	0.30	0.45	0.45	-3.46	0.24	0.17	0.13	0.17	0.17
<지방 평균[2]>	*<-3.24>*	*<0.08>*	*<-0.09>*	*<-0.06>*	*<-0.07>*	*<-3.26>*	*<-0.17>*	*<-0.15>*	*<0.05>*	*<0.36>*	*<0.36>*

※ 출처: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국토교통부(전국주택가격동향보고)

※ 주: 1)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상승률　　2)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자금사정

○ ’26년 1분기 중 어음부도율은 0.16으로 지방평균보다 낮은 추세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기대비 낮은 0.16으로 전국(0.08%p)보다 0.08%p 높게 나타나며, 지방평균(0.22%)보다 0.06%p 낮은 수준
- ’26년 1분기 중 예금은행 예대율은 80.5%로 전년동기대비 4.5%p 증가

<자금사정관련 지표 추이>

(%)

구 분	2024					2025					202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어음부도율	0.42	0.35	0.33	0.03	0.96	0.49	0.94	0.63	0.13	0.26	0.16
<전국>	*<0.19>*	*<0.13>*	*<0.22>*	*<0.15>*	*<0.25>*	*<0.15>*	*<0.10>*	*<0.29>*	*<0.10>*	*<0.12>*	*<0.08>*
(지방평균)	*(0.44)*	*(0.18)*	*(0.48)*	*(0.43)*	*(0.68)*	*(0.27)*	*(0.22)*	*(0.44)*	*(0.23)*	*(0.20)*	*(0.22)*
예금은행 예대율	76.5	68.4	66.2	69.5	76.5	81.3	76.0	79.3	78.6	81.3	80.5

※ 출처: 한국은행 전북본부　　※ 주: 분기데이터는 월 데이터의 평균치임

붙 임 전북의 주요 경제 지표(2021 ~ 2025)

구분	단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역내총생산(GRDP)[1]	억원	594,317 <22,241,797>	612,853 <23,275,957>	637,519 <24,118,636>	667,924 <25,608,115>	-
(전국대비구성비)[1]	%	(2.7)	(2.6)	(2.6)	(2.6p)	-
GRDP성장률[2]	%	5.4 <7.8>	3.1 <4.6>	4.0 <3.6>	4.8p <6.2p>	-
1인당 GRDP[1]	천원	33,164 <42,963>	34,484 <45,045>	36,052 <46,640>	37,980p <49,483p>	-
산업구조[3]	-					
농림어업	%	6.3 <1.7>	6.0 <1.5>	5.6 <1.5>	5.6p <1.5p>	-
광제조업	%	23.4 <28.6>	21.4 <26.2>	20.8 <26.1>	20.6p <26.7p>	-
제조업	%	23.2 <28.5>	21.3 <26.1>	20.7 <26.1>	20.5p <26.6p>	-
전기가스수도업	%	2.8 <1.7>	2.8 <1.6>	3.4 <1.2>	3.6p <1.3p>	-
건설업	%	7.0 <5.5>	6.1 <5.0>	6.0 <4.9>	6.1p <4.6p>	-
서비스업및기타	%	60.4 <62.5>	56.4 <58.0>	57.9 <58.6>	57.9p <58.3p>	-
주민등록인구	천명	1,787 <51,639>	1,770 <51,439>	1,755 <51,325>	1,739 <51,217>	1,725 <51,117>
(65세이상인구비중)	%	(22.3) <17.1>	(23.2) <18.0>	(24.1) <19.0>	(25.3) <20.0>	(21.2) <26.6>
합계출산율	명	0.850 <0.808>	0.817 <0.778>	0.780 <0.721>	0.808 <0.748>	-
15세이상인구	천명	1,555 <45,080>	1,556 <45,260>	1,553 <45,407>	1,549 <45,570>	1,547 <45,762>
경제활동참가율	%	62.6 <62.8>	63.7 <63.9>	64.9 <64.3>	65.4 <64.5>	65.1 <64.7>
실업률	%	2.2 <3.7>	2.4 <2.9>	2.5 <2.7>	2.5 <2.8>	2.8 <2.8>
고용률	%	61.2 <60.5>	62.2 <62.1>	63.3 <62.6>	63.8 <62.7>	63.3 <62.9>
무역수지	백만 달러	1,718 <29,307>	1,721 <-47,785>	1,556 <-10,346>	908 <51,592>	1,163 <77,435>
수출액	백만 달러	7,819 <644,467>	8,219 <683,585>	7,065 <632,384>	6,364 <683,692>	6,463 <709,330>
수입액	백만 달러	6,100 <614,752>	6,498 <731,370>	5,495 <642,593>	5,456 <632,100>	5,300 <631,895>
소비자물가상승률	%	2.6 <2.5>	5.3 <5.1>	3.3 <3.6>	2.3 <2.3>	2.2 <2.1>

※ 자료: 통계청(지역내총생산,주민등록인구,합계출산율,경제활동인구),한국무역협회(지자체별통계)

※ 주: 1) 당해년가격, 2) 연쇄지수로계산, 3) 당해년가격, 총부가가치(기초가격) 명목기준,
4) < >내는 전국지표, 5) 1인당 지표는 추계인구로 산출, 6) p는 잠정치

기획행정위원회

Ⅱ. 위원회별 예산안 분석

1 기획행정위원회

1. 예산총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조 3,183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64억 4,000만원 대비 319억 1,900만원, 2.48% 증가함

○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2,82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동부권특별회계는 355억 2,000만원으로 77억 7,500만원 증가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18,358,996	1,286,440,458	31,918,538	2.48
일반회계	1,282,838,996	1,258,695,458	24,143,538	1.92
동부권특별회계	35,520,000	27,745,000	7,775,000	28.02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사업설명서 및 예결위 요구자료

○ **(기관별 예산 현황)** 기획조정실 예산에 동부권특별회계를 합산하여 제시하면 일반회계의 재정운용 증가분과 특별회계 사업비 증가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두 회계를 구분하여 기관별 예산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18,358,996	1,286,440,458	31,918,538	2.48
대변인	1,729,410	1,729,410	-	-
인권담당관	525,574	525,574	-	-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927,977,887	905,757,837	22,220,050	2.45
동부권특별회계	35,520,000	27,745,000	7,775,000	28.02
자치행정국	127,451,615	125,844,769	1,606,846	1.28
특별자치교육협력국	183,514,585	183,307,943	206,642	0.11
대외국제소통국	15,239,070	15,129,070	110,000	0.73
기타 소관기관	26,400,855	26,400,855	-	-

※ 기타 소관기관은 중앙협력본부,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및 자치경찰위원회를 합산한 금액임

- 기획조정실 일반회계와 동부권특별회계 증가액은 총 299억 9,500만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증가액 319억 1,900만원의 약 94.0%를 차지함
-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안은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확보,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 동부권 발전사업 증액 등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운용 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예산과 소관 시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11억 2,2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3,800만원 등 총 333억 5,900만원 증가했으며, 증액 사유는 2025년 지방세 징수액 확정에 따른 잔여분 반영임
- 조정교부금 증가액이 예산과 전체 순증액 182억 1,100만원을 상회하는 것은 일반예비비 감액 등 다른 세출항목의 조정과 상계된 결과임
- 일반회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30억원을 추가 활용하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액도 증가하므로, 예수기간·이율·상환계획과 통합계정의 잔여 운용여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 1,500억원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18개 대상사업별 투입 적정성, 금융기관채의 가정금리와 상환조건, 발행조건 확정 후 채무비율 재산정 및 재난 관련 기금 전출금 267억원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예산 삭감 후 재편성 현황

○ 예결위 요구자료에서 확인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삭감 후 제2회 추경 재편성 사업은 총 6건, 6억 5,500만원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예산 삭감사업 재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 서	사업명	본예산 요구액	본예산 삭감액	본예산 확정액	증감	제2회 추경안	재편성 형태
정책기획관	전북연구원 출연금	7,450	391	7,059	100	7,159	삭감액 일부 재편성
예산과	도정현안업무추진 지원 운영비	400	167	233	200	433	본예산 요구액 초과
인구청년 정책과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 지원	100	100	-	100	100	삭감액과 동일
행정정보과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	1,135	200	935	185	1,120	삭감액 일부 재편성
소통기획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90	50	40	50	90	삭감액과 동일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100	20	80	20	100	삭감액과 동일
합 계	6건	9,275	928	8,347	655	9,002	-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결위 요구자료 3차 제출본을 바탕으로 재작성

○ **(재편성 사업)** 전북형 청년 한달살이와 소통기획과 홍보사업 2건은 본예산 삭감액과 동일한 금액이 재편성되었으며, 전북연구원 출연금과 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는 삭감액의 일부가 재편성됨

-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는 본예산 요구액 4억원에서 1억 6,700만원이 삭감되어 2억 3,30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여 추경 후 예산액이 4억 3,3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요구액보다 3,300만원 많아짐
- 삭감액의 일부만 다시 편성한 사업은 본예산 삭감 취지를 일부 반영하면서 필수소요를 선별한 것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으나, 삭감액과 동일한 금액 또는 본예산 요구액을 초과하여 편성한 사업은 본예산 심의 이후 발생한 사정 변경과 사업계획의 실질적인 보완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는 본예산 삭감 사유와 추경 재편성 사유가 서로 다르게 제시됨

- 본예산에서는 해당 예산이 전주·완주 상생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된 점이 삭감 사유로 제시됨
- 제2회 추경에서는 조직개편 등 연중 수시 발생하는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증액 사유로 제시함

○ 추경 재편성 사유가 본예산 삭감 사유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신규 수요라면, 이를 단순한 삭감사업 복원으로 보기보다 사실상 신규·증액 소요 편성으로 보아 집행부가 제시한 '신규 및 계속사업 증액 지양' 원칙과 시급성·예측불가능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반대로 동일한 운영비 사업 범위에서 용도만 변경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본예산 당시 삭감된 용도로 다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대상, 세부 사용항목 및 승인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사업 검토내용(요약)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소 관	제2회 추경 규모	주요 분석내용
①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예산안 p.132 ~ 133)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p.26 ~ 27)	예산과	지방채 200,000 (증 150,000) 예수금 34,000 (증 23,000)	• 내부·외부차입 비용 비교 • 미확정 발행조건을 전제로 한 이자 추계 • 대상사업별 자금수요와 발행시기 연계 및 중장기 상환부담 검토
② 동부권 발전사업 및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 p.366)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p.67 ~ 69)	정책기획관	35,520 (증 7,775)	• 투자심사 승인 4개 사업의 후속절차 • 연내 교부·집행 가능성 • 동부권발전계획과의 정합성 및 성과평가 환류 검토
③ 평생학습·AI 디지털 문해교육 (예산안 p.309)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사업설명서 p.26 ~ 27)	교육협력과	총사업비 308.6 도 예산 반영 135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추경 전 집행 여부
④ 본예산 삭감 후 운영·홍보경비 재편성 (예산안 p.142, p.314)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p.41)	예산과 소통기획과	운영비 433 (증 200) 홍보비 190 (증 70)	• 운영비의 본예산 요구액 초과 편성 • 홍보사업 삭감액 동일 규모 재편성 • 사업량 확대 사유와 기존 예산 활용 가능성 및 연내 집행 검토
⑤ 종합상황실 생중계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사업 (예산안 p.157)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p.36)	회계과	사업비 180 (신규 180)	• 선거법 위반 소지 • 회의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유지보수 등 장기운영계획이 부재

3. 지방채 발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검토

(예산안 p.132 ~ 133),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p.26 ~ 27)

□ 재원조달 현황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합계	200,000	50,000	150,000	300
금융기관채	144,300	-	144,300	순증
지방공공자금채	55,700	50,000	5,700	1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34,000	11,000	23,000	209.1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및 예결위 요구자료 1차 제출본

※ 본 표의 예수금 340억원은 총괄 세입표상 예수금수입 1,340억원 중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0억원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에 해당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기정예산 11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230억원 증가함

○ **(지방채 차입과 예수금 수입)** 기획조정실은 일반회계 세출 9조 8,409억원에 비해 세입 충당액이 9조 6,679억원으로 1,730억원 부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230억원을 추가 예수하고 나머지 1,50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임

- 예수금은 연 2.5%,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제시된 반면에 금융기관채 1,443억원은 구체적인 금리, 차입선 및 상환조건이 대부분 미정임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년 이후	합 계
원리금 상환액	786	8,884	12,807	15,905	44,552	170,401	253,335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결위 요구자료

※ 총상환액은 원금 200,000백만원과 이자 추계액 53,335백만원을 합산한 금액임

○ 전북자치도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원리금 총상환액은 2,533억 3,500만원이며, 이 중 약 67.3%인 1,704억 100만원이 2031년 이후에 배치되어 있음

- 지방채 발행 대상은 전북연구원 신축, 재해위험지역 정비, 재난관리기금 전출, 도서관·상하수도·도로사업 등 총 18개 사업으로 제시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으로는 전북연구원 신축에 지방채 7억원이 반영됨

□ 분석의견

◎ **지방채와 예수금 활용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내·외부차입 비용과 사업별 자금수요를 연계, 지방채 대상사업별 발행 필요성, 연내 집행 가능성 및 발행시기를 면밀하게 따져 불요불급한 사업이 채무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현재의 낮은 채무비율과 신규 차입의 적정성**

- **(채무비율과 신규 차입 구분)** 전북자치도는 2025년 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재정건전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이나,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1,500억원 추가 발행하는 적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사업의 시급성, 투자효과, 연내 집행 가능성, 대체재원 확보 가능성 및 중기 상환재원 전망을 사업별로 검토해야 함

○ **금융기관채 상환계획 적용 금리**

- 지방채 상환계획에 원금 2,000억원과 이자 533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채의 금리·차입선·상환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자액은 추정치에 불과해, 상환계획에 적용한 금리, 발행시기, 거치기간 및 상환방식과 실제 발행조건이 확정된 이후 원리금 상환계획과 채무비율을 구분하여 보고하고 관리해야 함

○ **상환부담이 중장기적으로 집중되는 구조**

- 전체 원리금의 67.3%가 2031년 이후에 배치되어 당장의 상환부담은 제한적이나, 향후 재정운용 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음

- 계속사업과 법정·의무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환시기가 후반부에 집중되면 신규 정책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감소할 수 있어 단년도 채무비율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연도별 채무잔액, 이자비용 및 가용재원 전망을 함께 고려해야 함

○ **대상사업의 실제 집행률과 지방채 발행시기 연계**

- 지방채 대상사업의 계약·착공 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지연될 경우 지방채 선제적 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실제 발행은 대상사업별 계약금·기성금 등 자금수요와 집행률에 연동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발행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전북연구원 신축사업은 추경 증액 7억 5,000만원 중 7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인 만큼, 공정률과 연내 자금수요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채를 활용한 재난 관련 기금 적립의 적정성**

- 지방채 대상사업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8억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9억원 등 총 267억원이 포함됨
- 법정적립 의무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은 인정되나, 차입재원을 기금에 전출한 후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보유할 경우 지방채 금리와 기금 예치수익률 간 차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정 최저적립액, 당해연도 실제 집행계획, 예치 예정액과 운용금리, 지방채 조달금리를 비교하여 차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상환의 연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17억 8,500만원은 전액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되고 지방채 또는 예수금 상환에는 활용되지 않음
- 세입여건 악화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점은 고려해야 하나, 지방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일정 범위를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2회 추경안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실국 (부서명)	사 업 명	2026년도 총사업비				사업 위치	총사업 기간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계		**679,704 (652,177)**	**383,787 (401,383)**	**95,917 (200,794)**	**200,000 (50,000)**		
일 반 회 계		**679,704 (652,177)**	**383,787 (401,383)**	**95,917 (200,794)**	**200,000 (50,00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국산목재 목조건축실연사업(전북연구원 신축)	2,250 (1,500)	1,500 (1,500)	50 (-)	700 (-)	전북 연구원	('24~'27)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재해위험지역 정비(재해위험지구)	131,182 (130,482)	93,701 (93,202)	81 (37,280)	37,400 (-)	도 일원	('26)
도민안전실 (자연재난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805 (3,000)	(-) (-)	5 (3,000)	17,800 (-)	-	('26)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6,000 (5,000)	(-) (-)	3,800 (5,000)	2,200 (-)	전주시	('21~'27)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12,000 (5,000)	(-) (-)	5,500 (5,000)	6,500 (-)	전주시	('19~'27)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8,903 (-)	(-) (-)	3 (-)	8,900 (-)	-	('26. 8.~12.)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4,261 (24,261)	(-) (-)	17,061 (24,261)	7,200 (-)	9개 시군	('20~'30)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37,956 (36,565)	32,263 (32,263)	93 (4,302)	5,600 (-)	도 일원	('17~'31)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0,445 (20,445)	16,132 (16,132)	13 (4,313)	4,300 (-)	새만금 유역 외 6개 시군	('90~'28)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0,045 (57,397)	51,636 (51,636)	109 (4,561)	8,300 (1,200)	새만금 유역 외 7개 시군	('03~'28)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58,433 (57,717)	51,158 (51,158)	75 (6,559)	7,200 (-)	새만금 유역 외 7개 시군	('92~'28)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직접)	30,890 (26,000)	(-) (-)	16,090 (26,000)	14,800 (-)	도 일원	('22~'31)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원)	60,923 (65,813)	(-) (-)	42,723 (58,413)	18,200 (7,400)	도 일원	('22~'31)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사방시설 조성	29,354 (28,917)	20,548 (20,242)	206 (2,875)	8,600 (5,800)	도 일원	('26)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지방도 확포장 사업	31,000 (30,000)	(-) (-)	4,800 (특 2,300) (10,900)	26,200 (19,100)	도 일원	('20~'30)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7,435 (6,235)	(-) (-)	1,935 (735)	5,500 (5,500)	도 일원	('26)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노후교량 보수보강	4,008 (2,790)	(-) (-)	3,308 (소 2,989) (2,790) (소 2,029)	700 (-)	도 일원	('07~'26)
새만금해양수산국 (새만금지원수질과)	하수관로 정비 (새만금유역)	136,814 (151,055)	116,849 (135,250)	65 (4,805)	19,900 (11,000)	7개 시군	('19~'30)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결위 요구자료

※ 추경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비 밑에 괄호로 본예산액 별도 기재

4. 동부권 발전사업 및 동부권특별회계 검토

(예산안 p.366),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p.67 ~ 69)

□ 사업현황

<동부권특별회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	35,520	27,745	7,775	28.02
균특이양분	22,880	17,697	5,183	29.29
도비	12,640	10,048	2,592	25.79

<제2회 추경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시 군	총증액	균특이양분 등	도 비
합 계	4 개 사 업	7,775	5,183	2,592
함파우 예술체험촌	남 원 시	2,400	1,600	800
홍삼한방클러스터 고도화	진 안 군	1,875	1,250	625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장 수 군	2,900	1,933	967
세계명견명소화사업	임 실 군	600	400	200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결위 요구자료 1차 제출본

○ 요구자료상 동부권특별회계 증가액 77억 7,500만원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은 4개 사업의 기타회계전입금 51억 8,300만원과 도비 전입금 25억 9,200만원으로 구성됨

□ 분석의견

◎ **동부권 4개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와 조건부 의견을 확인하고 시군비 확보, 실시설계, 인허가, 계약 및 착공 일정, 동부권발전계획과의 정합성과 시군별 성과평가 연계 검토가 요구됨**

○ **투자심사 이후 후속 절차와 연내 집행 가능성 확인**

- 동부권 4개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에 따라 추경에 반영된 자본사업으로써, 시군의 설계, 부지확보, 인허가, 계약 및 착공 등 후속 절차가 중요하므로 추경 편성만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 사업별 투자심사 조건, 실시설계 완료 여부, 시군비 확보, 보조금 교부 및 착공 예정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동부권발전계획과의 정합성**

- 동부권 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식품·관광뿐 아니라 기금연계와 시군 협력 분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 이번 사업이 4단계 동부권발전계획의 전략사업에 해당하는지, 단순 시군 현안사업이 아니라 동부권 특화발전과 공동성장이라는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요구됨

○ **성과평가 연계**

- 동부권특별회계는 연간 360억원을 6개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제시됨
- 균등배분은 지역 간 형평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집행률과 사업 성과가 다음연도 배분에 반영되지 않으면 재정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도는 동부권발전사업 실적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신규사업 승인, 계속사업 조정 및 시군별 재원 배분에 어떻게 환류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5.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및 찾아가는 AI · 디지털문해교육 검토

(예산안 p.309),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사업설명서 p.26 ~ p.27)

□ 사업현황

<평생교육 신규사업 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사업기간
합 계	308.6	135	80	93.6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188.6	55	40	93.6	'26.5 ~ 12.
찾아가는 AI·디지털문해교육	120	80	40	-	'26.3. ~ '27.2.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전주·익산·김제·순창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평생교육 자원을 활용한 배움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860만원이며 2026년 3월 11일 교육부 공모에 선정됨

○ 찾아가는 AI·디지털문해교육은 14개 시군의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여 성인학습자의 디지털 생활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임. 총사업비는 국비 8,000만원과 도비 4,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이며, 2026년 3월 31일 교육부 공모에 선정됨.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부터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표기됨

□ 분석의견

○ **공모선정에 따른 추경 편성 필요성 인정되나 차별성 필요**

- 두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선정 시점과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수 있음. 다만,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내용과 재원구조의 적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과 집행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과 차별성)** 도는 평생교육이용권, 시군 성인문해교육, 모두배움터, 전북시민대학 등 다수의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간 중복성 검토 및 차별성 확인이 필요함
-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AI문해교육은 방문형 디지털 역량교육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대상자와 교육내용, 수행기관이 기존 사업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대상자 중복 방지, 교육과정 차별화 및 기존 교육시설·강사 활용계획 점검이 요구됨

○ **공모지원 종료 이후 운영 계획**

- 사업대상은 전주·익산·김제·순창 4개 시군으로 제시되나, 시군별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설명서만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시군별 교육수요, 참여자 규모, 교육과정, 수행기관 및 시군비 확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모지원 종료 이후 시군이 자체재원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함

○ **사업기간과 추경 성립전 사용 여부**

- AI문해교육은 2026년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제시되나, 사업설명서상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같은 교육협력과 사업 중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및 수능모의평가 응시료 사업은 명시적으로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AI문해교육과 구분됨
- 따라서 추경 편성 전 실제 사업비가 집행되었는지, 국비가 진흥원에 직접 교부되어 선집행되었는지, 또는 계획수립·대상자 모집 등 비예산 절차만 진행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6. 본예산 삭감 후 운영·홍보경비 재편성 검토

(예산안 p.142, p.314),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p.41 / 대외국제소통국 사업설명서 p.24~25)

□ 사업현황

<운영 • 홍보경비 재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본예산 요구액	본예산 삭감액	본예산 확정액	추경 증액	추경 후 예산액	재편성 형태	주요 증액사유
합 계	590	237	353	270	623	-	-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운영비	400	167	233	200	433	요구액 초과	• 조직개편 등 수시 행정수요 대응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	90	50	40	50	90	삭감액과 동일	• 광고 집행 4회→6회
도정 홍보용 콘텐츠 제작	100	20	80	20	100	삭감액과 동일	• 영상제작 5건→7건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예결위 요구자료 1차 제출본 및 소관별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분석의견

◎ **운영·홍보경비의 추경 재편성은 본예산 이후 발생한 신규 수요와 사업 계획의 실질적 변경 여부를 중심으로**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의 산출근거 및 기존 예산 집행실적 바탕 추가 편성의 적정성과 광고(4회→6회) 및 영상 제작(5건→7건)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와 사업량 증가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 운영비 추경안은 본예산 요구액 초과

-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1억 6,700만원이 삭감된 2억 3,3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 이번 추경안에는 2억원이 증액된 4억 3,3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요구액보다 3,3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함
- 본예산 삭감 후 단순히 삭감액을 다시 편성한 수준을 넘어 당초 요구액보다 많은 금액이 편성된 만큼, 본예산 확정 이후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와 2억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본예산 삭감 사유와 추경 편성 사유가 다른 이중 구조**

- 도정현안 업무추진 지원예산은 본예산 당시 전주·완주 상생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된 점이 삭감 사유로 작용했지만, 금번 추경안은 조직개편 등 연중 수시 발생하는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증액 사유로 제시하여 이를 구분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사업과 동일한 운영비 범위에서 용도만 변경한 경우라면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용도로 재사용되지 않도록 집행대상 부서, 사용 가능 항목, 사업별 한도 및 승인절차를 명확히 해야 함
- 본예산 삭감 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신규 행정수요라면, 이를 삭감사업 복원보다 사실상 신규·증액 소요 편성으로 보아 **신규 및 계속사업 증액 지양이라는 추경 편성원칙, 본예산 당시 예측 가능성,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함

○ **신규 행정수요의 구체적인 발생내역**

- '조직개편 등 연중 수시 발생하는 신규 행정수요'라는 설명만으로는 2억 원의 규모와 사용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직개편으로 신설·변경된 부서, 필요한 물품·인쇄·홍보·회의 등 세부 소요, 기존 부서 운영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유를 항목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포괄적인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경우 추경 심사에서 확인한 목적과 실제 집행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후 집행내역 관리가 필요함

○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 예산**

-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 예산안이 본예산 삭감 당시 제기된 사항의 해소보다는 광고·영상 제작 물량 확대를 재편성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예산 이후 사업량 확대가 불가피해진 사정과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동일한 기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온라인 홍보, 소셜미디어, 영상 제작 및 매체광고 예산의 집행상황과 잔액을 확인하여 기존 예산의 재조정으로 대응할 수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예산안 p.157), (자치행정국 사업설명서 p.36)

□ 사업현황

<생중계시스템 구축 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총사업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주요내용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시스템 구축	180,000	180,000	-	180,000	・투명한 행정 공개를 위해 생중계 가능한 회의실 구축 ・생중계 장비 설치 149,970 - 카메라 및 음향시스템 88,528 - 중계용 제어 시스템 61,442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30,030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 분석의견

◎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사업은 투명한 행정 공개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연계 미흡, 선거법 저촉 소지 등 문제점이 있어 도청 홈페이지 송출 등 대안 마련,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관리 계획, 개인정보보호 보안 대책 등 사업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도지사의 '간부회의 실시간 생중계 추진 계획'에 따라 정례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LIVE'란 이름으로 오는 11월부터 추진할 계획임

- 사업비는 180,000천원으로 전액 도비 사업이며, 생중계 장비 설치(149,970천원), 회의용 테이블·의자(30,030천원)으로 구성됨
- 회의실 환경 정비(회의용 테이블·의자 30,030천원)는 기존 회의실 집기 교체 수요와 구분이 모호하므로,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인 생중계 장비 설치와 분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단위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회의 생중계를 위한 신규 집기 취득은 지양하고, 기존 집기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한 예산 절감방안이 필요함

○ **회의 생중계 시스템의 선거법 위반 소지**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활동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신문·방송 등 홍보물 발행·발송은 분기 1종 1회로 제한됨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생중계 시스템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회의를 공개할 경우 구독자에게 자동 전송되는 알림 기능이 홍보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알림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녹화 중계 또는 도청 홈페이지 내 생중계 링크 게시 등 선거법 저촉 소지가 없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

○ **유지보수 비용, 운영 인력,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 등 장기 운영계획 부재**

- 본 사업은 회의실 내 방송·통신 장비 설치가 핵심이나, 장비 설치 이후의 유지보수 계획이 미수립돼 향후 지속 발생할 전망인 운영·유지보수 예산을 포함한 사전 유지보수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본 사업 예산에 유지보수 비용을 별도 계상하거나, 기존 유사사업 유지보수 예산과 통합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 정례 간부회의는 도정 주요 현안, 예산 편성, 인사 등 민감한 사안이 다수 논의 되는 회의로 생중계시 정책 결정 과정의 사전 노출 및 회의 중 발언자의 신원 노출, 민감 자료의 공개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됨
- 회의 생중계 후 악성 댓글로 인한 사기 저하, 일선 공무원들의 미디어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됨

○ **정보취약계층 접근성 및 도민 피드백 메커니즘 부재**

- 본 사업은 투명한 행정 공개를 편성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유튜브 등 특정 플랫폼 사용 시 비이용 계층(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배제가 우려됨
- 회의 공개 후 도민 피드백 수집·반영 메커니즘이 없어 일방향 소통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 농업복지환경위원회

1. 예산총괄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 규모 분석

○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A)	기정 예산액 (B)	증 감	
			금액(C=A-B)	비율(C/B)
농복환위 소관 일반회계 총계	5,801,882,496	5,504,904,993	296,977,503	5.4

- **(분석의견)**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9억 7,750만원(5.4%)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이번 추경이 신규 정책 실증사업의 대규모 확대(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본예산 시기 집행부의 의도적 도비 미편성분(기초연금 유보분)을 보전하는 재정 보전 성격의 추경임을 보여줌
- 한정된 추경 재원 속에서 도 자체 소득보전 사업(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신설 등 현금성·지원성 사업에 대규모 재원이 쏠려 있어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밀 심사가 요구됨

○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특별회계 규모

- **(분석의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7억 4,809만원(1.35%) 감액 편성되었음. 이는 국비(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경정으로 법정 의무지출의 실제 수요 변동분이 반영된 결과임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A)	기정 예산액 (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의료급여 특별회계	638,535,831	647,283,925	△8,748,094	△1.35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A)	기정 예산액 (B)	증 감	
			금액(C=A-B)	비율(C/B)
총 계	**6,440,418,327**	**6,152,188,918**	**288,229,409**	**4.68**
농생명축산산업국	**1,383,244,620**	**1,184,988,470**	**198,256,150**	**16.73**
본 청 (소 계)	1,291,593,377	1,094,109,611	197,483,766	18.05
농생명정책과	664,824,377	568,991,391	95,832,986	16.84
농촌사회활력과	304,373,820	225,977,052	78,396,768	34.69
스마트농산과	133,258,295	125,712,741	7,545,554	6.00
농식품산업과	79,568,157	72,737,320	6,830,837	9.39
축 산 과	49,532,862	42,329,305	7,203,557	17.02
동 물 방 역 과	60,035,866	58,361,802	1,674,064	2.87
사 업 소 (소 계)	28,146,572	28,308,873	△162,301	△0.57
농식품인력개발원	8,661,108	8,133,108	528,000	6.49
동물위생시험소(총괄)	16,385,826	17,076,127	△690,301	△4.04
축 산 연 구 소	3,099,638	3,099,638	-	0.00
농 업 기 술 원	63,504,671	62,569,986	934,685	1.49
복지여성보건국	**4,320,548,411**	**4,248,137,963**	**72,410,448**	**1.70**
본 청 (소 계)	3,670,175,848	3,589,049,140	81,126,708	2.26
사회복지정책과	1,174,113,610	1,124,875,652	49,237,958	4.38
여 성 가 족 과	295,037,000	291,515,362	3,521,638	1.21
보 건 의 료 과	74,426,406	63,209,731	11,216,675	17.75
고령친화정책과	1,629,270,567	1,619,463,950	9,806,617	0.61
장애인복지정책과	373,149,044	369,100,647	4,048,397	1.10
건 강 증 진 과	79,493,947	77,423,572	2,070,375	2.67
감 염 병 관 리 과	40,717,336	39,491,060	1,226,276	3.11
도립여성중고등학교	1,557,078	1,558,306	△1,228	△0.08
어린이창의체험관	2,410,860	2,410,860	-	0.00
보건환경연구원	11,836,732	11,804,898	31,834	0.27
의료급여특별회계	638,535,831	647,283,925	△8,748,094	△1.35
환 경 산 림 국	**736,625,296**	**719,062,485**	**17,562,811**	**2.44**
탄소중립정책과	76,657,276	76,743,476	△86,200	△0.11
생 활 환 경 과	134,123,571	136,331,590	△2,208,019	△1.62
물통합관리과	359,441,727	348,570,625	10,871,102	3.12
산 림 자 원 과	105,146,641	96,527,850	8,618,791	8.93
산림환경연구원	61,256,081	60,888,944	367,137	0.60

<출처: 2026년도 2차 추경예산(안) 사업별설명서(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재구성>

2. 주요사업 검토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주요 분석내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계속) (농생명축산산업국 설명서 p.33)	127,582 국 51,032 도 38,275 군 38,275	51,705 국 34,202 도 8,752 군 8,752	75,877 국 16,830 도 29,523 군 29,523	• 공모 확대로 예산 증가(기정 대비 146.7%↑), 분담구조 조정(도비 30%:군비 30%) 긍정적 • 도 자체 조례(1년 거주)와 국비 지침(30일 거주) 간 자격요건 차이로 인한 혼란 야기 • 전북 동부 산악권 4개 군의 연접 지정에 따른 사업지 간 인구 이동 가능성으로 정책효과 측정의 정밀성 확보 필요
② 농어촌 활력재단 설립(신규) (농생명축산산업국 설명서 p.39)	320 도 320 (도비100%)	-	320 도 320	• 기존 위탁 센터의 재단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출연에 따른 정량적 기대 필요 • 중기재정계획 반영 전 예산이 먼저 편성된 점,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여부 검토 필요
③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신규) (농생명축산산업국 설명서 p.60)	11,309 국 3,393 도 679 시군 1,583 기타 5,655	-	11,309 국 3,393 도 679 시군 1,583 기타 5,655	• 국가 상시 지원체계 부재(정부 본예산 미편성)에 따라 추경 국비 내시에 연동되는 편성 구조 • 하반기(7~12월) 매입분 한정 지원으로 상반기 구매 농가와의 형평성 보완 필요 • 추진 근거로 기재된 비료관리법 제7조제1항의 적정성 및 세출 근거 조항 재확인 필요

사 업 명	예 산 액			주요 분석내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④ 기초연금(계속) (복지여성보건국 설명서 p.137)	1,319,437 국 1,158,388 도 31,362 시군 129,687	1,322,434 국 1,169,660 도 21,825 시군 130,949	△2,997 국 △11,271 도 9,537 시군 △1,262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른 실소요 감액 경정(국비·시군비 감액) • 도비는 본예산에서 연간 소요액의 일부(약 30%)를 미편성한 뒤 추경에서 보전하는 편성 방식으로, '추경 유보' 반복 여부 확인 필요
⑤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지원사업군 (3개사업) (복지여성보건국 p.110,120,122)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지원사업(신규)			• 취약지(4개 군 의료원) 전문의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근무수당 신설로 시의성 확보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5년 근무 약정 구조이나 국비 지속성이 확정되지 않아, 시범 종료 후 도비 부담 발생 가능성 확인 필요 • 월 400만원 수당의 유인 효과 및 성과지표에 대한 점검 필요
	96 국 48 군 48	-	96 국 48 군 48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추경성립전)(신규)			
	1,283 국 642 도 192 시 449	-	1,283 국 642 도 192 시 449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신규)			
	290 국 145 도 145	-	290 국 145 도 145	

사 업 명	예 산 액			주요 분석내용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⑥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군 (6개사업) (환 경 산 림 국 p.48~53)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계속)			• 전환지원금 대폭 감액(65%)으로 도비 감액 발생, 당초 수요 추계와 실수요 간 차이 확인 • 감액 재원이 타 차종 증액분과 상계되는 사업 간 물량 재배분 구조 • 하반기 수요를 상반기 집행 실적 기준으로 산정한 편성으로, 하반기 수요 발생 시 대응 여부 확인 필요
	47,745 국 24,015 도 7,119 시군 16,611	45,990 국 23,148 도 6,853 시군 15,989	1,755 국 867 도 266 시군 622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계속)			
	28,364 국 16,870 도 3,448 시군 8,046	27,165 국 16,140 도 3,306 시 7,718	1,199 국 730 도 141 시 328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계속)			
	874 국 437 시군 437	1,358 국 679 시군 679	△485 국 △242 시군 △242	
	전기버스 구매지원(계속)			
	8,005 국 4,925 도 924 시군 2,156	8,495 국 4,575 도 1,176 시군 2,744	△490 국 350 도 △252 시군 △588	
	대중교통 전기버스 전환지원(국가직접)(신규)			
	4,480 국 <2,240> 도 672 시군 1,568	-	4,480 국 <2,240> 도 672 시군 1,568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계속)			
	3,128 국 2,406 도 217 시군 505	8,981 국 7,007 도 502 시군 1,471	△5,853 국 △4,601 도 △286 시군 △966	

※ 백만원 미만 반올림으로 세부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계속)

(예산안 p.285), (농생명축산산업국 사업설명서 p.33)

□ 예산안

(단위: 천원 /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균 특	51,032,000	34,202,000	16,830,000	49.21
도 비	38,275,000	8,751,600	29,523,400	337.35
군 비	38,275,000	8,751,600	29,523,400	337.3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내용)**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4개 군(진안, 무주, 장수, 순창) 주민 96,768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2025년 9월 농식품부 공모에서 순창군이 최초 선정(2026~2027년 시행)되었고, 2026년 상반기 전국 5개 군 추가 공모에서 전북은 무주·진안 2개 군을 확보하여 장수·순창과 함께 총 4개 군으로 확대됨

※ 총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 (2년간)

○ **(사 업 비)** 127,582,000천원(균특 51,032,000, 도비 38,275,000, 군비 38,275,000)

※ 재원분담 : 국비(균특) 40%, 도비 30%, 군비 30%

구 분		인구 (명)	2026년 예산액(백만원)				추경반영 (도비)
			합계	국비(40%)	도비(30%)	군비(30%)	
합 계		96,768	127,585	51,033	8,752	38,275	+29,523
기존 (1년)	소 계	48,753	85,506	34,202	8,752	25,652	+16,900
	장수군	21,169	36,886	14,754	4,814	11,066	+9,772
	순창군	27,584	48,620	19,448	3,938	14,586	+7,122
추가 (6월)	소 계	48,015	42,077	16,831		12,623	+12,623
	진안군	24,689	22,050	8,820		6,615	+6,615
	무주군	23,326	20,027	8,011		6,008	+6,008

<출처: 2026년도 하반기 도의회 업무보고 보조자료(농생명축산산업국) p.82>

□ 주요 현안

○ 추진사업 검토

- **(예산 규모의 급증)** 2026년 본예산 요구 시(2025.11.) 순창군 단독 기준 486.2억원으로 편성됐던 사업이, 2차 추경에서 4개 군으로 확대되며 1,275.8억원으로 146.7% 증가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식품부 공모 발표('25. 9.)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25.8.8.)**를 선제적으로 제정함

- 이러한 사전 조례 정비는 도비 지출의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시범사업 종료(2년) 후 자체 지속 여부를 판단할 규범적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 이점이 있음

○ 지급 요건 안내의 명확화

- **(조례와 집행 기준의 관계)**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 제8조는 거주 요건을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 지급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지침인 '30일 이상 거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국비 보조사업은 국비 지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례와 집행 기준이 다른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두 기준이 병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기준이 다를 경우 주민이 자격 요건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되는 지급 요건(30일 이상 거주)을 명확히 안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신규 확대지역의 정책효과 검증 문제

-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진안, 무주, 장수, 순창은 전북 동부 산악권에서 지리적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동일 생활권역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국 단위 동일 사업 분석에서 '연접 지역이 사업지가 되면 인구 이동이 복잡하게 얽혀 정책효과 측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6.4.), p.365～366

○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지적되었던 시군 부담이 컸던 분담률이 이번 추경을 통해 '도비 30% : 군비 30% 동률'로 조정되어, 시군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는 개선 성과가 나타남
- 그러나 분담 비율 상향 조정과 대상 지역 확대가 결합하면서, 도비 매칭 의무 부담액은 기정예산 87억 5,160만원에서 추경 후 382억 7,500만원으로 약 4.4배(295억 2,340만원) 증가하였는바, 중기 재정 여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 **분석 의견**

○ **지급 요건 혼선 방지를 정비**

- 조례 기준(1년 이상)과 실제 적용 기준(30일 이상)이 병존하여 주민이 자격 요건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바, 실제 적용되는 지급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정책효과 검증을 고려한 시범사업 관리**

- 동부 산악권 연접 지역은 사업지 간 주민 이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시범사업 종료 이후 성과 평가 및 비교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국회 예산정책처도 시범사업 본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 선정 기준 마련과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를 참고하여 시범 구역 내 주민 이동이 성과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분담구조 개선의 안착과 도 재정 지속가능성 관리**

- 도비 비율 상향으로 군 부담 완화라는 개선이 이뤄진 만큼, 이를 일회성 조정이 아닌 확정된 기준으로 안착시키고, 약 4.4배로 늘어난 도비 부담(연 382.8억원 규모)의 중기 재정 영향과 시범사업 종료 후 계속 시행 시나리오별 소요 추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종합 판단**

- 본 사업은 자체 조례의 선제적 정비, 대상지 확대, 재원 분담 구조 조정(도비 30%로 상향)이라는 행정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 다만, 사업비 증액과 함께 지급 요건 안내, 연접 지역 간 주민 이동에 따른 성과 측정의 어려움, 도비 부담액 약 4.4배 증가에 따른 재정 지속가능성 등의 검토 과제가 함께 확인되는바, 지급 요건 안내 명확화 및 정책효과 검증 방안 보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농어촌 활력재단 설립(신규)

(예산안 p.286), (농생명축산산업국 사업설명서 p.39)

□ 예산안

(단위: 천원 /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도 비	320,000	-	320,000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촌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시험준비 비용

○ (기간/규모) 2026.7.~12. / 1식

○ (사업내용) 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직원채용 필기시험 비용 편성

○ (사 업 비) 320,000천원 (도비 100%)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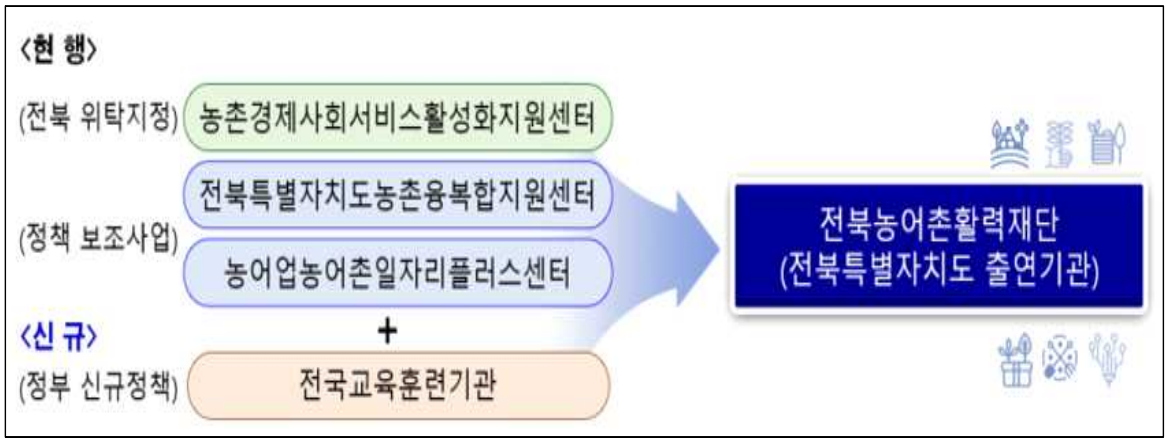
□ 주요현안

○ 추진사업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 기조에 발맞추어 전국 최초 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돌봄서비스 전국 최다(27개소) 운영, 전국 교육훈련기관 유치 등 농촌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옴

- 업무보고에 따르면 재단 설립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흐름 속에 있음. 조례 제정('26.2.)과 발기인 대회를 마친 후, 이번 추경에 기본재산을 출연함으로써 기존 민간 위탁 체제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공식 법인 재단으로 전환·확장하는 중간 단계에 진입한 현상이 관찰됨

<전북자치도 농어촌활력재단 개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최초, 전북도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본격 추진」 보도자료, 2025. 11.>

○ **출연기관 신설에 따른 검토 필요 사항**

- 이번 추경안은 재단 설립 기본재산 3억원과 채용 필기시험 위탁비 2,000만원 등 총 3.2억원 규모로 구성되어 재정적 경계심이 낮아지기 쉬운 구조를 띠고 있음
- 재단을 세우면 이후 매년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같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이를 도비로 지원해야 함.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출범 후 해마다 얼마가 필요한지, 그 비용을 도비로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음. 지금은 3.2억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매년 큰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음

○ **절차 역전 현상**

- 재단이라는 출연기관을 신설하면서도 중기 재정 전망을 담은 중기재정계획 사전 수립을 누락하고 예산안 사전절차란에 '26년 11월 예정'으로 기재함
- 이는 재정적 타당성과 연차별 소요 예측이 기구 신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신설과 예산 편성을 먼저 단행한 뒤 재정 계획을 사후에 뜯어 맞추는 전형적인 '선 예산 편성 및 사후 계획 수립의 행정 역전 현상'을 의미함

□ 분석의견

○ 기대효과의 정량화 및 성과협약 요구

- 재단 설립의 기대효과(농촌 서비스 수혜 인원, 국비 수탁사업 확대 목표, 일자리 창출 등)를 정량 지표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출범 후 성과평가와 연계한 출연금 조정 원칙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연간 운영비 추계 및 자립도 목표 제출 요구

- 2027년 공식 출범 이후 향후 5개년 간 연간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의 상세 추계 자료 및 정원 계획안을 확보하여 장기 재정 부담을 정밀 분석해야 함

○ 종합 판단

- 농촌 돌봄 및 경제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대의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적인 여건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이번 3.2억원은 단순한 소액 편성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출연기관을 새로 만드는 첫 단계에 해당함. 따라서 예산안 승인과 함께 향후 늘어날 재정 부담 추계,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복 정리 방안, 자체 성과평가 체계 마련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5.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신규)

(예산안 p.293), (농생명축산산업국 사업설명서 p.60)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국 비	3,392,830	-	3,392,830	신규
도 비	678,565	-	678,565	신규
시 군 비	1,583,319	-	1,583,319	신규
기 타	5,654,714	-	5,654,714	신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

○ **(기간/규모)** 2026.7. ~ 12.(하반기 한정) / 84,228톤

○ **(사업내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

○ **(사 업 비)** 11,309,428천원(국비 3,392,830, 도비 678,565, 시군비 1,583,319, 기타 5,654,714)

- 편성사유: 농식품부 국비 확정 내시 및 사업량 통보

※ 재원분담 :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 50%(농협 30, 자담 20)

□ 주요현안

○ **추진사업 검토**

- 본 사업비(113억 942만 8천원)의 재원 구조는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 50%로 분담되어 있음
- 지자체가 부담하는 20%의 재원에 더해, 농협 자체 부담(30%)과 농가 자부담(20%)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가격 급등에 따른 리스크와 실제 재정 부담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농협), 개별 농가가 나누어 짊어지는 '4자 리스크 분산 매칭 구조'로 설계되어 집행되는 현상을 보여줌

○ **국가 상시 지원체계 부재와 추경 의존 구조**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예산은 2024년부터 정부 본예산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원 역시 위기 시 추경을 통한 국비 통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실제 총사업비 기준 톤당 지원 규모도 2022년 58만원에서 2025년 8만원 수준으로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25년 12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으나, 부칙상 제7조(가격 급등 시 상승분 지원) 등의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7년 12월로 유예되어 있음. 시행 이후에도 하위법령 정비와 가격 급등 요건 충족을 거쳐 예산이 반영되는 구조여서, 법에 따른 실제 농가 지원은 2028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임
- 다만 이 법과 별개로 본예산 편성은 현재도 가능하므로, 본예산 미편성은 법 시행 지연과는 구분되는 사안임. 전북의 이번 국비 배정(33.9억원)도 '국가 차원의 상시 예산 미편성 → 위기 시 국비 추경 내시 → 지방비 추경 매칭'이라는 대응 구조에 연동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북자치도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내역>

연도	사업량(톤)	사 업 비(백만원)					비고 (재원 비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529,536**	**156,452**	**46,934**	**9,386**	**21,904**	**78,228**	
'26년	84,228	11,309	3,393	678	1,583	5,655	국비 30%, 도비 6%, 시군비 14%, 기타 50%
'25년	123,462	11,004	3,301	660	1,541	5,502	
'24년	54,702	13,540	4,062	812	1,896	6,770	
'23년	138,784	46,097	13,829	2,765	6,453	23,050	
'22년	128,360	74,502	22,349	4,471	10,431	37,251	

* 무기질 비료 지원은 정부예산이 반영되어 전북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도 자체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출처: 농생명축산산업국 제공>

○ **지출 근거 표기의 부정확성과 관행적 행정 현상**

- 사업설명서상 추진 근거로 기재된 '비료관리법 제7조 제1항'이 개별 농가에 가격 인상분을 직접 보조하는 이번 사업의 지출 성격과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함
- 예산 설명 자료에 구체적인 세출 근거(하위 지침·사업시행지침 등)보다 상위 법령 조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집행 근거에 해당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근거 표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중기재정계획 누락 및 선 편성 후 계획 수립**

- 본 사업도 신규 대형 도비 사업인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거치기 전에 편성되어, 예산서상 '중기재정계획: 26년 11월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음
- 긴급 국비 내시에 따른 편성이라는 사정은 있으나, 예산이 먼저 편성된 뒤 중기재정계획이 후행하는 방식이 여러 농정 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바, 재정의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와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분석의견**

○ **국가 상시 지원체계 부재에 따른 지방 부담**

- 정부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사업 기간이 불확실해지고 예산 편성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매해 반복되는 비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내시 통보를 기다리는 방식과 함께 도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원단가 사전 설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반기 편성 반복의 구조적 원인 및 조기 편성 기반 마련**

- 이 사업이 매년 하반기에 편성되는 데에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연초에 배정되는 재원이 없고, 가격 상승이 확인된 뒤 국비 내시가 이루어지는 사후 대응 방식이며, 그 재원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의존하다 보니 편성 시점이 연중 후반이 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영농이 시작되는 상반기에는 지원 여부와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바, 도 차원에서는 지원 대상 기간의 소급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

6. 기초연금(계속)

(예산안 p.202), (복지여성보건국 사업설명서 p.137)

□ 예산안

(단위: 천원 /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국 비	1,158,388,366	1,169,659,664	△11,271,298	△0.96
도 비	31,362,083	21,825,336	9,536,747	43.70
시 군 비	129,686,883	130,948,753	△1,261,870	△0.9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매월 고정적인 소득 제공으로 노년 생활 안정 도모

○ **(기간/규모)** 2026.1. ~ 12. / 334,000여명

○ **(사업내용)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25일 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 지급**

○ **(사 업 비)** 1,319,437,332천원(국비 1,158,388,366, 도비 31,362,083, 시·군비 129,686,883)

- 감액사유: 2026년 예산 도비 부담 추경 유보분 편성 및 기초연금 실수요 조사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 일괄 감액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171(2025.12.10.)]

※ 재원부담: **(전주)** 국고 80% 도비 4%, 시군비 16% / **(그 외)** : 국고 90%, 도비 2%, 시군비 8%

□ 주요현안

○ 추진사업 검토

- 이번 추경은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되어 있음: ① 국비가 복지부 변경내시로 112.7억원 감액(수급자 수·단가 재산정 반영), ② 도비는 95.4억원 증액
- 도비 증액분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감액사유란에 명시된 대로, 이는 신규 소요가 아니라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도비 부담분의 일부를 미편성한 뒤 추경에서 채워 넣는 것으로 나타남

※ **법정 의무지출의 '추경 유보' 편성 관련** – 기초연금 도비 부담은 「기초연금법」 제25조와 도 조례에 따른 법정 의무 매칭 지출로, 연간 소요액이 본예산 편성 시점에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항목임. 그럼에도 본예산에서 도비 소요의 약 30%(95.4억원 / 313.6억원)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반영하는 방식은, 본예산에 연간 소요를 온전히 담는 원칙과는 차이가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관행적 재정운용상 문제점

- **(본예산 심사의 실효성 저하)** 법정 의무지출임에도 실제 연간 소요액보다 적은 규모만 본예산에 반영될 경우, 의회는 연간 재정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경 의존 관행)** 예측 가능한 법정 의무지출의 일부를 본예산에서 제외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본예산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이 약화되고 추경이 사실상 정례적인 재원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 **(재정운용의 불확실성)** 기초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법정 의무지출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 확보가 추경에 의존할 경우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기초연금은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만큼 필요한 예산을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분을 다른 재원이나 불용액으로 충당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한 바 있음

□ 분석의견

○ 유보 편성의 규모·기준 공개 요구

- 2026년 본예산에서 기초연금 도비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유보했는지, 기초연금 외에 동일하게 '추경 유보' 방식으로 편성된 법정 의무지출이 몇 개 사업, 총 얼마인지 전수 자료 제출이 필요함

○ **본예산 완전 편성 원칙 확립 요구**

- 법정 의무지출은 본예산에 연간 소요 전액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보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와 규모를 본예산 심사 시 명시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종합 판단**

- 이번 기초연금 추경 편성 자체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나, 그 원인이 된 '도비 유보' 관행은 1조 3,194억원 규모의 도내 최대 단일 복지사업에서조차 본예산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재정운용 관행 전반에 대한 감사·개선 요구의 근거로 삼을 만함

7.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지원사업군(3개 사업)

(예산안 p.197,199), (복지여성보건국 사업설명서 p.110,120,122)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지원사업(신규)	96,000 국 48,000 군 48,000	-	96,000 국 48,000 군 48,000	신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경성립전)(신규)	1,283,000 국 641,500 도 192,450 시비 449,050	-	1,283,000 국 641,500 도 192,450 시비 449,050	신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신규)	290,000 국 145,000 도 145,000	-	290,000 국 145,000 도 145,000	신규

□ 사업개요

○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지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하여 무주·장수·임실·순창 4개 군 보건의료원의 전문의 채용 시 지역근무수당(월 400만원) 지원

- (편성사유) 지역근무수당 지원으로 의료취약지역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1113(2026.6.26.)]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

○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정읍아산병원을 거점으로 2차병원-의원 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협력체계 구축, 인건비·시설장비비·운영비 지원

- (편성사유)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편성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834(2026.3.13.)]

- (추진근거) 「지역필수의료법」 제3조·제10조 근거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5년 이내 신규 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과 5년 이상 근무 계약 시 지역근무수당(월 400만원) 지원

- 지역필수의사 20명, 권역지원센터 1개소(공공보건의료지원단), 참여기관 전북대병원·예수병원·군산의료원·원광대병원·남원의료원

□ 주요현안

○ 추진사업 검토

- **(시의성)** 세 사업 모두 의정 갈등 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책 패키지의 지자체 이행분으로, 2026년 제정·시행된 「지역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첫 예산임. 전북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복지부 6.26. 통보)된 것은 의료취약지 비중이 높은 도의 여건상 의미가 큼
- **(공중보건의 감소의 심각성)** 보건의료원 전문의료인력 지원사업의 편성 사유 자체가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응'임. 무주·장수·임실·순창 4개 군은 민간 의료기관이 사실상 부재하여 보건의료원이 지역 유일의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곳들로, 공보의 감소가 곧 의료공백으로 직결되는 지역임

○ 편성 규모의 실효성 검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20명 × 월 400만원 × 3개월 = 2.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제 수당 지급 기간이 연내 3개월(10~12월)에 불과함. 하반기 공모 선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2027년 본예산에서 12개월분(9.6억원+센터운영비)으로 4배 이상 확대가 예정된 만큼 지속 재원 계획을 함께 확인해야 함
- 보건의료원 전문의 지원은 4개 군 합계 9,600만원(전문의 월 400만원 × 6개월 × 4명 상당)으로, 군당 전문의 1명 수준의 소규모임. 월 400만원 수당이 민간 대비 낮은 군지역 보건의료원 급여 격차와 근무여건 등을 메우기에 충분한 유인인지 실효성 검토가 필요함

 ※ 신규 필수의료 사업 3건 모두 '중기재정계획: 26.11. 예정' – 국비 공모·내시일정(3~6월)과 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주기가 어긋나 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예산이 선편성되는 절차 역전이 복지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

□ 분석의견

○ 정부 정책 이행 사업으로서의 시의성은 충분

- 의료취약지가 많은 전북 여건상 필수의료 관련 국비 사업의 적극 유치는 바람직하며, 시범사업 선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 **'시범사업 이후'에 대한 준비 요구**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사와 '5년 근무'를 계약하는 구조인데 시범사업 기간·국비 지속성은 보장되어 있지 않음. 시범 종료 후 국비가 중단될 경우 5년 계약 잔여기간의 수당 부담이 도비로 전가될 수 있음

○ **성과지표 사전 설정 요구**

- 세 사업 모두 '의사 확보'가 목적이므로, 연말까지 실제 채용·계약 인원, 대상 기관별 충원률 등 정량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2027년 본예산 심사 시 실적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8.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군(6개 사업)

(예산안 p.225), (환경산림국 사업설명서 p.48~53)

□ 예산안

(단위: 천원 /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재원분담 (국:도:시군)	증감률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계속)	47,745,000	45,990,000	1,755,000	50:15:35	3.82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계속)	28,364,000	27,165,000	1,199,000	60:12:28	4.41
전기버스 구매지원(계속)	8,005,000	8,495,000	△490,000	61:12:27	△5.77
대중교통 전기버스 전환(신규)	4,480,000	-	4,480,000	50:15:35	신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계속)	873,600	1,358,400	△484,800	50:0:50	△35.69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계속)	3,127,800	8,980,580	△5,852,780	77:7:16	△65.17
합 계(총사업비 기준)	92,595,400	91,988,980	606,420		0.66

□ 사업개요

○ 6개 사업은 같은 부서(생활환경과)·정책사업(생활환경 역량 강화)·법적 근거 아래 편성된 전기차 보급 정책 패키지로, 차종별 구매보조 4종(승용·화물·이륜·버스), 공공 전환 지원 1종(대중교통 전기버스), 내연차 전환 인센티브 1종(전환지원금)으로 구성됨

- **(구매보조 4종)** 전기차 구입비용을 차종별로 보조 – 전기승용차 4,003대, 화물차 1,687대, 이륜차 546대, 버스 62대
- **(대중교통 전기버스 전환·신규)** 대중교통 등 공공성과 연계된 법인·개인사업자의 전기버스 전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편성(32대, 44.8억원)
- **(전환지원금)**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폐차·이전 후 구매) 시 일반 구매보조에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 대당 국비 100만원+도비 9만원+시군비 21만원, 계 130만원

□ 주요현안

○ 전환지원금 66% 감액의 실체

- 2026년 본예산 신규사업으로 도입되며 목표 7,007대(75.1억원)로 편성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실수요 2,406대(34.3%)로 감액됨.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추계가 실수요의 2.9배에 달했던 것
- 사업설명서상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6년 6월말 집행액은 2,622,540천원인데, 감액 조정 후 예산액(요구액)도 정확히 2,622,540천원으로 완전히 일치함. 즉 '연간 예산 = 상반기 집행 실적'으로 재단하여 하반기 신규 수요를 문자 그대로 0대로 가정한 편성임

 ※ 감액 후 예산이 6월말 집행액과 동일한 금액(2,622,540천원, 도 계상액 기준)으로 편성되어, 하반기에 새로 발생할 전환 수요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시장 위축'이 아니라 '사업 설계'의 문제

- 같은 추경에서 승용(+145대)·화물(+73대)·버스(+5대)는 모두 수요 증가로 물량이 상향 조정됨. 전기차 수요 자체는 견조함이 같은 과의 예산서로 입증되므로, '전기차 시장 위축'은 전환지원금 감액의 설명이 될 수 없음
- 감소는 전환지원금과 이륜차라는 특정 유형에 국한됨. 전환지원금은 일반 구매보조를 받은 사람이 기존 내연차 폐차·이전이라는 추가 조건을 이행해야 대당 130만원을 더 받는 구조인데, 차량 말소라는 번거로움과 중고차 잔존가치 포기 대비 130만원의 유인이 소비자 행동을 바꾸기에 부족했다는 해석이 가능함

○ 전기차 보급 사업군 과다 편성 전례

- 전기승용차 연도별 현황을 보면 '25년에도 본예산(도 계상액) 344.3억원이 최종 288.4억원으로 16.3% 감액 경정된 바 있음. 즉 수요 과다 추계가 전환지원금만의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보급 사업군 전반의 반복적 경향이며, '26년 승용차 본예산(300.0억)이 전년 최종예산(288.4억)보다 다시 높게 설정된 점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전북자치도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6월말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기정예산 (1회추경)
예산액	31,290,100	30,523,800	34,434,000	28,837,500	30,000,600	변동없음
집행액	30,523,800		28,837,500		18,587,400	

<출처: 전북자치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사업별설명서(환경산림국)>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차종별 결산 현황(지자체자본보조)>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전기 승용	702,000	637,350	532,350	525,371
전기 승합	153,050	153,050	153,050	131,739
전기 화물	546,000	331,650	331,650	295,910
전기 이륜	16,000	16,000	16,000	12,613

<출처: 2026년도 제1회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2026.4.), p.640 발췌>

○ **제각각인 재원분담 구조**

- 6개 사업의 재원분담이 국비 50~77%, 도비 0~15%, 시군비 16~50%로 모두 다름. 특히 전기이륜차는 도비가 전혀 없이 국비 50%·시군비 50%로만 구성되어, 도가 이륜차 보급에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구조임. 배달업 증가로 이륜차 배출가스·소음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비 미투입과 수요 저조(△36%)가 무관한지 검토가 필요함

□ 분석의견

○ **신규 보조사업 수요 추계 근거 제출 의무화**

- 전환지원금 7,007대 목표의 산정 근거(도 자체 조사, 환경부 배분 물량, 타 시도 실적 참고 여부 등)를 확인하고, 향후 신규 현금성 보조사업 편성 시 수요조사 결과·유사 지자체 실적 등 추계 근거 자료를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하반기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상반기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 이번 감액에 대해, 하반기 수요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사업 간 물량 재배분 운영 체계 검토**

- 이번처럼 같은 사업군 내에서 감액과 증액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차종·유형 간 수요 변동을 연중 반영해 물량을 조정하는 운영 체계(환경부 물량 변경 협의 절차 포함)를 활용하면 추경을 거치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전기차 보급 총량 목표는 유지하되 유형 간 물량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륜차 보급 정책의 방향 설정**

- 현행처럼 도비 없이 보급 목표만 부여하는 방식은 시군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재원 분담과 보급 목표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 판단**

- 사업군 총액은 6.06억원 순증에 그쳤으나, 사업군 내부에서는 약 70억원 규모의 예산 재조정이 이루어져 차종별 수요 변화에 따른 예산 조정이 큰 폭으로 발생하였음
- 특히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의 대규모 감액과 일부 사업의 증액이 동시에 이루어진 점은 당초 수요예측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줌. 또한 일부 사업은 상반기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어 연간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향후에는 차종별 보급실적과 신청 추이,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예측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업군 내 반복적인 예산 재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반의 물량 산정 및 예산편성 체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3 경제산업건설위원회

1. 예산총괄

□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기준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6,814억 119만 5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인 1조 5,237억 8,513만 원보다 1,576억 1,606만 5천원(10.34%)이 증가한 수치임

□ 주요 국·실별 예산 현황 및 분석

○ **(가장 높은 증가폭)**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액은 6,381억 4,17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4%(약 1,043억원) 증가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가장 큰 증액 규모를 기록했으며, 특히 일자리민생경제과의 예산이 32.15%(약 1,052억원) 급증하며 전체 증액을 주도했으며, 반면 기업애로해소과(△9.23%)와 창업지원과(△5.34%)는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음

○ **(안정적 성장)**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5,013억 5,28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약 579억원) 증가했으며, 주택건축과의 예산이 18.6%(약 374억원) 늘어나며 건설교통국 내에서 가장 큰 증가액을 보였고, 도로관리사업소(15.5%) 또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

○ **(신산업 집중)** 미래첨단산업국 예산액은 1,526억 8,8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1%(약 166억원) 증가했으며, 청정에너지수소과가 40.31%(약 126억원) 증가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예산 감소)** 새만금해양수산국 예산액은 3,892억 1,79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약 212억 원) 감소하여 위원회 내에서 유일하게 예산 규모가 줄어든 부서로서, 주요 감소 원인은 새만금지원수질과의 예산이 7.94%(약 237억 원) 삭감된 것에 기인하고 있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 (B)	증 감	
			금액(C=A-B)	비율(C/B)
계	**1,681,401,195**	**1,523,785,130**	**157,616,065**	**10.34%**
건 설 교 통 국	**501,352,894**	**443,398,173**	**57,954,721**	**13.1%**
건 설 정 책 과	48,070,804	45,545,804	2,525,000	**5.5%**
도로공항철도과	62,142,125	59,142,125	3,000,000	**5.1%**
교 통 정 책 과	100,293,759	91,658,204	8,635,555	**9.4%**
주 택 건 축 과	238,518,514	201,063,124	37,455,390	**18.6%**
토 지 정 보 과	7,107,120	6,829,077	278,043	**4.1%**
도로관리사업소	45,220,572	39,159,839	6,060,733	**15.5%**
기업유치지원실	**638,141,715**	**533,834,041**	**104,307,674**	**19.54%**
일자리민생경제과	432,374,429	327,181,108	105,193,321	**32.15%**
기 업 유 치 과	134,850,246	133,215,375	1,634,871	**1.23%**
기업애로해소과	39,309,479	43,305,479	△3,996,000	**△9.23%**
금융사회적경제과	14,867,871	12,447,389	2,420,482	**19.45%**
창 업 지 원 과	16,739,690	17,684,690	△945,000	**△5.34%**
미래첨단산업국	**152,688,638**	**136,070,163**	**16,618,475**	**12.21%**
이차전지탄소산업과	46,913,805	43,480,805	3,433,000	**7.90%**
전 환 산 업 과	30,205,212	29,344,012	861,200	**2.93%**
청정에너지수소과	44,116,901	31,441,901	12,675,000	**40.31%**
바이오방위산업과	22,404,355	23,127,355	△723,000	**△3.13%**
디 지 털 산 업 과	8,993,590	8,676,090	317,500	**3.66%**
현대자동차투자	54,775	-	54,775	**순증**
새만금해양수산국	**389,217,948**	**410,482,753**	**△21,264,805**	**△5.18%**
새만금지원수질과	275,162,014	298,887,178	△23,725,164	**△7.94%**
수 산 정 책 과	69,902,781	67,586,064	2,316,717	**3.43%**
해 양 항 만 과	29,083,338	28,553,579	529,759	**1.86%**
수산기술연구소	15,069,815	15,455,932	△386,117	**△2.50%**

2. 주요사업 검토내용(요약)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주요 분석내용
	2026년 제2회 추경 요구액(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①지방도 확포장사업 (사업설명서 p.43)	2,500,000	10,900,000	△8,400,000	• 지방채 발행 중 도비 감액 정산의 모순 • 중기지방재정계획 무력화 및 집행률 부진
②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설명서 p.49)	128,280	104,940	23,340	•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에 따른 사업 진행 필요 • 고령운전자 연령하향 및 지원금액 및 방안 검토 필요
③민선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신규) (사업설명서 p.26)	50,000	-	50,000	• 시기의 적절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 전북연구원(JRI) 수행을 통한 예산 절감 검토
④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설명서 p.27)	145,212	140,700	4,512	• 국비 비율 상향(50%)에 따른 산출 근거 미흡 • 물가안정 기여도 등 실효성 제고 대책 요구
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신규) (사업설명서 p.60)	267,314	-	267,314	• 단기 인턴(5개월)의 영세 마을기업 지원 한계 • 기존 유사 청년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
⑥가정형 태양광 지원 사업(신규) (사업설명서 p.42)	122,000	-	122,000	• 도비분담율(4%) 과소함으로 정책 체감도 저하 • 6개월내 3,050세대 설치의 물리적 집행 불능
⑦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용역(신규) (사업설명서 p.43)	150,000	-	150,000	• 지방재정법상 추경 요건 및 독립 원칙 위배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 반영의 절차적 하자
⑧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신규) (사업설명서 p.54)	245,655	-	245,655	• 유가 폭등에 따른 긴급성 및 타당성 인정 • 사후보전 탈피 및 어업 체질 개선 연계 필요

3. 지방도 확포장사업

도로공항철도과
(예산안 p.242 사업설명서 p.43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계	31,000,000	30,000,000	1,000,000
도비	2,500,000	10,900,000	△8,400,000
지방채	26,200,000	19,100,000	7,100,000
특교세	2,300,000	-	2,300,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방도 개설 및 확장을 통한 교통망 확충으로 도민 교통편의 제공

- 추진근거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제1항

○ **(사업내용)**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

- 증액사유 : 공사지구(10개소) 계획년도 준공을 위한 시설비 증액

※ 특교세 확보에 따른 기정예산 재원 일부를 도비에서 특교세로 변경

○ **(예산내역)** 31,000백만원(도비 28,700, 특교세 2,300) ※ 도비 100%

- 기정예산 : 30,000백만원(도비)
- 증 감 액 : 1,000백만원(특교세 2,300, 도비 △ 1,300)

□ 분석의견

○ 추진사업 검토

- '26년 본예산에서 30,0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9,100,000천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26년 제2회 추경에서는 31,0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채를 7,100,000천원 증액**하고 **도비는 8,400,000천원 감액편성**하였으며, **특교세 2,300,000천원**을 **반영**하였음

- **(신속한 사업 집행)**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도로 포장률이 가장 낮은 곳**이지만 **매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 상황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예산 집행**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 6월말
최종예산	52,000,000	48,800,000	38,000,000	30,000,000
집행액	45,098,407	46,094,931	27,505,144	7,251,237
집행률	86.7%	94.5%	72.4%	24.1%

○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자체 재원(도비)은 감액하는 재정 운용의 모순**

- **(지방채 전환)** 이번 추경에서 전북자치도는 지방도 확포장 등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를 줄이고 그 자리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재정 운용**을 단행하였음

-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체 가용 재원(도비)이 극도로 부족하여 빚을 내서 사업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뜻임

- 그런데 추경예산(안)에서 '26년 본예산 대비 **지방채 71억원 증액**하고, 가용 재원인 **도비를 84억원 감액**(사업별 설명서상은 도비 13억원 감액)하여 다른 **사업**이나 **경상경비로 돌려쓰기(재원 전용)** 한 것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운용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사료됨

- **(도비 감액)**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업별 설명서(건설교통국, p43)에서는 특교세 확보에 따른 **도비 13억원을 감액 처리**한 것으로 표현함

- **특교세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을 때, **기존 도비를 감액하는 것보다 확보된 특교세만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여 도민의 빚 부담을 경감(재정건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계획성 없는 재원 변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무력화 및 예산 사장**

- **(계획성 원칙)** 도비 100% 자체 재원 사업으로 계획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까지 완료한 계속사업을, **추경에서 급조하여 재원을 변경**함으로써 「국가재정법」상의 **계획성 원칙을 위배 소지**가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 본 사업은 **2025년 11월 7일, '26년 "도비 100%" 투입을 전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액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

(단위: 백만원)

재원	소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170,000	30,000	32,000	34,000	36,000	38,000
시도비	140,400	400	32,000	34,000	36,000	38,000
지방채	29,600	29,600				

- **(재정 예측 신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도비가 안정적으로 로드맵에 맞춰 투입되어야 함에도, **추경에서 지방채 전환 및 특교세 감액 정산 등 임의로 세입 재원을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 예측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음

○ **집행률 부진 상황에서의 보여주기식 예산 증액 여부 검토**

- **(집행 가능성)** 매년 이월 금액 발생 및 상반기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연도 내 준공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추가 증액한 것은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예산 집행률)** 2026년 6월 말 기준 본 사업의 기정예산 300억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72억 5,100만원으로 집행률이 고작 24.1%에 불과**하여, 상반기 동안 예산의 4분의 1도 집행하지 못한 상태임

- 결국 이 사업은 연말에 대규모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발생시키거나 불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추경예산의 기본 요건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경시한 것**으로 보임

4.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교통정책과
(예산안 p.244, 사업설명서 p.49)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계	256,560	209,880	46,680
국비	128,280	104,940	23,340
도비	128,280	104,940	23,34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지역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

○ **(사업내용)** 고령운전자가 면허반납 시 지역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 **(예산내역)** 855백만원(국비 128, 도비 128, 시군비 599) ※ 국 15%, 도 15%, 시군 70%

- 기정예산 : 700백만원(국비 105, 도비 105, 시군비 490)
- 증 감 액 : 155백만원(국비 23, 도비 23, 시군비 109)

□ 분석의견

○ **전북자치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 현황**

- **(현황)**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은 14개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6년에는 4,276명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고, **'25년 3,496명 대비 22.3% 증가**하였음

- **(지원 금액)** 현재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는 고령운전자를 조례에 따라 70세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상 **지원금액은 부안군 300천원**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200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26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연령	지원금액	지원상품	지원인원	총사업비
	70세	**200**	**교통카드, 상품권, 현금**	**4,276**	**910,250**
군산시	70세	200	교통카드, 지역상품권	632	126,400
전주시	70세	200	교통카드 또는 선불카드	1,576	315,200
익산시	70세	200	교통카드	789	157,800
정읍시	70세	200	지역상품권	275	55,000
남원시	70세	200	현금	155	31,000
김제시	70세	200	지역상품권	198	39,600
완주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118	23,600
진안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88	17,600
무주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44	8,800
장수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44	8,800
임실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44	8,800
순창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77	15,400
고창군	70세	200	지역상품권	118	23,600
부안군	70세	300	지역상품권	118	23,600

※ 자료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내부자료

○ **고령운전자 사고 현황**

- **(노인 인구 현황)** 전북자치도는 2024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3만 2,19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4.8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 (26.85%), 경북 (25.54%), 강원 (24.91%)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임

-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사고를 사전에 방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시도	연도	2023	2024	2025
합계	사고[건]	39,614	42,369	45,873
	사망[명]	745	761	843
	부상[명]	56,067	59,776	63,640
전북	**사고[건]**	**1,465**	**1,588**	**1,592**
	사망[명]	**62**	**66**	**62**
	부상[명]	**2,090**	**2,286**	**2,227**

주1)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 가해운전자(당사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교통사고**
주2) 부상자수 = 중상자수 + 경상자수 + 부상신고자수
※ 자료 : 한국도로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고령운전자의 연령 기준 검토**

- **(고령운전자 기준)** 현행 법령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2에서는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서도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고령운전자)** 전북자치도의 고령운전자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7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분류하고 있음

- **(고령운전자 기준 변경)** 금번 회기에서 고령운전자를 현행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바, 향후 전북자치도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후 사업 시행 주체인 **시군의 조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많은 고령운전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지원 확대)** 또한 현행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상품에 대한 개발을 통하여 많은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과 더불어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 **국비 지원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국비 지원 사업)** 현**재** 고령운전자 반납 예산은 **국비 15%(경찰청)**로 대부분 지방비를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국비 예산 확대) 2025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운전면허 반납률은 평균 2.4%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운전면허를 포기하는 대가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실제 운전을 하지 않는 면허소지자가 집중적으로 반납하는 등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음

5. 민선9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신규)

일자리민생경제과
(예산안 p.258, 사업설명서 p.26)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도비	50,000	-	50,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민선9기 4년간의 일자리 목표, 대책, 여건분석 등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용역 추진

-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 **(사업내용)** 일자리 목표, 대책, 여건분석 등 전문가 컨설팅

○ **(예산내역)** 50,000천원(도비)

- 컨설팅 용역 1식(정부 고용정책방향, 고용 여건분석, 일자리대책 등) : = 50,000천원

□ 분석의견

○ 전북자치도 노동시장 및 일자리 여건

-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일자리 질 저하)** 도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양적 성장을 보였으나, 청년층(15~29세) 인구 유출과 함께 청년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과 일자리의 양적 증가가 주로 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직접 일자리나 고용장려금 중심의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한계**에 직면

※ 자료 : 2025년·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 **(인구 및 산업 구조의 취약성)** 전국 대비 빠른 고령화와 낮은 인구 성장률, 저숙련 종사자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전체 기업의 약 90%가 4인 이하의 영세 업체이며, 특정 업종(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고용이 편중되어 있어 **대외 경제 충격에 취약한 구조**

- **(대기업 및 첨단산업 기반 부족)** 수도권 및 인근 충청권에 비해 대기업과 첨단산업 기반이 부족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이 현저히 부족**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결과**(2023~2025)

- **(고용노동부 평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평가와 우수사업 평가를 매년 진행**하고 있음

- **(전북자치도 수상 실적)** 전북자치도는 **'23년 우수사업**으로 우수상(도농(都農) 상생형 무주군 로컬 JOB센터 운영사업)을 받았으나, **이후 평가결과 수상 실적이 없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우수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부문	구분	2025년		2024년		2023년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가군	나군
공시제	**종합대상** (대통령상)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문별대상 (총리상)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최우수상 (장관상)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상 (장관상)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특별상 (장관상)	-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우수사업	**최우수상** (장관상)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우수상 (장관상)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도농(都農) 상생형 무주군 로컬 JOB센터 운영사업 ※ 자료 : 고용노동부

○ **시기적 적절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 **(법정계획)**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민선 9기 지자체장 출범에 따른 종합계획**임

- 이에 따라 '25년 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는 '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25년 제5차 용역과제 심의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

- **(본예산 편성)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본예산**을 통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용역 기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통상 과업지시서 수립, 입찰 및 계약, 수행에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되고 있음

- **(연내 예산 집행)** 2026 회계연도가 반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에 편성될 경우,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당초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는 **도의 추경 편성 원칙과 배치될 소지**가 있음

○ **유사 용역과의 중복성 및 과업 범위 모호성**

- **(유사 사업)** 전북자치도는 매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26년 컨설팅 예산 : 10,000천원)**하고 있으며, **전북일자리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연구원(JRI) 등을 통해 유사한 고용시장 동향 조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음

- **(전북연구원 수행 검토)** 외부 학술용역(수의/경쟁입찰) 대신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의 기본 과제나 수탁 과제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과업지시서 구체적 내용)** 또한 과업지시서에 **민선 9기 핵심 공약 산업**(예: K-로봇 피지컬AI, 미래 모빌리티 등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미래산업 기조)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 과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6년 제3차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견: 과업지시서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6.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계속)

일자리민생경제과
(예산안 p.258, 사업설명서 p.27)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계	290,374	265,700	24,674
국비	145,162	125,000	20,162
도비	145,212	140,700	4,512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도모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사업내용)** 내실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공공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등, (위생·안전) 위생소독, 전기안전점검
- (맞 춤 형) 업종별 주방용품, 세탁·청소용품, 미용용품 등 지원

○ **(예산내역)** 629,200천원(균특 145,162, 도비 145,212, 시·군비 338,826)

※ 균특 23%, 도비 23%, 시·군비 54%

- 사업규모 : 도내 착한가격업소 572개소
- 증액사유 : 착한가격업소 지정 목표 32개소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

□ 분석의견

○ 사업추진 실적 현황

- **(운영근거)** 착한가격업소란 착한 가격, 청결한 가게운영, 기분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과 **「전북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운영배경)** 착한가격업소 지원제도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23년 최초로 국비 15억원이 지원되면서 크게 확대됨

- 전북자치도는 2016년 9월 「전라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23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해 사업을 확대해 왔음. 단, 2024년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의 신청 미달로 집행률이 낮았음

<전북자치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추이>

(단위 : 천원, %)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안)
합 계		217,853	263,325**	248,981	290,374
	국비	81,090	137,250	124,695	145,162
	도비	136,763*	126,075	124,286	145,212
지정 개소수(개)		311	350	489	(예정)572
집행률(%)		100%	79.9%	92.8%	

*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도비 80,000천원 포함
** 2024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81,600천원 포함
※ 매칭 비율이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에서 2026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변동되었으나 자체예산 투입으로 도비 비중이 증가함

- **2026년 본예산(안)부터 국비 비율이 기존 3%에서 50%**로 높아졌으나, **국비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요구됨

○ **정부 예산 반영 검토**

- **(정부 예산안)** ’26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정부 본예산(안) 5,125백만원에서 220백만원이 삭감되어 4,93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비 매칭 비율 상향) ’26년 국비 매칭 비율은 50%**로 상향되어 전북특별자치도 **사업규모 572개 규모로 예상**하였을 경우 국비는 **572개소×850천원×50%=243,100천원이 편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최근 4개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정부)>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업소 수		1개소 당 지원금액		국비지원율		예산액
2023년 예산	5,895	×	85만원	×	30%	=	1,530
2024년 예산	7,000						1,785
2025년 예산	12,000						3,060
2026년 예산안	12,058				50%		5,125

주) 착한가격업소 대상 물품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 **(취소업소에 대한 파악 필요)** '26년 지정목표는 57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경제상황에 따른 폐업 및 취소업소**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통해 **지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1년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신규지정	취소업소	취소사유			
			휴·폐업	기준미달	자진취소	행정처분 및 기타
서울	725	157	83	27	11	36
부산	173	38	9	9	1	19
대구	170	39	24	8	-	7
인천	191	38	27	4	3	4
광주	141	29	21	-	2	6
대전	137	37	25	4	-	8
울산	125	24	11	7	2	4
세종	11	5	4	1	-	-
경기	916	110	61	24	8	17
강원	137	58	21	18	4	15
충북	178	17	13	4	-	-
충남	171	39	24	7	1	7
전북	**123**	**32**	**16**	**14**	**1**	**1**
전남	157	41	18	19	1	3
경북	137	47	24	10	7	6
경남	367	38	28	4	3	3
제주	244	36	25	5	3	3
합계	**4,103**	**785**	**434**	**165**	**47**	**139**

주) 2024.7월부터 2025.6월까지 통계임
※ 자료: 2026년 예산안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

- **(지원 대상 파악)** 전주시의 경우 **'25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가 58개**였으나, 행안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26년 7월 기준 오히려 업소가 감소**하였음. 이는 새로운 가맹점을 발굴하더라도 경기 불황으로 휴업·폐업에 따른 감소와 점검결과 기준미달인 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시군별 지정내역 및 목표>

구분 (개소)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25.12월 기준	497	58	55	35	32	35	38	27	14	35	26	16	12	54	60
'26.7월 현재*	**522**	**54**	**63**	**35**	**37**	**36**	**37**	**27**	**16**	**36**	**26**	**16**	**18**	**54**	**67**
목표	**540**	**65**	**61**	**40**	**35**	**35**	**46**	**30**	**19**	**39**	**29**	**20**	**15**	**54**	**52**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https://www.goodprice.go.kr/

○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

- **(물가 안정관리 평가)**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25년에는 ▲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로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 **(인센티브 활용계획)** 전북자치도는 **'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1.5억원 인센티브를 확보**하였는바, 이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도단위)>

※ 인센티브 : (가) 3억 (나) 1.5억 (다) 없음

등급	지방정부명
가(1)	**전남**
나(2)	강원, 전북
다(6)	그 외 지방정부

○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실효성 측면 중점 둔 사업 추진 필요**

- **(물가안정 기여 여부)** 본 사업의 목적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이라고 조례상 명시하고 있으나, 국가통계포털 **‘24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숙박 및 음식점업 점포수는 28,000개**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2%정도에 불과한 **540여개 정도의 착한 가격업소 사업으로 인한 물가안정 기여**는 기대하기 어려움

- **(물가안정 성과)** 특히 2023년 지원 이후 전북자치도의 착한가격업소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26.6월 기준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5%*(전년동월대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외연의 확대가 사업 본연의 목적인 물가안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임

 * 한국은행 전북본부, 최근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 2026.06.

- **(향후 개선 방안)** 내실 있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업소가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 경감시켜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초점을 외연 확장**보다는 **서민들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측면**에 맞추어 **낮은 인지도 개선, 이용 활성화, 가격·품질 유지 관리 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7.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추경전성립/신규)

금융사회적경제과
(예산안 p.265, 사업설명서 p.60)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계	1,010,930	-	1,010,930
국비	743,616	-	743,616
도비	267,314	-	267,314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등 노동시장 진입기반 마련과 사회연대경제 분야 관심제고 도모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7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등

○ **(사업내용)** 도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예산내역)** 1,487,232천원(국비 743,616, 도비 267,314, 시군비 476,302)

※ 국비 50%, 도비18%, 시군 32%

- 추경성립전 : 520,531천원(국비)
- 2회 추경 : 966,701천원(국비 223,085, 도비 267,314, 시군비 476,302)

□ 분석의견

○ 사업 현황

- **(정부 예산안)**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정부추경) 추진에 따라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보완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과 지역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195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

- **(지원대상)**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 중 마을기업, 협동조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며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국고보조율 50%)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대상	▫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중 미취업자 2,500명 ※ 단, 지방정부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 적용(신안군 등 19~49세)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내용	▫ 참여자: 인턴 참여수당(인건비) 인당 월 260.8만원(4대보험료 포함) ▫ 참여사업체: 멘토수당 인당 월 35만원, 운영기관 청년1인당 70만원
법적근거	▫ 「청년기본법」제17조, 「지방재정법」제23조제1항
지원기간	▫ 선발일로부터 5개월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국고보조율 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 **유사사업과 검토를 통한 효율성 확보**

- **(기존 사업과 연계)** 기존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청년 대상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경험 지원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사업의 분절적 추진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방식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한 역할 분담과 조정을 선행**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상자 혼란)** 사업 추진 시 중복 수혜 방지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동일 대상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유사 사업의 추진 주체가 다르고 지원 수준이나 기간만 차이가 있다면,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이 제약**되어 **정책 대상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실질적 정책 수요와 조직 지원을 위한 단기 인턴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

- **(사업 내용)** 본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조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참여자의 인건비 소요 전액과 멘토수당 및 운영경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할 계획임

- **(영세성 및 소규모)**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연 매출 5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상용근로자 수 또한 대부분 3인 미만**임
- **(구조적 한계)** 즉 대부분 소규모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세 조직이라는 특성상,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외부에서 투입되는 사업 참여자가 해당 **조직의 운영 역량 강화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인건비 지원 중심)** 따라서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중심의 일방향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 역량 강화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현황('25.9월 기준)>

(단위 : 백만원/명)

연번	시군	기 업 명	업 종	품 목	'23년		'24년		'25.9월		종업원수
					지원액	매출액	지원액	매출액	지원액	매출액	
총계 : 120개소					1,290	27,287	850	28,090	850	15,367	738
소계		전주 : 7개소			120	736	80	545	120	231	33
1	전주	학전(영)	소매	꽃차생강잔액등		22		17		15	0
2	전주	곡천향토체험마을(영)	서비스,농업	청국장		-		-		-	0
3	전주	전주한옥마을(협)	소매	로컬식당	20	228	50	104		60	10
4	전주	아이워크코리아	서비스	교육		3		-		-	0
5	전주	행복나눔보물상자(협)	음식	막걸리술빵	50	89		72	20	65	5
6	전주	유한회사 채움	서비스업	교구생산판매		103	30	83	30	11	16
7	전주	사단법인 꼭두	서비스	관광상품	50	291		269	70	80	2
소계		군산 : 6개소				1,008	20	832	-	253	13
8	군산	알콩달콩(영)	소매	청국장		13		12		-	0
9	군산	대방(영)	소매	두부		448		299		120	4
10	군산	큰골(영)	도소매	우렁이가공		127		141		8	0
11	군산	(사)선유도관광진흥회	소매	지역특산품		383	10	347		85	4
12	군산	펀빌리지(협)	서비스	관광상품		27	10	27		30	1
13	군산	째보선창(협)	식품가공	맥아박		10		6		10	4
소계		익산 : 10개소			90	1,147	119	1,397	55	930	60
14	익산	천년초마을(영)	식품가공	천년초가공식품		63		51		35	2
15	익산	장전서당골(영)	전통식품	들깨가공품		122		166		70	2
16	익산	(농)함해국	기타	구절초가공품		167		153	35	70	1
17	익산	실오라기(협)	기타	손바느질의류잡화		93		49		41	1
18	익산	참살이(협)	기타	카페운영		99	39	87		52	4
19	익산	(협)공감	기타	공예체험	60	58		146		45	1
20	익산	곰개나루(협)	관광체험	시골체험여행		74	50	105		103	10
21	익산	(협)꿈마루	교육,체험	발달장애교육	30	403		618	20	440	22
22	익산	품격도시협동조합	부동산	셰어하우스		30		-		43	0
23	익산	금마서동(협)	제조, 서비스	체험		38	30	22		31	17
소계		정읍 : 17개소			50	7,005	100	7,067	50	5,212	91
24	정읍	원촌마을회(영)	식품	손두부		143		139		20	4
25	정읍	농업회사법인자연가(유)	식품	로컬꾸러미		598	50	646		706	7
26	정읍	내장산솔티(영)	식품	쑥모시		-		3		-	0
27	정읍	민하(영)	식품	곶감		197		141		3	0
28	정읍	농업회사법인콩사랑(유)	식품	콩가공품		4,064		3,901	50	3,300	30

연번	시군	기 업 명	업 종	품 목	'23년		'24년		'25.9월		종업원수
					지원액	매출액	지원액	매출액	지원액	매출액	
29	정읍	새미찬(영)	식품	장류		23		17		16	3
30	정읍	태산풍류공동체(영)	전통,체험	역사체험		-		-		-	0
31	정읍	농업회사법인(유)다모이야기	식품,체험	다도체험		-		-		-	0
32	정읍	씩씩한콩나물(영)	식품	콩나물		26	50	21		45	5
33	정읍	대흥리마을공동체(영)	식품,체험	들기름		50		57		48	2
34	정읍	(유)다정인생활의상	공예품,체험	생활의류		20		15		10	1
35	정읍	해아람(영)	식품	곡물가공		455		745		650	6
36	정읍	(유)디자인칸(청년)	광고,디자인	디자인교육		363		418		102	9
37	정읍	코리아콘텐츠(협)	서비스업	영상, 홍보 등		156		90		45	1
38	정읍	정문희망마을(영)	식품가공	두부,농기계스토랑		879		822		170	12
39	정읍	감성나무 협동조합	공예품, 체험	관광체험	50	31		52		56	1
40	정읍	정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업	체험,시설대관		-		-		41	10
소계		남원 : 10개소			160	874	110	919	90	586	33
41	남원	누운골밀랍(영)	농업	산나물		15		16		-	0
42	남원	달오름마을(영)	제조서비스업	야콘한과		56		30		20	6
43	남원	흥부마을(영)	서비스제조업	들기름		36		20		10	4
44	남원	지리산황치마을(영)	도소매업	절임배추		189	30	169		95	6
45	남원	지리산구절초(영)	서비스 농업	구절초		21		3		-	0
46	남원	곰재웅치마을	제조업	강정 가공품	60	145	20	168	50	125	6
47	남원	슬로빌혼불	도소매업	농산물가공		12		-		6	0
48	남원	(영)동편제마을	도소매업	햄,치즈 가공품		150		129		70	3
49	남원	(영)하주발효마을	제조업	발효빵, 떡	50	87	30	188	20	140	5
50	남원	농업회사법인비즌양조(주)	제조업	전통주	50	163	30	196	20	120	3
소계		김제 : 9개소			120	1,575	20	1,477	50	898	67
51	김제	신털미산(영)	농업	느타리버섯	30	467		311		60	0
52	김제	사랑골(영)	서비스	우유가공		-		-		-	0
53	김제	황토(영)	제조	고구마가공		210		173		130	3
54	김제	궁지호박마을(영)	도소매,서비스	꾸러미,체험		30		54		54	6
55	김제	손누리이야기(협)	도소매,서비스	업사이클링		60		36		32	2
56	김제	수록골(영)	제조업,도소매	무 시래기		-		-		-	0
57	김제	사르밧한과	제조업,도소매	한과, 곡물	30	105		109		32	1
58	김제	김제행동하는청년(협)	서비스업	영상제작 등	30	235		199		60	1
59	김제	지평선농부들(영)	식품가공	생강진액	30	468	20	595	50	530	54
소계		완주 : 13개소			150	5,273	50	5,205	20	3,357	103
60	완주	완주로컬푸드건강한밥상(영)	도소매,제조업	꾸러미		1,203		1,123		570	15
61	완주	원용복마을(영)	소매업	두부		162		186		90	4
62	완주	두억마을(영)	서비스,소매업	느타리버섯		31		29		90	11
63	완주	아름지기목조사업단(영)	제조업,건설업	목조건축		76		-		-	0
64	완주	마더쿠키(영)	제조업	과자		1,027		1,135	20	790	11
65	완주	도계마을(영)	제조업	조롱박,두부		567	20	672		634	14
66	완주	(사)마을통	서비스	마을여행		15		-		-	5
67	완주	비봉우리콩두부(영)	제조업	두부,콩물	100	514		376		182	5
68	완주	부평마을(영)	농업, 도소매	장류		250		277		134	8
69	완주	싱그랭이(영)	제조업,음식업	두부돈가스		328		303		188	3
70	완주	즐거운(영)	농업	콩나물		545	30	497		342	11
71	완주	오성(영)	농업	농기계스토랑체험		196		197		-	11
72	완주	농부사랑(영)	제조	두부	50	359		410		337	5
소계		진안 : 5개소				141		156	-	100	18
73	진안	㈜공정여행풍덩	서비스,도소매	농촌관광		-		8		-	0
74	진안	줌(협)	서비스	효소차		13		10		8	0
75	진안	원연장마을(영)	서비스음식	농가식당		128		138		-	2
76	진안	농업회사법인 (유)도슬담다	음식점업	도시락케이터링						35	7

연번	시군	기 업 명	업 종	품 목	'23년		'24년		'25.9월		종업원수
					지원액	매출액	지원액	매출액	지원액	매출액	
77	진안	고원의숲생태교육협동조합	서비스업	산림체험교육						57	9
소계		무주 : 7개소			50	346		291	-	177	23
78	무주	호롱불마을(영)	서비스, 소매	곶감		30		25		19	0
79	무주	하늘땅마을(영)	도소매서비스	쌀과자		-		-		-	0
80	무주	말글낙화놀이(영)	농업, 서비스	낙화놀이		177		137		83	21
81	무주	치목삼베마을(영)	제조업, 음식	명품수의		35		14		-	0
82	무주	내창잿들마을(영)	농업	장류,한지		-		-		-	0
83	무주	진원반디길마을(영)	제조, 서비스	농촌체험		73		88		57	1
84	무주	농업회사법인(주)장안뜰	제조	절임배추,반찬	50	31		27		18	1
소계		장수 : 7개소			20	3,737	107	5,332	115	559	17
85	장수	신농(영)	도소매	사과즙		3,278	20	4,753	70	250	3
86	장수	새보름(영)	도소매	잡곡가공		153	22	231		104	4
87	장수	하늘곳간농장(영)	도소매	산야초		106		106	45	60	1
88	장수	번암느티나무(협)	서비스,음식	음료,제과		86	30	90		77	3
89	장수	백운(영)	부각가공	부각		3		-		-	0
90	장수	성암산야초(영)	산나물제조가공	장아찌	20	80	35	111		40	6
91	장수	매산청풍	도소매	산나물가공		31		41		28	0
소계		임실 : 9개소			270	1,558	50	1,767	85	1,588	75
92	임실	학정마을(영)	숙박,제조	엿		78		57		49	6
93	임실	선거웰빙푸드(영)	도소매,제조	잡곡가공		23		20		60	3
94	임실	오지(영)	제조업	한과, 조청		-		-		25	5
95	임실	샘고을(영)	제조	산양유가공	30	221	20	210		135	5
96	임실	당당슬로마을(영)	제조	전두부	45	136		132		80	2
97	임실	㈜섬진강다슬기마을	도소매,제조	다슬기	100	879		945	20	500	27
98	임실	임실레드팜(영)	도소매,제조	토마토가공	45	60		103	20	30	6
99	임실	해피팜스(영)	제조	죽순	50	161	30	300	45	195	5
100	임실	임실삼삼오오청춘햇살협동조합	음식점업	카페 베이커리	-	-	-	-	-	514	16
소계		순창 : 7개소			70	888	94	527	70	439	114
101	순창	(영)가향식품	제조	엿,조청	50	463		173		150	3
102	순창	하마마을(영)	제조	모싯잎한과	20	89	50	148	70	80	10
103	순창	동고마을(영)	도소매	시래기		-		-		-	0
104	순창	순창쌀엿(영)	도소매,제조	쌀엿		29		19		5	4
105	순창	쌍치블루베리(영)	농업,도소매	블루베리		40		29		14	93
106	순창	화암리(영)	농업	오색미		-		-		-	0
107	순창	모두의숲흙건축연구소살림㈜	기타	체험		267	44	158		190	4
소계		고창 : 10개소			170	1,809	50	1,726	45	627	77
108	고창	국화마을(영)	제조	청국장		-		-		-	0
109	고창	고창이엠푸드(영)	도소매,제조	새싹땅콩	45	1,049		958		85	44
110	고창	왕버들나무숲하얀민들레(영)	농업	민들레즙		-		-		-	0
111	고창	운곡습지(영)	서비스	힐링여행		-		-		-	0
112	고창	고창백련(영)	도소매	연잎차	20	68		86		169	13
113	고창	화산(영)	농업제조서비스	청보리떡		74		78	45	43	2
114	고창	(영)토굴발효	제조	발효식초, 장류	55	240	20	242		190	7
115	고창	호암마을명상스테이	서비스	체험		21		-		14	3
116	고창	에코25시(영)	식품제조	식용곤충		62		99		21	3
117	고창	사회적협동조합다같이	제조	반찬	50	295	30	263		105	5
소계		부안 : 3개소			20	1,190	50	849	150	410	14
118	부안	백련농장(영)	도매,소매	연잎장류		498		226	50	150	10
119	부안	지산지공(영)	도매,소매	절임배추	20	502	50	623	100	260	3
120	부안	돌개(영)	서비스	야생화 체험 등		190		-		-	1

※ 자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검토**

- **(사업 설계 필요)** 단순한 단기 노동력 제공을 넘어 **청년에게 경력 개발과 사회적 가치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청년 유입 요인 필요)** 대상 사업체의 특성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경험사업의 조건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입장에서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경력 연계 가능성 및 직무 매력도를 차별화**하여 **사업 수행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단기 단순 노무위주)** 또한 대상사업체 유형 중 비중이 높은 소**규모 마을카페 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존 임시직을 정부 지원인력으로 대체할 유인이 높고**, 인적 구조 특성상 **직무 교육보다는 단기 단순 노무 위주 인력 운용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5.9월 기준)>

(단위 : 개사)

합계	식품	관광	문화예술	복지·교육	공예	기타*
120	78	17	4	5	3	13
100%	65%	14%	3%	4%	3%	11%

* 기타 : 디자인, 영상제작, 문화기획, 천연염색 등
※ 자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경제산업건설위원회)

8. 가정형 태양광 지원사업(신규)

청정에너지수소과
(예산안 p.275, 사업설명서 p.42)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계	1,342,200	-	1,342,200
국비	1,220,000	-	1,220,000
도비	122,000	-	122,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동전쟁 장기화와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및 민생 부담 완화 대응

-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27조

○ **(사업내용)**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지원

○ **(예산내역)** 3,050,000천원(국비1,220,000, 도비122,000, 시·군비1,098,000, 기타610,000)

※ 국비 40%, 도비 4%, 시군비 36%, 기타 20%

- 사업규모 : 도내 공동주택 3,050세대

□ 분석의견

○ **도비 재원 비율에 대한 검토**

- 본 사업의 총사업비 3,050,000천원 중 재원별 분담 비율은 **국비 40%**(1,220,000천원), **도비 4%**(122,000천원), **시군비 36%**(1,098,000천원), **기타(자부담) 20%**(610,000천원)로 구성되어 있음

- 자부담 비용을 제외할 경우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예산에 신설된 사업으로 총사업비에서 **40% 이내 국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기준 >

ㅇ **(지원용량/설치단가)** 가구당 500W 이내 / 약 100만원(500W 기준)
ㅇ **(보조금액)** 1W당 600원(서울) 또는 800원(서울 외) 정액 지원
ㅇ **(보조비율)** 총사업비에서 40% 이내 국비 지원
ㅇ **(지자체별 지원 예산)** 광역지자체별 아파트 가구 수를 고려하여 국비 배분

*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공고

<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기준 >

연번	지자체	아파트 가구수	비율	국비 지원예산(억원)	지방비 필요예산(억원)
1	서울	1,738,353	14.3%	75	125
2	부산	820,953	6.7%	23.5	23.5
3	대구	656,819	5.4%	18.8	18.8
4	인천	755,728	6.2%	21.7	21.7
5	광주	448,187	3.7%	12.9	12.9
6	대전	384,222	3.2%	11	11
7	울산	266,830	2.2%	7.7	7.7
8	세종	136,585	1.1%	4	4
9	경기	3,522,544	28.9%	101	101
10	강원	363,513	3.0%	10.4	10.4
11	충북	407,448	3.3%	11.7	11.7
12	충남	546,466	4.5%	15.7	15.7
13	**전북**	**423,849**	**3.5%**	**12.2**	**12.2**
14	전남	381,436	3.1%	10.9	10.9
15	경북	520,694	4.3%	14.9	14.9
16	경남	768,682	6.3%	22	22
17	제주	55,037	0.5%	1.6	1.6
합계		12,197,346	100.0%	375	425

- 전북자치도 추경 예산(안)에서 총사업비 중 **도비 비율은 4%**이며, 세대당 설치단가는 500W 기준 100만원으로 도민들은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 돈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세대당 고작 4만 원을 얹어주는 것은 생색내기로 보일 수 있음

- 도비 지원의 체감도가 극도로 낮아 실제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물리적 집행 가능성 검토(시간 대비 과도한 목표 물량)**

- **(사업기간)** 사업 기간은 **2026. 7. ~ 2026. 12.(6개월)**이며, 목표 보급 **물량은 3,050세대**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 통과 후 14개 시군 추경안 통과 ⇒ 14개 시군에 예산 배정 ⇒ 시군별 사업 공고 ⇒ 개별 세대 신청 접수 ⇒ 적격 심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 동의 획득 및 현장 실사 ⇒ 시공 및 준공 검사의 단계를 거쳐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고문(7.13.)에서는 가정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승인(협약)을 통해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음

참여업체 선정 **(~7.10.)**	⇒	**사업공고** **(7.13.)**	⇒	**사업계획서 제출** **(~10.2.)**	⇒
센터*		기후부		지자체 → 센터*	
사업승인 및 국비 확정·교부 **(10월 중)**	⇒	**지자체별 사업 추진 및 설치확인** **(10월~12월)**	⇒	**사업 추진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7.2월)**	
센터* → 지자체		센터* ⇆ 지자체		센터* ⇆ 지자체	

* 센터 : 한국에너지공단 內 신·재생에너지센터

- **(집행가능성 검토)** 사업기간 6개월 중 사전절차 3~4개월을 제외하면 전북자치도에서 **매달 평균 1,020세대 이상, 매일 약 33세대**씩 아파트 베란다에 동절기에 **기기를 밀어내듯이 설치**해야만 **연내 집행이 가능**함

○ **저조한 발전 효율과 실효성 검토**

- **(체감 효과 미비)** 베란다형 소형 태양광(통상 500W급 미니 발전기)은 **기상조건, 아파트 층수, 베란다의 방향(남향 여부), 주변 건물에 의한 일조량 간섭에 극도로 취약**함

- 집행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 및 민생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도민이 체감하는 **월 전기요금 절감액**은 **수천 원 수준**에 불과하여, 거액의 혈세(총사업비 30억 5천만 원)를 투입하는 대비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설치 이후 사후관리 및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방치 및 안전 위험)** 과거 타 지자체 사례나 기 사업을 수행한 전북자치도의 경우 미니 태양광 설치 이후 **보증기간이 지나면 인버터 고장** 등으로 **기기를 방치하거나 철거하는 가구가 속출**했음

- 또한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공동주택 고층 베란다에 거치된 태양광 패널이 추락할 경우 **인명 사고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이나 사후관리 예산 및 대책은 사업 계획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사후관리 및 보증기간 종료 후 문제)** 소형 태양광 보급 사업의 특성상 설치 업체가 도중에 폐업하거나 보증기간(3년)이 지나면 고장(특히 인버터 결함)이 나도 적절한 수리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체 에너지 자립으로 전환 검토)** 개별 가구의 거치식 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동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동체형 태양광 발전설비' 및 셰어링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신규)

청정에너지수소과

(예산안 p.275, 사업설명서 p.43)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2025년 대비 증감(A-B)
도비	150,000	-	150,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전력계통 현황분석 및 이에 기반한 대응방안 마련

- 추진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조 및 전기사업법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5조

○ **(사업내용)** 도내 전력계통 현황 분석을 통한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방안 도출 및 정부(한전 등)와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등

○ **(예산내역)** 150,000천원(도비)

- 편성사유 : 도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하나,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른 전력계통 수용 한계로 접속 지연 및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어 정량적 계통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 사업기간 : '26. 8. ~ '27. 12. ※ 용역기간 10개월(계약 및 정산, 보완 등 기간 고려)

□ 분석의견

○ 정책의 필요성

- **(연구용역의 목적)** 2050 탄소중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30GW 보급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력계통의 수용성과 안정성을 분석**하고, 계통 해석에 기반한 **최적 연계전략과 마이크로그리드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 현재 도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증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고유 특성인 변동성(간헐성) 문제가 **전력계통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전력 공급이 과잉될 때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Curtailment)**'와 신규 발전소의 '**계통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첨단 재생에너지 및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정량적 계통 분석의 데이터 확보는 정책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유효하다고 사료**되나,

- 재생에너지 계통 해석에 기반한 최적 연계전략과 본 용역과제의 목적인 **마이크로그리드 도입방안**은 **ESS 구축을 통한 사업진행이 선행**되어야 하나,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563MW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에 전남, 제주가 선정되었음

< '25년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 결과 >

지역		변전소	낙찰 물량(MW)	공고 물량(MW)
육지	전남	고흥	96	500* * 공고물량의 105%까지 조정 가능
		황금	96	
		안좌	96	
		영광	80	
		무안햇빛	80	
		진도	48	
		읍동	27	
	소계		523	
제주		표선	40	40
합계			563	540

○ 추경편성 사유에 대한 검토

- **(추경 요건)** 본 사업이 과연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긴급하게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추경 요건(지방재정법 제45조)'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함

- **(편성 사유)** 집행부는 편성 사유로 "도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하나 수용 한계로 접속 지연 및 출력제어가 발생하여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구조적 문제)** 하지만 **도내 출력제어 현상과 한전 전력계통의 병목 현상**은 2026년에 갑자기 터진 돌발 재난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전북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메가 프로젝트)**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 프로젝트**에서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전북이 배제**된 것은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사업기간에 대한 검토**

- **(사업기간)** 사업설명서에 따른 사업기간은 **'26. 8. ~ '27. 12.**로 기재하고 있으며, 계약 및 정산, 보완 등 기간 고려하여 **용역기간**은 **10개월**로 예정하고 있음

- **(연구용역의 이월사업 증가)** '25년 회계연도 기준 연구용역비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개로 파악되고 있어, **관행적으로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 **(회계연도 독립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 승인 검토**

- **(사전절차)** 2026년 6월에 학술용역 심사를 통과하여 절차를 마쳤으나, 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2026년 11월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중장기 재정 예측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예산은 이 계획의 틀 안에서 요구**되어야 함

- 예산은 **2026년 추경에서 확정**해 달라고 하면서, 3달 뒤인 **11월에 재정계획에 사후 반영**하겠다는 것은 법이 정한 **재정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예산 통과 후 계획을 짜맞추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하자임

10.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신규)

수산정책과
(예산안 p.322, 사업설명서 p.54)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 예산액(B)	비교 증감(A-B)
도비	245,655	-	245,655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일부 지원을 통한 어가 경영안정 도모

- 추진근거 : 수산업법 제93조

○ **(사업내용)** 어업용 면세유(휘발유, 중유) 인상분 일부(33.8%) 지원

○ **(예산내역)** 818,850천원(도비 245,655, 시·군비 573,195) ※ 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규모 : 7,195천리터(휘발유 6,061, 중유 1,134) * 경유는 인상분 일부(33.8%) 정부 지원

□ 분석의견

○ 사업추진 현황 검토

- 어업용 면세유 경영안정 지원(도비 245,655천원, 시군비 573,195천원)

(단위 : 천ℓ, 천원)

구분	단가 상승분 ('26.3 → 4월)		지원액 (33.8%)		사용량 ('25.4~9월)		지원액 (도비 30%, 시군비 70%)
계		×		×	7,195	=	**818,850**
휘발유	307.1원		103.8원		6,061		**629,132**
중 유	495원		167.3원		1,134		**189,718**

* 지원기간 : '26. 4. ~ 9월 사용분(6개월분)

** 경유는 정부지원에 따라 제외, 지원비율은 정부지원과 동일(33.8%)

- 배정안(전주·정읍·남원·장수·순창 제외*) * 경유 사용 및 면세유 사용실적 없음

(단위 : 천원, ℓ)

시군명	사업량(ℓ)	재원		
		합계	도비(30%)	시군비(70%)
합계	**7,195,000**	**818,850**	**245,655**	**573,195**
군산	2,865,000	297,387	89,216	208,171
익산	169,400	27,617	8,285	19,332
김제	46,290	6,456	1,937	4,519
완주	2,000	208	62	146
진안	26,780	2,780	834	1,946
무주	4,960	515	155	360
임실	6,450	669	201	468
고창	1,177,290	179,479	53,844	125,635
부안	2,896,830	303,739	91,122	212,617

○ 추경 편성의 타당성 및 시급성 검토

- **(예측 불가능성)** 중동 정세 악화(미-이란 전쟁)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임
- **(시급성)** 2026년 3월 대비 4월(1일~9일) 전북자치도 면세유(휘발유 기준) 가격이 **리터당 884.7원에서 1,405.6원으로 약 59% 폭등**함에 따라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즉각적인 비용 지원이 시급함

< 추경안 편성 일반요건 >

요건	추경안 편성 일반요건 내용
목적 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것
예측 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

○ 예산 산출 근거의 합리성

- **(전북자치도 유가 변동성 대비)** 휘발유 지원 단가 103.8원은 2026년 3월 최근 **전북자치도 평균가격 대비 향후 20% 상승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임

<전북자치도 면세유 가격동향>

(단위:원/L)

구 분	'26.3(A)	4.1 ~ 9	4.10 ~ 6.26	6.27 ~ 7.24(B)	증가액(증가율)(B-A)
휘발유	835.9	1,223	1,103	1,091(△12)	255.1(30.5%)
경 유	884.7	1,405.6	1,405.6	1,249.6(△156)	364.9(41.2%)
중 유	847	1,342	1,342	1,226(△116)	379(44.7%)

※ 자료 : 새만금해양수산국 제공

○ 에너지 지원 정책의 균형성 제고

- **(정책 보완)** 중앙정부의 지원이 경유에 집중된 것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가 휘발유/중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영부담 완화 기대)** 수산경제연구원의 『2025년 어업경영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류비가 출어비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산시 및 부안군 등 도내 9개 시군 **어업인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책지원의 한계 및 개선방향

- '25년 본예산에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지원 사업으로 1,168,823천원(도비30%, 시군비 70%)을 편성하였으나, **'26년 도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었음

- 유가 상승기에 비용을 사후 보전하는 **'임시방편적 정액 지원'** 구조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친환경·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치 지원**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예산의 중장기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4 문화안전소방위원회

1. 예산총괄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054,436,980천원으로 기정액 1,006,139,452천원보다 33,868,034천원(3.37%) 증가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천원, %)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054,436,980**	**1,006,139,452**	**33,868,034**	**3.37**
도 민 안 전 실	**184,100,371**	**165,784,721**	**18,315,650**	**11.05**
안 전 정 책 과	3,145,929	2,963,529	182,400	6.15
사 회 재 난 과	1,572,921	1,572,921	-	0.00
자 연 재 난 과	179,137,622	243,899	18,133,250	11.26
특별사법경찰관	243,899	243,899	-	0.00
문화체육관광국	**432,602,801**	**408,834,819**	**23,767,982**	**5.81**
문 화 산 업 과	152,363,310	140,299,038	12,064,272	8.60
관 광 산 업 과	66,584,932	62,441,932	4,143,000	6.63
체 육 정 책 과	99,107,321	97,855,560	1,251,761	1.28
유 산 관 리 과	95,725,913	89,416,964	6,308,949	7.06
도 립 국 악 원	13,960,930	13,960,930	-	-
도 립 미 술 관	4,860,395	4,860,395	-	-
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	**4,223,043**	**6,933,043**	**△2,710,000**	**△39.09**
유 치 총 괄 과	2,785,288	5,495,288	**△2,710,000**	**△49.31**
국 제 과	1,254,791	1,254,791	-	-
평 가 대 응 과	182,964	182,964	-	-
소 방 본 부	**433,510,765**	**424,586,869**	**8,923,896**	**2.10**
소 방 행 정 과	433,510,765	424,586,869	8,923,896	2.10

2. 주요사업 검토내용 (요약)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주요 분석내용
	2026년 제2회 추경 요구액(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설명서 p.29)	187,403,000	186,403,000	1,000,000	•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진한 사업 속도 개선 •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우선순위 조정 및 조속한 착공 촉구
②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사업설명서 p.34)	17,805,000	3,000,000	14,805,000	• 법정 의무 적립액 준수 및 대규모 재난 대비를 위한 필수 예산 확보 .• 재난 발생 시 적기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효율적 운용
③ 전북시청자미디어 센터 건립 (사업설명서 p.54)	6,000,000	5,000,000	1,000,000	• 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등 차질 없는 일정 소화로 건립 지연 리스크 사전 차단 요망
④ 전북특별자치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설명서 p.59)	12,000,000	5,000,000	7,000,000	• 건축 공사 속도에 발맞춰, 도내 작은도서관 통합 시스템 구축 •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전문 운영 인력(사서 등) 조기 확보 로드맵 점검 요망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주요 분석내용
	2026년 제2회 추경 요구액(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A-B)	
⑤ 제5회 전주 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 지원 (사업설명서 p.64)	50,000	-	50,000	• 지역 축제의 철저한 사후평가 및 예산 연계 (행감 지적사항에 따른 검토) • 소리문화의전당 안전 문제 고려 및 과도한 행사성 비용 축소 요구
⑥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사업설명서 p.17)	1,630,000	4,000,000	△2,370,000	• IOC 집중 대화 진입 불투명 등 절차적 불확실성 잔존 • 국가 승인 획득 및 지방비 40% 분담에 대한 명확한 재원 조달 시나리오 확보

3.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속)

(자연재난과 예산안 p.150, 사업설명서 p.29)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예산(B)	비교 증감(A-B)
총 계	187,403,000	186,403,000	1,000,000
국비(균특)	93,701,500	93,201,500	500,000
도비	80,600	37,280,600	△37,200,000
지방채	37,400,000	-	37,400,000
시·군비	56,220,900	55,920,900	300,000

※ 지방채 발행을 통해 도비 부담을 대체하고 사업비를 확보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침수·붕괴·고립·위험 지역 등에 대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비 해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내용)**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설치 및 교량 재가설 등
- 시행주체 : 14개 시 · 군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 **(증액사유)** 신규사업 확정내시 추가반영(61개 → 62개, 김제오정지구)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5543(2025.12.19.)호]

○ **(사업내용)** 하천 및 하수도 정비, 펌프장 설치 및 교량 재가설 등
- 시행주체 : 14개 시 · 군
- 추진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 **(예산내역)**
- 총 사업비: 187,403,000천원
- 기투자액(전년도까지): 1,311,542,000천원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 **(주요 변동 사유)**

- 총 예산 증가 : 전년 대비 1,000,000천원 증액
- 재원 구조 조정 : 도비 분담금 조정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국·도·시군비 추가 확보를 통해 최종 사업비 편성 완료

□ **분석의견**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예측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재 인프라의 적기 구축은 필수적이나, 잦은 예산 이월과 실착공 지연, 그리고 도비 부담분의 지방채(빚) 전가 문제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실효성을 동시에 저해하고 있음. 이에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현장 지원 및 엄격한 예산 통제 체계 구축이 시급함**

○ **사업 개요 및 예산 편성 현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습 침수, 붕괴, 고립 등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방재 인프라 구축 사업임
-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14개 시·군, 총 61개 지구(신규 11, 계속 48, 마무리 2)를 대상으로 총 1,304억여 원(균특 932억 원, 도비 372억 원)이 편성됨 (총사업비 기준 균특 50%, 도비 20%, 시군비 30% 매칭)

○ **현황 및 문제점**

- **(도비 부담의 지방채(빚) 전가 문제)** 도의 세수 부족 등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 부담분(매칭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대체하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고육지책이나, 결국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겨 도의 재정 건전성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임

- **(사업 장기화 및 집행 지연)** 관리 대상 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상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사전 행정절차와 기초지자체의 매칭 예산(시·군비 30%) 확보 지연으로 수년째 설계 단계에 머무르거나 실착공이 지연되는 현장이 다수 존재함

○ **심층 분석의견 (재정 및 정책적 한계)**

- **(재정 운용의 이중고 발생)** 지방채라는 '빚'을 내어 예산을 편성·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이 금고에 묶이게 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도민 안전 공백은 물론 불필요한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심각한 재정 비효율을 초래함

- **(집행 속도의 KPI화)** 극한 기후 속에서 방재 시설의 적기 완공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예산의 단순 '확보' 단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집행 속도' 자체를 재난 예방 부서의 최우선 핵심 성과 지표(KPI)로 삼아야 함

○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

- **(지방채 발행 사업의 특별 관리)** 빚을 내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와 시·군비 확보가 완료되어 '즉시 착공'이 가능한 지구에만 제한적으로 예산을 교부하는 등 엄격한 자금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함

-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사업 부진 지구에 대해서는 단순 공정률 점검에서 벗어나, 보상 지연 등 현장 민원과 행정 절차 지연 사유를 직접 컨설팅하고 해결하는 '실행 지원단' 형태의 적극적인 도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

- **(강력한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 도입)**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매칭 예산 확보가 지속해서 지연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예산 감액 및 회수)를 엄격히 적용하고, 공정률이 우수한 시·군에는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 통제 지렛대를 도입하여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야 함

참고 **'2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

□ 14개 시·군 / 42개 지구(신규 7, 계속 34, 마무리 1)

- **98,477백만원 (균특 49,239, 도비 19,696, 시군비 29,543)**

* 신규 9,700, 계속 84,564, 마무리 4,213

(단위:백만원)

시·군	지구명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5년까지	'26년 사업비				잔여사업비	비고
						계	균특(50%)	도비(20%)	시군비(30%)		
소계	**14개시군 42개지구**	**신규7, 계속 34, 마무리 1**		**1,141,074**	**158,048**	**98,477**	**49,239**	**19,696**	**29,543**	**884,549**	
전주시	4			143,980	23,122	10,680	5,340	2,136	3,204	110,178	
	월평	계속	'21~'28	46,140	13,376	7,080	3,540	1,416	2,124	25,684	
	미산	계속	'23~'28	36,000	3,728	-	-	-	-	32,272	
	객사천	계속	'23~'27	36,840	3,168	3,000	1,500	600	900	30,672	
	공덕	계속	'23~'28	25,000	2,850	600	300	120	180	21,550	
군산시	2			79,034	2,000	2,500	1,250	500	750	74,534	
	경포천	계속	'25~'29	45,940	2,000	1,000	500	200	300	42,940	
	개야도	신규	'26~'31	33,094	-	1,500	750	300	450	31,594	
익산시	5			163,858	13,092	15,976	7,988	3,195	4,793	134,790	
	여산	계속	'21~'27	27,152	7,700	9,976	4,988	1,995	2,993	9,476	
	연화천	계속	'24~'27	19,826	2,392	1,000	500	200	300	16,434	
	대조천	계속	'25~'29	53,500	2,600	1,600	800	320	480	49,300	
	목천소	계속	'25~'29	8,380	400	1,000	500	200	300	6,980	
	연동	신규	'26~'31	55,000	-	2,400	1,200	480	720	52,600	
정읍시	3			52,767	11,366	10,500	5,250	2,100	3,150	30,901	
	동곡1	계속	'22~'27	14,858	7,698	6,000	3,000	1,200	1,800	1,160	
	금붕1	계속	'23~'27	9,957	2,468	4,000	2,000	800	1,200	3,489	
	내칠	계속	'25~'28	27,952	1,200	500	250	100	150	26,252	
남원시	3			66,184	4,862	5,400	2,700	1,080	1,620	55,922	
	주촌	계속	'23~'28	39,600	3,262	4,000	2,000	800	1,200	32,338	
	노암4통	계속	'24~'28	15,036	1,600	400	200	80	120	13,036	
	생암	신규	'26~'31	11,548	-	1,000	500	200	300	10,548	
김제시	4			148,946	10,692	2,700	1,350	540	810	135,554	
	춘화	계속	'23~'27	49,720	7,092	900	450	180	270	41,728	
	봉서	계속	'24~'27	38,000	3,000	400	200	80	120	34,600	
	당월2	계속	'25~'28	12,000	600	400	200	80	120	11,000	

시·군	지구명	구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5년까지	'26년 사업비				잔여사업비	비고
						계	균특(50%)	도비(20%)	시군비(30%)		
	오정	신규	'26~'29	49,226	-	1,000	500	200	300	48,226	국회단계 추가
완주군	3			63,146	11,558	10,140	5,070	2,028	3,042	41,448	
	고천	계속	'23~'28	14,000	6,320	3,840	1,920	768	1,152	3,840	
	구만	계속	'23~'27	19,946	5,238	5,000	2,500	1,000	1,500	9,708	
	운산2	신규	'26~'31	29,200	-	1,300	650	260	390	27,900	
진안군	2			22,828	4,936	6,400	3,200	1,280	1,920	11,492	
	양화	계속	'23~'27	9,162	3,252	3,000	1,500	600	900	2,910	
	갈거	계속	'24~'28	13,666	1,684	3,400	1,700	680	1,020	8,582	
무주군	2			52,796	9,636	6,600	3,300	1,320	1,980	36,560	
	삼유	계속	'23~'27	21,776	7,348	6,000	3,000	1,200	1,800	8,428	
	마산	계속	'23~'28	31,020	2,288	600	300	120	180	28,132	
장수군	2			32,500	3,600	700	350	140	210	28,200	
	유천1	계속	'24~'29	28,000	3,400	500	250	100	150	24,100	
	죽산	계속	'25~'28	4,500	200	200	100	40	60	4,100	
임실군	2			44,954	2,900	1,700	850	340	510	40,354	
	관촌	계속	'24~'28	37,166	2,900	700	350	140	210	33,566	
	수천	신규	'26~'31	7,788	-	1,000	500	200	300	6,788	
순창군	5			129,900	19,018	10,600	5,300	2,120	3,180	100,282	
	쌍치	계속	'21~'27	31,500	7,730	6,000	3,000	1,200	1,800	17,770	
	양지	계속	'23~'27	20,190	3,992	1,000	500	200	300	15,198	
	석산	계속	'23~'27	33,368	4,696	1,200	600	240	360	27,472	
	오교	계속	'24~'27	24,842	1,600	1,200	600	240	360	22,042	
	평남	계속	'25~'28	20,000	1,000	1,200	600	240	360	17,800	
고창군	4			100,225	38,866	13,181	6,591	2,637	3,954	48,178	
	고창	계속	'20~'27	23,600	15,532	6,068	3,034	1,214	1,820	2,000	
	평지	마무리	'20~'26	25,647	21,434	4,213	2,107	843	1,264	-	
	대산회룡	계속	'24~'28	18,000	1,900	1,400	700	280	420	14,700	
	대동	신규	'26~'31	32,978	-	1,500	750	300	450	31,478	
부안군	1			39,956	2,400	1,400	700	280	420	36,156	
	격포	계속	'24~'28	39,956	2,400	1,400	700	280	420	36,156	

※ 김제 오정지구 : 국회예산 단계 추가 신규 선정으로 '26. 2회 추경 편성 예정(10억원)

※ 자연재난과 하반기 업무보고 참고자료

4.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계속)

(자연재난과 예산서 p.152, 사업설명서 p.34)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예산(B)	비교 증감(A-B)
총 계	17,805,000	3,000,000	14,805,000
도비	5,000	3,000,000	△2,995,000
지방채	17,800,000	-	17,800,000

※ 재원 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비 확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난 사전 예방, 피해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추진 등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확보

○ **(사업내용)**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적립

- 증액사유 : 법정적립금 17,805백만원 중 미반영액분 14,805백만원 반영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정적립액)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적립

○ **(변동사유)**

- 사업비 증액 : 총 사업비 14,805,000천원 증액 편성
- 재원 구조 개편 : 사업 재원 확보 방식을 도비 부담 위주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도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신규 지방채를 반영함

□ 분석의견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지출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최후의 안전망임. 그러나 본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과소 편성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필수 재원 보호 조치'가 절실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 사업 개요 및 예산 편성 현황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응급 복구 등 재난 관련 비용 충당을 위한 법정 의무 기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최저적립액으로 확보해야 함

- 2026년 본예산 요구액은 법적 최저적립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미편성 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체계 평가 감점 및 특별재난지역 지원 시 불이익을 받게 됨

○ 현황 및 문제점

- **(본예산 과소 편성 관행)** 전국적으로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재정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려 기금을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지속됨

-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소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관행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회계연도 법정 의무 지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행안부 훈령(제8조 3항) 위반 소지가 있음

- **(응급복구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 최저적립액의 21%는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에 사용되어야 하나, 본예산 편성액이 낮을 경우 적기에 필요한 재난 대응이 어려워지는 연쇄적 문제 상황에 놓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심층 분석의견(재정 및 정책적 한계)

- **(재정적 측면)** 지방채 발행이 잇따르는 도의 재정 상황 속에서 기금 전출금은 우선 계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출금 확보를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상실할 위험이 큼

- **(정책적 측면)** 기금의 용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무 적립 비율을 맞추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에 기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바,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함

○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1)]**

- **(법정 필수 경비 우선 편성 의무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예산 편성 시 1순위로 배정하고 본예산 미편성 시 향후 예산 심사에서 불이익을 명문화하는 내부 규정 강화

- **(적립 기준의 합리적 정비)** 현재 보통세 1/100로 고정된 적립 기준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큼. 충분한 기금이 적립된 경우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재해구호기금 사례 준용)을 정부에 지속 건의해야 함

- **(기금 운용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단순 복구비 위주의 집행에서 벗어나, 상습 재난 발생 지구에 대한 예방적 투자를 확대하고 기금 집행 내역을 의회에 상세 보고하여 기금이 재난 예방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엄격히 통제할 것을 주문함

1) 나라살림연구소. 2026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현황조사.-26.5.27.

5.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문화산업과 예산안 p.162, 사업설명서 p.54)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예산(B)	비교 증감(A-B)
총 계	6,000,000	5,000,000	1,000,000
도비	3,800,000	3,800,000	-
지방채	2,200,000	1,200,000	1,000,000

※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원활한 재원 투입을 당해 연도 예산 1,000백만원 증액

○ 변동사유

- 사업비 증액 사업 추진 가속화 및 원활한 재원 투입을 위해 당해 연도 예산 1,000백만원 증액

- 재원 확보 부족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사업 적기 추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민의 미디어 교육·체험 등을 통한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 **(사업내용)** 미디어체험관, 방송제작실 등 콘텐츠 관련 미디어센터 신축 등

- 시행주체 : 직접수행

- 추진근거 :「방송법」 제92조의2

○ **(예산내역)**

- 총 사업비 : 29,500백만원 *국비 5,000/특교세 2,500/도비 19,800/지방채2,200

- 기투자액(전년도까지 : 10,500백만원

□ 분석의견

◎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임.
그러나 지방채 발행을 감수하며 추진하는 대규모 시설 건립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이후의 운영 조직 체계, 자생적 수익 모델, 그리고 도내 14개 시·군과의 상생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부문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전북 미디어 산업의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철저한 운영 마스터플랜 설계가 요구됨

○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도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미디어 교육 및 제작 지원을 위한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 총사업비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026년 기준 공사비와 설계비 등이 투입되고 있으며 일부 예산은 지방채를 통해 조달하여 건립을 추진 중임
- 건립이 완료되면 도민들은 방송 제작 체험, 영상 편집 교육,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될 예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매몰)** 현재 사업의 무게중심은 건물의 준공과 시설 구축에 집중되어 있음. 과거 전국 곳곳에 건립된 공공 미디어센터들이 준공 후 운영비 부족과 프로그램 콘텐츠 노후화로 인해 '유령 시설'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음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부담)** 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립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은 건립 이후 운영비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준공 후 운영비에 부채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예고됨

- **(운영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미디어 환경은 초단위로 변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하고 제작 지원할 전문 인력 확보 계획은 매우 추상적임.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미디어센터 운영의 성패는 장비가 아닌 사람과 콘텐츠의 질에 달려 있음

- **(전주 편중 및 지역 간 연계 부재)** 전주 지역에 센터가 건립됨으로써 도내 시·군 지역과의 미디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도내 전체를 아우르는 연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면 전주 시민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큼

○ **심층 분석의견(재정 및 정책적 한계)**

-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여)** 미디어센터는 수익형 모델이 나오기 힘든 구조임. 공익성을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익 사업(시설 대관, 외부 교육 수탁 등)을 설계 단계부터 확립하지 않으면 건립 후 매년 막대한 도비가 운영비로 쏟아져 들어가는 재정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큼

- **(정책적 시사점)** 최근 미디어 관련 전문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공 미디어 시설들이 지역 주민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는 '거점형 센터'가 아닌 '분산형 미디어 클러스터'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하나만으로는 전북 전체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임

○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

- **(운영 마스터플랜의 선제적 수립)** 건축 공사와 병행하여 '준공 후 5개년 운영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로드맵에는 전문 사서나 미디어 전문가 채용 계획, 수익 창출 방안, 지역 예술인·미디어 기업과의 협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지방채 상환을 고려한 재정 운용)** 지방채를 발행해 건립하는 만큼, 시설 건립 후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운영비와 별도로 관리하는 등 건립 이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영 분석을 실시해야 함

- **(분산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센터가 전주에 위치하더라도 시·군 작은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미디어 공간을 활용해 도내 전역에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미디어센터' 시스템을 기본 운영 모델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운영 전문성을 위한 제3자 위탁 혹은 공공성 강화)** 직접 운영이 어렵다면 전문성과 인지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되, 운영 성과를 시설 방문객 수라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지역 미디어 제작물 배출 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수자 만족도'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하여 성과를 엄격히 평가해야 함

6.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문화산업과 예산안 p.163, 사업설명서 p.59)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예산(B)	비교 증감(A-B)
총 계	12,000,000	5,000,000	7,000,000
도비	5,500,000	5,000,000	500,000
지방채	6,500,000	-	6,500,000

※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 7,000,000천원 추가 편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도민에게 균형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북지역 자료의 집중적인 수집·정리·보존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추진

○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 건립

- 시행주체 : 직접수행
- 추진근거 :「도서관법」 제25조

○ **(예산내역)** 총 사업비 : 60,000백만원

*국비(균특) 1,000 / 특교세 3,500 / 도비 40,100 / 지방채 12,500 / 시비 2,900

□ 분석의견

◎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은 도내 지식문화의 컨트롤타워로서 단순한 도서관 건립을 넘어 도내 공공·작은도서관을 아우르는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현재 사업은 건립비 확보와 하드웨어 조성에 집중되어 있어, 개관 이후의 전문 인력 운영, 도내

도서관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디지털 도서 서비스 로드맵 등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전략이 부재함

지방채 발행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건립 이후 운영비가 고착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심화될 우려가 큼

○ **사업 개요 및 예산 현황**

- 본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및 도내 도서관의 표준화·네트워크 허브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및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26년 추경을 통해 7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임

○ **심층 분석의견 및 논거**

- **(정책적 허브 기능 강화)** 거점형 문화시설은 주변 하위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됨. 대표도서관이 도내 도서관 시스템의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단순한 대형 도서관에 그칠 위험이 큼

- **(운영 지속가능성)** 운영 소프트웨어가 없는 시설이 겪는 공실 및 기능 저하 사례를 참고하여 대표도서관 역시 건립 후 운영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수익 모델이나 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이 사전 확보되어야 함

○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

- **(개관 전담 TF 조기 운영)** 건립 공사와 병행하여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 인력(사서 등) 확보를 위한 전담 TF를 즉각 운영하고,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함

-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예산 우선 반영)** 2027년 본예산에 도내 공공·작은도서관을 잇는 통합 장서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여, 개관 즉시 도내 전체 도서관 이용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 허브 기능을 구현해야 함

- **(디지털 서비스 전략 수립)** 물리적 도서 보관을 넘어 도내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한 디지털 장서 데이터베이스(DB) 확충 전략을 수립하여 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야 함

- **(질적 운영 평가 지표 도입)** 개관 후 방문객 수와 같은 단순 실적보다는 도내 작은도서관 지원 실적, 도민 정보 접근성 향상률, 상호대차 서비스 활용도 등 지식 허브 기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를 도입해야 함

7.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개최 지원

(문화산업과 예산안 p.164, 사업설명서 p.64)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예산(B)	비교 증감(A-B)
총 계	425,000	375,000	50,000
국비	250,000	250,000	-
도비	50,000	-	50,000
시군비	125,000	125,000	-

※ 국비 250,000천원은 시로 직접 교부되는 재원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최를 통한 도민 독서문화 활동 기회 확대

○ **(사업내용)** 국내외 그림책 원화전, 그림책작가 등 강연·공연·체험프로그램 등

- 편성사유 : 국제그림책도서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도비 지원
- 시행주체 : 전주시
- 추진근거 :「도서관법」제7조 및 「독서문화진흥법」제8조

○ **(예산내역)** 개최 지원

- 그림책 박람회 25,000천원, 작가 운화·동화 전시 컨퍼런스 및 출판교류 세미나, 전북 공동관 운영 등
- 그림책 문화행사 25,000천원, 그림책 국제포럼, 북콘서트 등

□ 분석의견

◎ 제5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예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지난 제4회 행사 당시 언론으로부터 콘텐츠 부실 및 운영 미숙에 대한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음

더욱이 최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대표 축제의 철저한 사후평가와 예산 연계'가 공식적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주 행사장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구조적 안전 문제 및 공적 대관 축소 요구까지 제기된 상황임

따라서 관행적인 예산 지원을 점검하고, 원점에서 행사 기획과 공간 활용 전략을 재검토하는 조건부 예산 심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사업개요

- 본 사업은 지역 출판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국제 규모의 그림책 도서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도서 전시와 초청 강연, 워크숍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며, 이에 필요한 행사 운영비와 대관료, 홍보비 등은 2026년도 도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축제 사후평가 미흡 및 언론 비판) 지난 제4회 행사 당시 지역 언론은 빈약한 국제 교류 실적, 주차 및 동선 불편, 킬러 콘텐츠 부재 등 총체적 운영 부실을 지적함

- 2025년도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대표

축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평가와 개선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지원과 연계할 것을 문화체육관광국에 강력히 주문한 바 있음

- **(공간 핏(Fit)의 부조화 및 행사장 리스크)** 주 관람층이 어린이와 가족인 행사를 거대한 전문 공연장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하는 것은 공간의 비효율을 초래함

- 더욱이 25년 행감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은 최근 정밀 안전진단에서 지반 침하, 벽체 균열 등 안전 문제가 확인되어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요구되었으며, 타 공연장 대비 지나치게 낮은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공적 영역 사용을 축소하라는 지적까지 받았음. 기존처럼 헐값으로 넓은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의 행사 기획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음

○ **심층 분석의견 및 논거**

- **(행감 지적과 연계한 엄격한 재정 통제)** 공공 문화예술 행사의 경영 효율화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피드백이 누적된 행사성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해야 자생력이 확보된다고 하였고,

- 2025년 의회 행감에서 축제의 사후평가 결과를 예산과 직결시키라는 명확한 처리 요구가 있었으므로, 금번 제5회 예산은 전년도 성과지표와 언론 지적에 대한 항목별 쇄신안이 담보되지 않는 한 재검토가 필요함

- **(예산의 선택과 집중 부재)** 안전 진단에서 결함이 지적된 대규모 인프라의 공간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 값비싼 무대 장치비와 대관료를 낭비하는 것은 영세한 예산을 더욱 갉아먹는 악순환이며

하드웨어 치장에 쓸 예산을 세계적 그림책 작가 섭외 등 핵심 소프트웨어로 전환해야 함

○ **실효성 확보 및 개선 방안**

- **(행감 지적사항 연계 예산 검토)** 집행부는 제4회 행사 언론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의 지역 축제 사후평가 예산 연계 요구를 수용하여, 전년도 행사 평가 결과 및 제5회 쇄신안(개선 조치 보고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안전 문제 및 공간 효율성을 고려한 장소 변경 권고)** 행감에서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전주시 내 특화 도서관 인프라나 밀집도가 높은 야외 공원을 활용하여, 관람객(가족 단위)의 체류 시간과 만족도를 높이는 타겟형 분산 축제로 공간 기획을 재구성 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핵심 콘텐츠 위주의 예산 재구조화)** 불필요한 대형 장치비와 과도한 오프라인 홍보비를 삭감하고, 예산의 70% 이상을 도내 독립서점/출판사 참여 지원 및 유명 작가 섭외 등 핵심 콘텐츠에 집중하도록 예산 내역서를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심의 해야 함

8.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광고 컨설팅

(유치총괄과 예산안 p.179, 사업설명서 p.17)

□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요구액(A)	기정예산(B)	비교 증감(A-B)
총 계	1,630,000	4,000,000	△2,370,000
도 비	1,630,000	4,000,000	△2,370,000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전국적 지지 기반 확산

○ **(사업내용)** 주요 방송 및 언론, 뉴미디어(전광판·SNS 등) 활용 다매체 광고 송출

- 감액사유 : 주요 방송 및 언론, 뉴미디어(전광판·SNS 등) 활용 다매체 광고 송출
- 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유지 지원 사업) 제2항

○ **(예산내역)**

- 다매체광고 (△1,620,000천원), 디자인·규격조정 등 운영경비 (△10,000천원)

□ 분석의견

◎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점 과제이나, 현재는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내실을 다져야 하는 초기 기획 단계임. 최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지되고 IOC와의 '집중 대화' 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과도한 홍보 예산의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번 홍보 및 광고 예산의 삭감(조정)은 유치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진척도에 맞추어 예산 집행의 속도를 조절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재정적 실효성을 먼저 확보하라는 의회의 합리적인 정책적 권고로 분석됨

○ **예산 삭감(조정)의 객관적 사유**(행정사무감사 결과 기반)

- **(사업 추진 단계와 예산 규모의 불일치)**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IOC의 '집중 대화' 단계 진입이 명확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임. 기초적인 타당성 검증과 중앙정부의 공식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홍보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 **(홍보 제약 요건 및 전략적 아쉬움)** IOC 규정상 '2036' 연도 표기 금지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대외 홍보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음. 또한, 참가자 6천 명 규모의 '올림픽 데이런' 행사 등에서 '2036명' 참여와 같은 상징적 기획이 부족하여 예산 투입 대비 도민 공감대 형성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예산 삭감이 미치는 영향 분석**

- **단기적 영향 (대중매체 홍보 및 대규모 행사 축소)** 홍보·광고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중매체 광고나 대규모 동원성 행사의 빈도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이로 인해 가시적인 대외 노출도는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음

- **장기적·긍정적 영향 (사업 내실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예산 삭감은 집행부로 하여금 무리한 외부 홍보보다 '국가 승인(KOC) 획득'과

'현실적인 재원 조달 계획 수립'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음. 이를 통해 막연한 기대감에 의존한 예산 소진을 방지하고 도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 **종합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 **(외교 역량 중심의 타겟형 전략 전환)** 경쟁국(인도, 카타르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유치 승인과 지원을 조속히 이끌어내야 함. 또한, 국내 교수진 위주의 자문단을 넘어 IOC 위원과 소통 가능한 해외 연고 인사 및 국제 체육계 유력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 실질적인 국제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있음

- **(조직의 유연화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유치 시기가 불확실한 현 단계에서 3개 과 단위의 조직 구성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TF팀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권고되었음
 아울러 타 부서의 해외 출장 시 유치단과 사전 협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

- **(전주 하계올림픽의 주도권 및 상징성 확보)** 육상 등 핵심 종목을 서울 등에서 개최하는 연대 방안이 논의될 경우 '전주 올림픽'의 상징성이 퇴색될 우려가 있음. 단순한 시설 공유를 넘어 개·폐회식 유치 등 전북이 확고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명확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부 록)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제1차 과제 164개 확정

생활 속 불합리·편법·부당이득 관행 개선 본격 추진

○ 정부는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함.

○ 이번 과제는 국무총리실 총괄 TF와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를 중심으로 발굴되었으며, 국민제안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선정됨.

○ 1차 과제는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5개 분야로 구성됨.

○ 분야별로는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편법행위 47개, 부당이득 27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19개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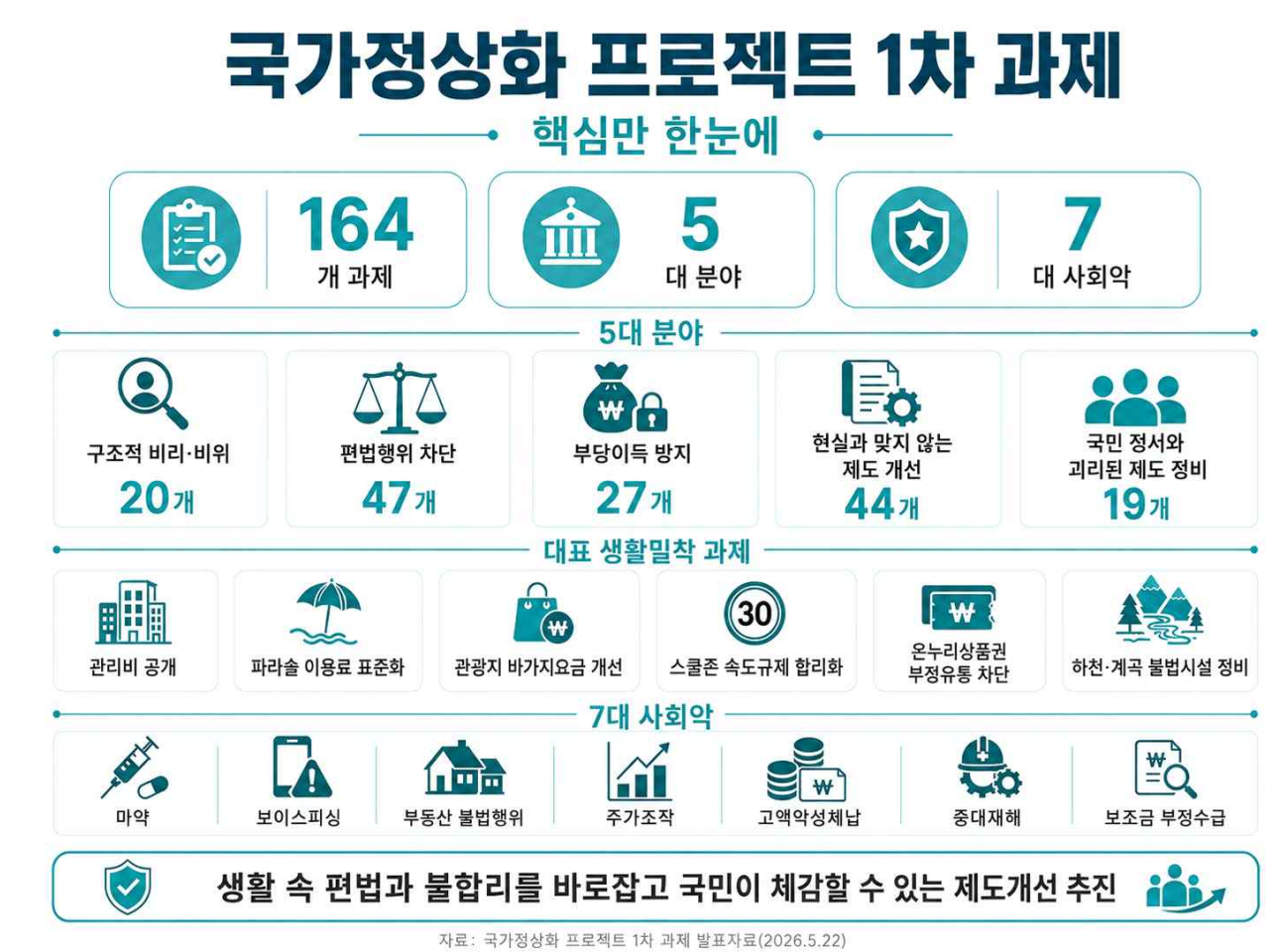
○ 주요 생활밀착 과제로는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 공개,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이 제시됨. 이와 함께 농업기계 안전관리, 전기차 충전기 운영관리 개선 등 생활안전 및 생활 인프라 관련 과제도 포함됨.

○ 부정·편법 행위 개선 과제로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공공조달 벌떼입찰 방지, 지방정부 특정공법 입찰 공정성 개선, 기술탈취 대응 등이 포함됨. 정부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활용한 부당이득과 편법 행위를 정비한다는 방침임.

○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부지침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추진하고, 중대한 구조적 비리·비위 과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



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자료(2026.5.22)

붙 임 국가정상화 1차 과제 목록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구조적 비리·비위(20)			
1	체육계 폭력 근절	▪ ▲범죄경력자 체육계 진입 차단 ▲엄중 처벌 ▲신고자 익명 보장을 통한 신고 활성화 등	문체부
2	대한축구협회 혁신	▪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논란 개선 등	문체부
3	대한민국 예술원 혁신	▪ 폐쇄적 회원선출, 종신임기 등 불공정성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의 선출방식 등 공정성·합리성 강화	문체부
4	범부처 국제기구분담금 관리·감독 강화	▪ 국제기구분담금이 국익과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납부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	외교부
5	비영리법인 일제 정비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정부유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소홀 반복 지적(실제 활동없는 유령 법인 난무, 기관장 장기재임 등 법인 사유화 및 횡령 등) →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정 법인 정비, 존속 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체계 구축	산업부
6	석탄공사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	▪ 저탄장 내 석탄-경석 선별·분리, 저탄장 탄질 검사방식 개선 및 전문기관에 의한 정기 재검증 실시 등 추진	산업부
7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	▪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공탁제 도입, 비용산정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저가 재대행 관행 해소, 부실조사 방지	기후부
8	한국도로공사 전관 문제 근절	▪ 퇴직자 전수 조사, 퇴직단체 도성회 휴게소 수익사업 배제, 전관업체 입찰 불이익 등 전관문제를 전면적으로 근절	국토부
9	철도 공공기관 전관 문제 근절	▪ 퇴직자 전수 조사, 제3자 감시 강화, 종합심사제 공정성 강화, 교육체계 구축 등 전관문제를 전면적으로 근절	국토부
10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및 불공정행위 근절	▪ 공공-입점상인 간 직계약 구조를 구축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불공정행위 근절	국토부
11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	▪ 제3차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제재규정 마련	중기부
12	제3자 중기 지원사업 부당개입 방지 위한 심사체계 혁신	▪ 대리신청 수사의뢰,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3자의 중기 지원사업 부당개입 방지	중기부
13	창업사업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심사체계 혁신	▪ 민관 추천형 트랙 확대, 평가위원 공개모집 등	중기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14	담합 조사 강화 및 반복 담합 근절	◦ 반복 법위반 담합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 ▲임원자격 박탈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 ▲자진신고 감면제 개선 등 도입	공정위
15	공정위 조사권 및 시정명령 실효성 강화	◦ 조사 불응시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 시정명령의 한계 보완	공정위
16	독과점 시장 규제개선	◦ 구조적 경쟁 저해 요인을 해소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실질적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과점 시장에 대한 규제 개선 적극 추진	공정위
17	대형 담합 범죄 엄단	◦ 대형담합 범죄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부당이득 산정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체계 구축	검찰청
18	토착비리 등 공직부패 집중 수사	◦ ▲부패비리 상시단속 및 토착비리 특별단속 추진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및 첩보수집 강화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등	경찰청
19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 입찰목적의 유령법인 등록, 잦은 소재지 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설립요건 강화, 계약방식 개선(입찰보증금 상향, 시공능력 평가 도입 등), 처벌·단속 강화 등 추진	산림청
20	비영리법인 회계 운영 체계 개선	◦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대상 회계분야 취약점을 발굴하여 회계 관리 투명성 제고(시스템 개선, 보안매체 관리 강화 등)	질병청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47)		
1	매점매석 행위의 경제적 유인 원천 차단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및 압수물품 매각특례,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재경부
2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 퇴직금 회피 목적 쪼개기 계약 관행 예방·근절을 위한 선도적 제도 개선 추진(가이드라인 배포, 점검·감독 강화 등)	재경부
3	학원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 ▲불법행위 학원·강사 등의 교습정지 및 강의제한 ▲불법적 이득에 대한 과징금 신설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상향 등 제재규정 법제화	교육부
4	교복제도 개선	◦ 전국 중·고 전수 조사·분석을 통해 ▲품목별 가격 상한가 결정('26.상) ▲공급주체 다변화 및 기존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수요자 중심지원(지원방법, 교복유형 등)으로 개선('26~)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교육부
5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노동 탄압 및 인권 침해 방지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노동 탄압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강화	외교부
6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	◦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동결하고도 범죄자 도피 등으로 유죄판결이 없으면 범죄수익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몰수제'를 도입	법무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7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 체계 개선	◦ 내가 낸 관리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기 어려웠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 유형에 상관 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 정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 등	법무부
8	불법 스포츠도박의 스포츠토토로의 전환	◦ 불법스포츠 도박시장 합법시장 전환 유도, 스포츠토토 경쟁력 강화	문체부
9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	◦ 불법게임 사설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 신설 검토, 긴급차단 제도 도입 등 대응 실효성 강화	문체부
10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뢰도 제고	◦ 저작권신탁단체의 방만경영,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 시정명령 불이행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허가제 신설 ▲회원의 권리 강화 ▲전문경영인 도입 등 법령 개정으로 신뢰도 제고	문체부
11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 ▲긴급차단 제도 도입 ▲형사처벌 기준 정비 등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폴 등 주요 K-콘텐츠 소비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	문체부
12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속조치 실효성 제고	◦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따른 의무위반 제재조치의 이행률 등 실효성 제고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13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정상화	◦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근거 미비 및 수용성 문제 해소를 위해 고시 및 관리규정 마련	농식품부
14	구거부지 내 불법 점·사용 근절	◦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 중인 구거를 대상으로 불법 점·사용 실태조사 후 불법사항 정비	농식품부
15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 시장조사(시판품조사, 수입통관단계조사) 등 제품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후관리 운영체계 일원화를 통해 고강도 사후관리 추진	산업부
16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 우유·과자 등 민생과 직결된 정량표시상품을 중심으로 조사상품수 확대(0.1만개 → 1만개), 평균량 개념 도입, 조사결과 공표, 전담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 개선	산업부
17	기술유출 및 우회수출 근절	◦ 피해액에 상응하는 경제제재 부과, 무허가 수출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적발 강화 등 기술유출 일벌백계 기조 수립	산업부
18	국외출생아동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 임시여권 발급 정보를 상시 연계하여 복지급여 수급 아동의 해외장기체류 사실 조기 확인 및 부적정 수급 예방	복지부
19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근절	◦ 의약품 판촉영업의 양성화·투명화를 위해 제도 미비사항 보완(이익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등) 및 실태조사 추진	복지부
20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할 경우 일정기간 전에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게 폐업·휴업 고지, 이용자 퇴원 등 조치	복지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21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요양급여 부정수급 근절	복지부
22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 부모 등에 의한 급식카드 부정사용, 급식카드 미사용으로 인한 충전금 소멸액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항목 결제제한 및 결제내역 모니터링 강화, 관리기준 정비 등 추진	복지부
23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 검체검사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검사질 제고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수탁기관 인증기준, 질가산, 제재기준 등 개선	복지부
24	전기공사 대리입찰·불법하도급 관행 근절	• 일부 대형업체가 복수업체를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하는 관행을 하도급 기준 명확화, 벌점제도 도입 등으로 근절 추진	기후부
25	제대로 된 근로계약 체결(가짜 3.3 계약, 공짜야근 방지)	• (가짜3.3) 가짜 3.3계약(사업소득자 위장) 등 위장고용 근절을 위해 타깃 업종(건설업, 음식업 등)릴레이 감독, 사업주 지도 등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제도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공짜노동 근절 지도지침 시행 및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통한 자율개선 유도, 오남용 의심 사업장 감독 실시 등	노동부
26	건설공사 임금체불 차단 및 불법하도급 근절	• 민간 건설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건설사 적발·제재 강화	국토부
27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쪼개기 대규모 개발 방지	•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취지와 달리 편법적으로 대규모 개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 마련	국토부
28	공인중개사 카르텔 근절	• 단체를 구성한 담합행위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낮은 상황 → 단체가 아닌 개인의 부당한 중개행위·담합행위도 금지, 담합가담 중개사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자격 재취득 결격기간 상향(3년 → 5년), 내부가담자의 신고 유도 등	국토부
29	정비사업 조합의 비리·부패 방지 및 조합원 권익보호	• 정비사업 조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정보제공·전자의결·의무교육 등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
30	항만배후단지 불법전대 행위 근절	• 무단 전대행위 판단 근거를 명확화하고 처벌조항 신설, 유관기관과의 정보제공 협력 강화 등	해수부
31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도입	•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유통에 따른 탈세 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정량공급과 공급량 측정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도록 법 개정 추진 및 측정기기 설치 지원 실시	해수부
32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 근절	• 전국의 공유수면 불법이용 의심행위에 대해 적법성 확인 및 조치계획(원상회복 명령 등)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진	해수부
33	기술탈취 기업 행정제재 강화	•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화하여(시정권고 → 시정명령, 벌점, 과징금(최대 50억원)) 처분실효성 제고	중기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34	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배상 산정기준 개선	• 침해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비용도 손배소송에서 기본적 손해로 인정하도록 손해액 현실화 가이드라인 마련	중기부
35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대응 강화	•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유출 등에는 처벌이 가능한 반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불법유통하는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부재 → 다크웹 등 음성화사이트까지 탐지 범위를 확대 운영,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개인정보위
36	식품 부당광고 관리 강화	• AI 의사 추천 광고, 의약품 모방 광고 등 신종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금지규정을 명확화하고 온라인 부당광고 신속차단 시스템 운영 등 추진	식약처
37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	•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처분 개시 전 대량판매 등 처분 실효성이 낮아 리베이트 근절에 한계가 있어,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식약처
38	법인을 이용한 편법 증여 차단	• 법인을 이용한 재산 취득·보유·양도 全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여 편법적인 증여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	국세청
39	법인보유 고가주택의 비업무용 혐의 전수 검증	• 2,639개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 및 실사용자 확인 등을 통해 업무 무관 주택 해당 여부 전수 점검	국세청
40	미술품 기부 등을 활용한 편법·탈법 실태조사 및 개선	• 미술품 기부 현황 점검 진행 및 기부물품 시가 평가방법 명확화 등 관리체계 개선	국세청
41	부동산 탈세 신속 대응체계 구축	• 부동산 탈세신고센터 등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 자금출처 검증 대상 확대, 증여거래·편법거래 등 조세회피행위 집중 조사	국세청
42	해외직구 소액면세 제도 악용 차단	• 과세회피 목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면세 한도 이하로 반입하는 방식의 편법 수입 시도 지속 → 사이버몰 보유 원천거래정보를 활용하여 합산과세 대상건에 대한 선별·심사 강화	관세청
43	공공조달 벌떼 입찰 방지	• 공공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물품 입찰상습포기자 입찰보증금 부과 등을 통한 공정한 조달시장 경쟁질서 확립	조달청
44	공공조달 과정에서 수요기관 부당행위 감독 강화	•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는 수요기관에 조사 및 시정요구 조치 등 감독 강화로 공정조달시장 구현	조달청
45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대응 강화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대응 위해 처벌기준 강화 및 피해회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통역인 상시 지원, 법률구조공단 연계 등) 마련	검찰청
46	범죄수익 환수 강화	•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사망, 소재불명, 해외도피, 인적사항 불특정 등의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개정 추진	검찰청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47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	◦ ▲기술유출 범죄의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내부 제보·대국민 피해신고 활성화 추진	경찰청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27)			
1	할당관세 제도개선	◦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기준 강화, 반출명령 근거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재경부
2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 변상금 제도개선, 무단점유 해소 전담센터 운영, AI 활용 등을 통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적극 해소	재경부
3	산하기관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 관행 개선	◦ 외청 및 산하기관 전관유착 관행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재경부
4	미인가 국제학교 등 관리·감독 강화	◦ ▲미인가 학교 판단 가이드라인 안내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적법기관 등록 또는 고발·수사의뢰 ▲미인가 학교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교육부
5	하천·계곡 불법시설 종합정비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조사(국토공간정보 활용) ▲불법 상행위 시설 엄정 정비 ▲이행강제금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재발방지 추진	행안부
6	외국인 카지노 공익성 강화	◦ 1994년 이후 큰 변화 없이 고착화되어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허가갱신 필요성 검토, 양도·양수시 관리강화 등) 및 사회적 기여 확대	문체부
7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 ▲과징금, 신고포상금 등 법령개정 ▲모니터링 강화 ▲주요 의심 사례 수사의뢰 등	문체부
8	전담여행사 일탈행위 근절	◦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 신설, 무단이탈 관련 전담여행사 행정처분 근거 마련	문체부
9	한복 대여업 내 수입산 저품질 상품 유통 개선	◦ 외래관광객 한복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한복 대여업 내 수입산 저품질 상품 유통 개선(실태조사 및 우수대여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문체부
10	가짜 앰뷸런스 근절	◦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관리, 이송처치료 현실화 등을 통해 관리·감독 효율화 및 안정적 운행 환경 조성	복지부
11	장기요양기관 식재료비 점검 시스템 강화	◦ 일정비율 이상 식재료비 이월사례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질 낮은 급식 제공 및 시설장의 식재료비 이월 방지	복지부
12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 근절	◦ 댐·하천·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신속정비하고, 벌금상향·불법이익 환수 등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	기후부
13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관리 체질 개선	◦ 부적정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요금체계 합리화 ▲충전기 표준규격 정립 ▲공동주택 충전기 운영방안 다각화 ▲충전기 관리 전담기구 지정 등 운영관리 강화	기후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14	독점 운영에 따른 폐단 개선 등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 버스 영구면허제 부작용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제도화 및 친환경차 전환 등 버스 공공성 강화 추진	국토부
15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차 시장 육성	• 성능·상태점검 신뢰성 강화, 하자책임 보증강화, 매매가격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소비자 신뢰 회복	국토부
16	수입수산물 할당관세 제도 부정이용 차단	• 할당관세 적용 수입물량에 대해 45일내 반출을 의무화하고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지속 적발시 할당관세 배제 등	해수부
17	온누리상품권 가맹기준 정비 및 부정유통 차단	• 가맹점 업종제한, 부정유통 제재 강화(중대 부정유통시 과징금 도입, 신규유형 부정행위 제재기준 마련 등)	중기부
18	특혜성 인·허가 개선	• 전부처 인·허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혜성 우려가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익환수규정 신설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허가제도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조실
19	촬영업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 해소	• 촬영업계가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행태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관련 민원분석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법위반행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	공정위
20	새출발기금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유내역을 확인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여력이 충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대상 선별 강화 등	금융위
21	영업비밀 유출을 위한 이직 알선 행위 처벌 강화	• 기술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등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처벌하는 근거 마련	지재처
22	지방정부 특정공법 입찰 공정성 개선	• 공법 관련 특허 심사기준 수립, 입찰정보 심사 활용시스템 마련 등 특허심사 강화 및 준공검사 단계에서 특허가 실질적용 점검 의무화 등	지재처
23	저세율 할당관세 제도 부정 이용 차단	• 세관장 반출명령 근거 신설 등 반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할당관세 부당적용·수입가격 왜곡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관세조사 및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수사 진행	관세청
24	독과점·부당특혜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	•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 수사 전개	검찰청
25	문화유산매매업 제도개선	• 문화유산 거래내용을 고의로 기록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여 불법거래 사전 차단 등 유통 투명성 확보	국가유산청
26	경매취득 산지 되팔기 편취 근절	• 경매취득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되팔기하는 단기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취득 후 일정기간 미보유시 매수대상지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도 개선 추진	산림청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27	행복도시 유휴부지 경관개선 및 관리 강화	⋆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 관리실태, 임시이용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여 정비나 조치가 필요한 부지 확인 및 정리(방치되어 미관·환경·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지는 경관개선 등 방안 우선 마련)	행복청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44)		
1	관행적 조세감면 정상화	⋆ 비과세·감면 제도의 장기적·관행적 일몰 연장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체 조세지출 원전 전면 재검토, 지원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는 적극 폐지	재경부
2	공공공사 규모별 발주체계(공사금액 기준) 개편	⋆ 공공공사 금액기준 개편 및 품질경쟁 강화 방안 추진	재경부
3	연구몰입 방해 요소 제거	⋆ 연구비 자율성 확대, 행정서식 간소화, 수행과정 중심 평가체계 개선 등 연구자의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연구행정 요소 개선	과기정부
4	연구비 적기 집행	⋆ 매년 연초(1~4월) 정부R&D 계속과제 연구개발비가 적기에 지급되지 않아 연구착수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모색	과기정부
5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	⋆ 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대기 완화를 위해 영아반만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허용 및 영아반 전환 지원	교육부
6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강화	⋆ ▲영유아 사교육 대응방안 발표 ▲시도교육청과 함께 레벨테스트 관련 유아대상 학원 점검 추진 ▲유아사교육비 본조사 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 등	교육부
7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조항 합리화	⋆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8	초국가범죄(온라인스캠, 마약, 온라인도박 등) 예방 대응 강화	⋆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초국가범죄가 인근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 예방·대응을 위한 본부-공관 공조 및 국제공조 지속 강화	외교부
9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불합리한 여권발급 제한제도 폐지	⋆ 「여권법」 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여타 법령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처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1~2년 간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제도 폐지	외교부
10	법의 보호망 밖에 있던 이민자의 인권 보호	⋆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하고도 신고하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현장 중심 권익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여 불법체류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법무부
11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 소액·다수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위법행위 억지를 위하여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추진	법무부
12	일부 수용자의 과도한 행정심판 제기 방지	⋆ 일부 수용자들의 사익 추구 수단(수용생활 편의, 교도관 괴롭힘 등)으로 행정심판을 편법적 이용 → 행정심판의 심도 있는 심사와 재결, 편법적 이용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법무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13	집중안전점검 전문장비 활용체계 구축	◦ 기존 육안점검 방식을 전문장비 보유·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장비활용 점검방식으로 전환하여 점검의 정확도·신뢰도 제고	행안부
14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	◦ ▲가격게시 및 준수의무 제재 강화 ▲원스톱 신고체계 구축 ▲공정가격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진행 등	문체부
15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지원	◦ 대입 체육특기자 제도를 소속팀 실적 중심평가에서 개인별 경기력 중심 평가로 전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문체부
16	스포츠 금융지원 사업 사후관리 강화	◦ 시설 설치 없이 스포츠 금융지원을 목적외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점검 및 융자사업 관리 집중 강화	문체부
17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제공 시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음식 제공 시 포장재,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해서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개선	농식품부
18	농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등) 음주운전 금지	◦ 도로주행 농업기계(트랙터, 경운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음주운전 단속·금지 근거 마련	농식품부
19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	◦ 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보호 후 입양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농식품부
20	보호대상아동 미성년 후견제도 개선	◦ 보호자 법적동의 공백 있는 모든 보호대상아동 대상 응급수술, 휴대폰 개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위탁부모 등이 법적 동의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 '26년 3월, 임시후견제도 시행되었으나 1년만 가능하고, 위탁가정 아동에만 적용으로 시설 입소 아동의 미성년 후견제도와 절차 등 차이	복지부
21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	◦ 직역연금을 수급받는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 배제 →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	복지부
22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의 엇박자 해소	◦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용 시,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간에도 파견·기간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 변경 추진	노동부
23	불법촬영물 등 신속삭제 위한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긴급차단 요구권 부여	성평등부 방미통위
24	배우자 수감 가정의 한부모 인정 요건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배우자가 수용 중인 경우, 한부모 지원 요건을 긴급복지지원 수준으로 합리화(현행 6개월→ 2개월로 단축)	성평등부
25	스마트 시티 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사업 선정평가에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 및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	국토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26	여름철 해수욕장 내 파라솔 등 이용료 표준화	◦ 해수욕장 내 물품·시설 사용료의 표준가격제 추진 및 현장점검 실시	해수부
27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 관련, 시설현대화 부작용 개선	◦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23.7) → 지방정부 재안내, 노후전선 정비	중기부
28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 가칭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하여 주가조작, 담합 등 주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통합 관리·운용, 포상금 집행 원활화	기획처
29	온라인상 마약, 도박, 혐오표현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도개선	◦ 마약 등 불법정보 적발시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도록 법령 개선	방미통위
30	불법사금융 통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광고 규율 강화	◦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신고포상제도 도입 등	금융위
31	증거 은닉·폐기 시 제재규정 및 신고포상금 도입	◦ 조사 이전 증거 은닉·폐기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현행법을 개정하고, 신고포상금 도입으로 공익신고 활성화	개인정보위
32	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역설 해소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성실하게 유출신고한 기업이 제재 등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고 미신고한 경우 불이익이 적은 '신고의 역설'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과징금 가중	개인정보위
33	보고대상사건 은폐에 대한 행위자 처벌 부과	◦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 등 사건을 종업원이 악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법령 개정	원안위
34	적정 시점 권리화를 위한 심사·심판의 불합리 요소 제거	◦ AI, 바이오 분야의 창업기업의 초기 사업화와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확보가 필수 → 초고속심사 확대, 우선심판 확대로 빠른 심사·심판 제공 및 심사유예 취소·변경 요건 완화	지재처
35	패소자가 부담하는 지식재산 심판비용 합리화	◦ 패소자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을 현실화하고 심판종류 및 절차별 특징을 반영한 합산기준표 마련	지재처
36	입영연기 운영기준 합리화 및 사후관리 강화	◦ 현역병 등 일부 입영연기 사유의 적용기준 모호 등 미흡 사례 존재 → 연기기준을 명확화하고 사후관리 체계화 추진	병무청
37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 제재 실효성 강화	◦ ▲현행 대표·임원 중심의 제재 체계를 위반행위 중심의 제재 체계로 현실화 ▲사전 예방 노력 시 면책 고려 및 책임 경중에 따른 과징금 갈음 제도 도입 ▲방산기술 및 군사기밀 유출 발생 시 제재시효 정비 등 제재 관리 감독 수준 강화	방사청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38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 현 방산원가 제도는 총원가에 비례하여 이윤을 주고 있어 원가 절감 유인 제한 →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할 수 있도록 계약 패러다임 전환	방사청
39	관계성 범죄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교제폭력 입법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등) ▲스토킹범죄 전건 사건 접수 및 즉일·신속 수사 ▲스토킹 가·피해자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 등	경찰청
40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범정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정보 상시 공유 ▲국외도피사범 단체송환 제도 개선 ▲해외 주요국 경찰협력관 파견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경찰청
41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	경찰청
42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 지역별 의료자원 현황 및 소방-의료기관 간 신뢰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소방청·복지부
43	소방차 긴급출동 환경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 소방차 신속출동과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지능형 출동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제처분 적극 집행 등	소방청
44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화	◦ 농업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경감을 위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점검을 확대하고 농업기계 사고시 119 응급문자 발송체계 구축	농진청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19)		
1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 공공기관 정규직-공무직 간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26.9월)를 설치하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202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시 반영 예정('26.12월)	재경부
2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 냉전기 시대에 '불온간행물', '특수자료', '이적표현물' 등의 관점에서 관리해오던 북한자료 제도체계를 우리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개선(북한자료 공개·확대 근거법령 마련, 체계적 심의·분류시스템 마련 등)	통일부
3	복무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구속기간 복무 이탈 적용	◦ 현역병이 군 복무 중 구속된 경우 복무 이행이 되지 않는 구속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에 미산입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확립	국방부
4	군 복무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 군인 순직 유형 구분을 개선하여 공무원 대비 협소한 군인의 순직 기준을 확대하고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	국방부
5	정부포상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부적격자 서훈 취소	◦ 내란·군사반란 가담자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을 면밀히 재검증하여,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서훈의 영예성과 대국민 신뢰 제고	국방부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6	부적절한 정부 포상 서훈 취소 강화	• 과거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행안부
7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개선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등 보훈심사 검증절차를 보완하고 유사사례 간 판단 편차 등 현행 보훈심사의 한계 극복	보훈부
8	친일 귀속재산 관리 강화 제도 마련	• 친일귀속재산 매각 시 귀속전 소유주 매입 등 환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매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보훈부
9	예술 병역특례(예술요원) 제도개선	• 예술요원 편입대회 축소 및 편입요건 강화	문체부
10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의 셀프조사 방지	•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문체부 자문위원회에 불과하여 문체부 예술지원사업에서 권리침해 발생시 문체부가 셀프조사·처분하는 문제 발생 →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로 격상하여 문체부의 조사 및 처분 권한 이양 추진	문체부
11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출산 크레딧 제한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출산크레딧 미부여	복지부
12	군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군 크레딧 제한	• 병적 제적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 군복부 크레딧 제외	복지부
13	숨어있는 임금체불 발굴, 신속한 권리구제	• 임금체불 전수조사를 통한 숨은 임금체불을 발굴하고 아울러 체불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융 체불확인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 등 추진	노동부
14	사용자 괴롭힘 셀프조사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매뉴얼 개정 추진	노동부
15	중·저신용자 및 서민들의 금융시장 배제 방지 위한 금융회사 공적 역할 강화	• 중·저신용자 및 서민들이 금융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 및 금융비용 경감 등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 제고	금융위
16	상록수 등 유동화 전문회사 연체채권 장기추심 근절	• 민간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조사하여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을 추진	금융위

	과제명	개선 방향	주관부처
17	금융이력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방지를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선	◦ 그간 연체이력 등 신용거래이력 위주로 신용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던 소상공인 및 금융이력취약계층 등에 대해, 미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편 추진	금융위
18	공상공무원 보상·예우 강화	◦ 위험직무 보상 강화(위험직무순직공무원 범위 구체화 및 유족 보상금 특례 확대 등)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개선방안 마련	인사처
19	적극적 구조대응을 위한 면책제도 개선	◦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구급활동 및 조난선박에 대한 긴급 예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해경청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계획

새만금, 현대차 투자로 미래 신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

○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26. 2. 27.)

- 5개 부처·청*과 전북도 참여, 대기업 투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실행형 협약 *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새만금청

○ (투자규모) 총 8.9조 원

○ (위 치) 새만금 일원 약 34만평(112만 4,000㎡)

○ (투자내용) '26년부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조성 등

<분야별 세부 투자내역>

투자분야	투자규모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계	**8.9조원**		
AI데이터센터	5.8조원	'27~'31	100MW 규모, 피지컬 AI 연구 인프라
재생에너지 발전	1.3조원	'27~'33	데이터센터 및 수소 전력 공급
수전해플랜트	1조원	'27~'35	200MW규모, 18톤/일 그린수소 생산
로봇 제조공장	0.4조원	'27~'35	물류·배송 로봇 연간 1.5만대 양산
수소 AI 시범도시	0.4조원	'27~'35	로봇친화·수소 실증 복합도시 조성



비전 및 지원방향

비 전	▸ 새만금, 현대차 투자로 미래 신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 ▸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핵심지원전략	입법지원	맞춤형 특구	인센티브	5대분야 지원

지원분야	주요 추진 과제
1 AI 로봇	• 로봇 · 부품 인증 · 생산 기반 구축 •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2 AI데이터센터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및 인허가 간소화 •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3 수소에너지	• 그린수소 밸류체인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새만금 수소 특화단지 지정
4 재생에너지	• RE100 산업단지 지정 •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5 정주여건 및 인력양성	• 도로 · 철도 · DRT 등 교통인프라 개선 새만금 접근성 강화 • 새만금 지역 종사자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 AI · 로봇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붙 임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계획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계획

Ⅰ.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원 개요

1 추진배경

○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 체결('26. 2. 27.)

- 5개 부처·청*과 전북도 참여, 대기업 투자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실행형 협약 *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 새만금청

○ **(투자규모)** 총 8.9조 원

○ **(위 치)** 새만금 일원 약 34만평(112만 4,000㎡)

○ **(투자내용)** '26년부터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조성 등

<분야별 세부 투자내역>

투자분야	투자규모	사업기간	주요내용
총 계	**8.9조원**		
AI데이터센터	5.8조원	'27~'31	100MW 규모, 피지컬 AI 연구 인프라
재생에너지 발전	1.3조원	'27~'33	데이터센터 및 수소 전력 공급
수전해플랜트	1조원	'27~'35	200MW규모, 18톤/일 그린수소 생산
로봇 제조공장	0.4조원	'27~'35	물류·배송 로봇 연간 1.5만대 양산
수소 AI 시범도시	0.4조원	'27~'35	로봇친화·수소 실증 복합도시 조성

2 추진체계 및 지원내용

○ **(지원체계 구축)** 투자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범정부·지자체 전담 TF

- **(정 부)**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전북·대혁신 TF」 킥오프 회의(3. 11.)
- **(전북도)** 투자 이행 총괄 전담조직 **'현대자동차 투자지원단'** 신설(3. 20.)

○ **(지원과제 발굴)** 현대차 건의 및 범정부·전북도 지원 과제 확정

Ⅱ. 비전 및 지원방향

비 전	▸ 새만금, 현대차 투자로 미래 신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 ▸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스마트 그린 모빌리티

핵심지원전략	입법지원	맞춤형 특구	인센티브	5대분야 지원

지원분야	주요 추진 과제
1 AI 로봇	• 로봇 · 부품 인증 · 생산 기반 구축 •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2 AI데이터센터	• AI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및 인허가 간소화 •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3 수소에너지	• 그린수소 밸류체인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새만금 수소 특화단지 지정
4 재생에너지	• RE100 산업단지 지정 •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5 정주여건 및 인력양성	• 도로 · 철도 · DRT 등 교통인프라 개선 새만금 접근성 강화 • 새만금 지역 종사자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 AI · 로봇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Ⅲ.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1 법령 제·개정 가속화 (개정 1건, 제정 6건)

❖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적기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

○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및 AI 집적단지 조성, 수소생산 촉진 지역 지정, 기회발전특구 등의 특례 반영
- **(추진상황)** 수소·데이터·AI 특례 등 43개 조문 개정안 발의 ('26. 4. 6.)

○ **기후부**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

- **(주요내용)** 수소배관 **인프라 공동이용** 제도, 배관 구축 사업 시 **인허가 의제 처리** 등 **대규모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근거 마련**
- **(추진상황)** 법안 발의('25. 10월) → 산자중기위 소위원회 회부('26. 3. 24)

○ **국토부** 「수소 철도 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수소트램·기관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 수립, 개발 및 연료비 지원 등 **수소열차의 개발-실증-상용화-보급 체계적 지원**
- **(추진상황)** 법안 발의('25. 10월) → 국회 국토위 상정('26. 2. 10.)

○ **기후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특별법」 제정

- **(주요내용)**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및 PPA** 등
- **(추진상황)** 국회 본회의 통과('26.5.7.) → 대통령 공포(5월 중) 및 시행('27.2월)

* 기간 내 인허가 등의 거부 통지가 없는 경우,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진 걸로 간주

** 전력구매계약. 한전 외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 공급-사용 계약

○ 산업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ESS, 전력망 등 지원으로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현존 최고 수준 세제·재정 패키지, 규제 특례, 정주여건 지원 등
- **(추진상황)** 법안 발의('25. 10월) →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상정('25. 11월)

○ 산업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 **(주요내용)** 기회발전특구(규제완화, 권한이양 등 특례),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례 프로그램 도입
- **(추진상황)** 법안 발의('24. 6월) → 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상정('24. 11월)

○ 국토부 「혁신기술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주요내용)** 혁신기술(로봇, AI 등) 적용 '혁신건축물' 인증 및 규제 특례,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근거 마련
- **(추진상황)** 법안 발의('26. 5월) → 국회 국토위 회부('26. 5. 12.)

2 맞춤형 특구 지정

❖ 세제혜택·규제 샌드박스 등 패키지 지원

□ 새만금 지역 지정 가능한 특구별 지원 내용

구분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RE100 산업단지	새만금 산단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새만금 메가특구
추진 상황	• **('26년 2분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산업부 소위 심의 중 • 현대차의 투자 진행 상황에 맞추어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 ('27년초 예정)	• **('26년 2분기)**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산자중기위 계류중 • **('26년 하반기)** 정부는 특별법 통과 및 공모를 통한 지정 추진 계획 • 새만금 산단 3·7·8 공구 지정 신청 검토	• **(26년 4분기)** 기후부 공모 신청 예정 * 특화모델 검토중으로 위치 등 미정	• **('26년 3분기)**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 **('26년 3분기)** 산업부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 발표(로봇) • **('26년 4분기)** 국토부 'AI특화 시범도시' 지정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
세제 혜택	• **법인·소득세 5년 100% 면제** (+ 2년 50%) • 취득세 100% 면제 (창업, 수도권 이전 시) • 재산세 5년 100% 면제 (+ 2년 50%)	• **법인·소득세 10년 100% 면제** (+ 5년 50%)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및 국고 보조 비율 상향 • 현존 최고수준 세제 재정 지원 예정		• 기회발전특구 활용, 지방우대
규제 특례	• 지방정부 규제특례 직접 설계 후 신청 →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후 해당 규제 특례 부여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국회 통과시 적용	• 입주·건축 규제완화 • 지방정부+기업 규제 특례 설계 → 정부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 완화	•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배전망 건설·운영 및 전력 직접 판매 허용 •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항목 최소화	• 로봇 원본데이터 활용 • 무인 소방 로봇 도로 통행 허가 • 실외 이동 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 • Upgrade 규제샌드박스 → 대규모 실증 등 실시
R&D 지원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분야, 에너지 효율적 사용, 환경친화적 에너지 기술 개발 등		• 지역별 성장엔진 통합패키지형 R&D 지원

Ⅳ.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기준 신설

□ 대규모 투자보조금 한도 상향

○ **(필요성)** 기업의 대규모 투자 시 인프라·전력·인허가·인력확보 등 초기 투자비용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 **(조례개정)**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시행('26.5.8.)

- 1조원 이상 투자 또는 1,000명 이상 고용 시 투자 건당 보조금 최대 1,000억 원 지원 기준 신설 (투자금액의 10% 이내)

[1천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시 투자보조금 지원기준]

투자 규모	보조금 지원한도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300인 이상 신규고용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3천억원 이상 또는 400인 이상 신규고용	최대 200억원
투자금액 6천억원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신규고용	최대 300억원
신규투자금액 1조원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신규고용	최대 1,000억원

2 로봇 산업 인센티브 우대

□ 로봇산업 지역특성화 업종 선정 우대 지원

○ **(필요성)** 로봇 부품·제조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 및 협력사 동반 유치로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 **(조례개정)** 「전북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추진

○ **(주요내용)** 로봇산업을 **지역특성화 업종**에 포함하여 투자보조금 우대 지원

- **(지역특성화 업종)**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제 여건 및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특정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산업부가 선정*

* 산업부 지정(6개)+도 추천(44개, 10~11월) →산업부 지정(50개, 익년 1~2월)

Ⅴ. 현대차 투자 관련 5대 분야 지원사항

1 AI 로봇 분야

○ **(인증 및 허가지원)** 로봇 시험·인증 공공기관 설립 및 로봇 체험·전시 판매시설 구축 및 운영

- **(산업부)** 향후 수요*에 따라 로봇산업진흥원 분원 등 설립 검토, 전북도 로봇랜드 조성계획 수립 후 신청 시 지정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 운영 중(대구)

- **(전북도)** 로봇·부품 전용 시험·인증센터 산업부 공모 대응

○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①로봇기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②정부주관 공장 건축 및 임대운영, ③공동 물류창고 구축 ④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① 로봇기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 **(전북도)** 로봇산업 지역특성화 업종 포함하여 투자보조금 우대 지원(조례개정 필요)

② 협력사 상생형 공장 건축 및 임대

- **(새만금청)** 새만금 산단에 건립중인 '새만금 기업 성장센터' 활용, 향후 추가 수요 발생 시 증설

- **(전북도)** 새만금 기업 성장센터 지방비 분담 및 향후 증설 시 새만금청과 협의 추진

③ 협력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창고 구축

- **(새만금청)** 현대차 수요파악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구축방안 마련

- **(전북도)** 새만금청 구축 방안 구체화 시 협력 추진

④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 **(산업부)** 자동차 부품기업의 전동·지능화 산업 전환 및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추진

- **(전북도)** 소부장특화단지 산업부 공모 신청('26. 4. 22.)

2 AI 데이터센터 분야

○ **(인센티브)** AI데이터센터 구축비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 **(전북도)** AI데이터센터 단계별 실증을 위한 건축비, 시설장비비에 대해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 대규모 투자의 경우 1조원 이상 투자 또는 1,000명 이상 신규채용 시 최대 1,000억원 지원

3 수소에너지 및 수전해플랜트 분야

○ **(공공 R&D)**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실증·인프라 구축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

- **(기후부)** 수소특화단지 신규지정 공고에 전북도가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수소특화단지 신청 시 평가위원회 및 수소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예정
- **(전북도)** 기후부 신규 지정 공고 시 현대차,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의하여 새만금 수소특화단지 공모 신청 예정

○ **(수소생산 및 유통)** 수전해 생산 시스템 구축, **수소 생산지와 수요처를 연결**하는 새만금 수소배관망 구축

4 재생에너지

□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혁신

○ **(RE100 산업단지 지정)** 세제·재정 패키지*, 재생에너지·전력망 등 지원으로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입주기업 정주지원 등

* 법인·소득세 10년간 100%면제(이후 5년간 50%)

- **(산업부)**「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25.10월부터 7개 법안 발의, '26.下 제정 및 공모 추진 계획)
- **(새만금청)** 'RE100 산업단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25.11~26.8.)
- **(전북도)** 'RE100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새만금청 연계)

○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규제 완화 등 일정규모 이하* 전력거래 자유화로 전력구매 비용 절감(중간 거래단계 축소 등)

* (범위) 40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 수요지 인근 500MW이하 집단e 발전설비 등

- **(기후부)** 새만금 인근 산단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허용, 전력계통 영향평가 검토항목 최소화 등 규제 특례 등
- **(전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발굴 및 공모 참여('26.하반기)

5 정주여건 및 인력양성 등

□ 교통 ·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새만금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근로자 편의를 위한 DRT 도입

- **(국토부)** 새만금항 인입철도('33년 개통), 지역간 연결도로('30년 개통), 남북 3축 도로('30년 착공 목표), HMG 수소열차 도입
- **(새만금청)**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 **(전북도)** 적기 개통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 적극 건의

○ **(정주여건 개선)** 의료·교육·주택 특별공급 등 새만금 지역 종사자 맞춤형 정주환경 조성

- **(새만금청)** 스마트수변도시 조성 및 선도지구 기반조성 완료('28년말), 교육·의료 기관 유치
- **(전북도)** 군산시 미분양·준공예정 물량 활용, 현대차 협력사 대상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마이스터고 지정 등)** 사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

- **(교육부)**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에 따라 AI 마이스터고 지정 및 특성화대학 운영 추진
- **(전북도)** AI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대응*, 거점국립대 육성사업·특성화지방대학 등 운영 * 이리공고('26. 6. 발표)

○ **(AX대학원* 공모신청)** 자율 AI로봇, 데이터센터 등 산업현장 AI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

* **(인공지능혁신대학원)** 대학이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AX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

- **(과기부)** ‘26년도 신규 10개교 지원,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가점 부여
- **(전북도)** 군산대-현대차 간 지속 협의를 통해 ‘27년도 공모 참여 지원

 * (군산대) 현대차와 교육과정·AX연구협력센터 운영 협의

□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혁신

○ **(장기임대용지 공급)**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 산단 내 장기임대 용지 공급

- **(새만금청)** 부지 매입 및 장기 임대 추진
- **(전북도)** 부지 매입 비용 지방비(도, 군산시) 분담

○ **(5극3특 성장엔진 지정)** 로봇·수소 분야 전북 지역 성장엔진으로 지정 및 특별보조금 지원

- **(산업부·국조실)** 성장엔진 선정(지방시대위원회) 및 성장엔진 주요 산업 ‘27년 예산 반영 추진
- **(전북도)** 성장엔진으로 로봇, 수소가 선정되도록 산업부 협의 등 적극 대응

○ **(기회발전특구 지정)** 새만금 현대차 투자 지구를 로봇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

- **(산업부)**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 추진(’24. 6월 발의)

 * 규제완화, 권한이양 등 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개발부담금 감면 등 특례 프로그램 도입
- **(전북도)** 현대차의 투자위치, 면적 등 투자계획 구체화 후 새만금 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27년 상반기)

참고1 현대차그룹 관련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조문 (43개)

분 야	세부 특례
수소·태양광 등 (18)	•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시범사업 시행 특례(제30조의2) • 수소생산 촉진지역 지정 및 지원(제30조의3) • 그린수소 소비 촉진 지원(제30조의4) • 수전해 플랜트 인증·인허가 특례(제30조의5) • 수소활용 국가시범도시 지정(제30조의6) • 수소AI시티의 관리·운영 등(제30조의7)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례(제32조의2)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특례(제32조의3) •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제32조의4) • 지역 에너지전환의 지원에 관한 특례(제32조의5) • 재생에너지의 직접 전력거래 특례(제32조의6) •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제32조의7) •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특례(제32조의8) • 계통안정화 장치에 대한 지원 기준(제32조의9)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우선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32조의10) • 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특례(제32조의11) • 수상태양광 산업 육성(제32조의12) •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특례(제41조의23)
로봇·피지컬 AI (9)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제41조의2) • 지능형 로봇 실증특구 지정(제41조의3) • 실증특구 내 자율이동형 로봇의 운행 및 실증 특례(제41조의4) • 실증특구 내 개인정보보호 처리 특례(제41조의5) • 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보급 지원 특례(제41조의6) • 로봇 실증제품의 민간 구매 지원 특례(제41조의7) •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지원(제41조의8) • 피지컬 인공지능 시험·인증 통합지원센터 및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등(제41조의9) • 피지컬 인공지능 검증·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41조의10)
인공지능·모빌리티 (12)	•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41조의11) •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제41조의12) •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13) •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제41조의14) • 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제41조의15) • 인공지능·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제41조의16) • 자율형 인공지능 행정 시스템 도입 등(제41조의17) •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제41조의18)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제41조의19) • 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20)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41조의21)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41조의22)
데이터센터 등 (4)	• 첨단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에너지 지원(제41조의24) • 데이터 활용 및 인력 양성 특례(제41조의25) • 대규모 투자유치에 따른 국·공유재산 처분기준의 특례(제74조의2) •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제74조의3)